의왕역 SK VIEW 입주자모집공고

청약Home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 청약Home 앱 설치 바로가기

※ 단지 주요정보

(분양문의) 031-427-1857

주택유형	해당지역	기타지역	규제지역여부
민영	경기도 의왕시 2년 이상 계속 거주자 (2024.07.10. 이전부터 계속 거주)	경기도 의왕시 2년 미만 계속 거주자 및 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거주자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재당첨제한	전매제한	거주의무기간	분양가상한제	택지유형
10년	3년	없음	미적용	민간택지

구분	입주자모집공고일	특별공급 접수일	일반공급 1순위 접수일		일반공급 2순위 접수일	당첨자발표일	서류접수	계약체결
			해당지역	기타지역				
일정	’26.07.10.(금)	’26.07.20.(월)	’26.07.21.(화)	’26.07.22.(수)	’26.07.23.(목)	’26.07.29.(수)	’26.07.31.(금) ~ 08.08.(토)	’26.08.10.(월) ~ 08.13.(목)

※ 공통 유의사항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콜센터는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이용안내 및 기본적인 청약자격 상담을 하고 있으며 고객 상담 과정에서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정보의 제공으로 일부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약홈 콜센터 상담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자세한 문의사항은 사업주체를 통해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2026.06.15.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주택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본 아파트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으로서,「주택법」제15조에 따라 공급받은 최초 계약자(수분양자)는 허가제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으나, 최초 공급 이후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별도의 허가절차를 득해야 합니다. 당 사업지가 위치한 경기도 의왕시 삼동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거래 대상의 토지면적(대지지분)이 6㎡ 초과일 경우 토지거래허가 대상에 해당됩니다.
이에 따라 본 아파트의 전 주택형은 토지거래허가 대상으로 소유권 행사(전매, 매매, 의무거주기간, 주택처분 등)에 제한이 있으니 청약 및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내용은 추후 정부정책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2024.10.01.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민간 사전청약 당첨자 및 그 세대원은 ’24.10.01.부터 사전당첨자 지위를 유지한 상태에서 다른 주택에 청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전당첨자 및 그 세대원이 다른 주택(APT, 불법행위재공급, 규제지역 무순위)에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사전당첨자로서의 지위를 상실하여 사전청약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신청자격은 당첨자를 대상으로 전산조회, 제출서류 등을 통해 사업주체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될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일정기간 입주자저축 사용 및 입주자선정 제한 등)을 받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자격, 기준, 일정, 방법, 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자격	특별공급						일반공급	
	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신생아	1순위	2순위
청약통장 자격요건	6개월 이상,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충족			1순위(24개월 이상,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충족)				가입
세대주 요건	-	-	-	필요	필요	필요	필요	-
소득 또는 자산기준	-	-	적용	-	적용	적용	-	-

※ 단, 기관추천 특별공급 중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청약통장 불필요
※ 1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가입기간이 24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납입한 분
※ 2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였으나,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순위요건을 만족하였으나, 청약 신청 전 청약통장을 해지한 경우에는 청약이 불가합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시 가점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에 한하여 주민등록표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청약신청 내용과 실제 청약자격의 일치 및 적격 여부를 확인한 후에 계약 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와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모든 주택(APT, 불법행위재공급, 규제지역 무순위)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이 가능하며(청약홈 및 LH청약플러스 등의 기관을 통해 청약접수 및 당첨자 선정을 진행하는 경우 포함), 2건 이상 중복신청 시 모두 무효 또는 부적격 처리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단,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각 1건씩 중복청약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간 또는 일반공급간 중복청약 시 모두 무효 처리)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당첨자 발표일이 늦은 주택의 당첨은 자동 취소됩니다.(각각 동일한 청약통장으로 당첨된 경우에 한함)

■ 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 시 당첨자로 전산관리 되며, 사용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하고,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분은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됩니다.

■ 2018.12.11.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2호의3, 제2조제4호에 의거 '세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시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아들·딸,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전혼자녀 등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며,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

- "무주택세대주"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를 말함

■ 2018.12.11.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7호의2, 제23조제4항, 제53조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주택 소유로 간주하오니, 주택소유 여부 판정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기타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 참조)

※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등의 범위(국토교통부령 부칙 제3조, 제565호, 2018.12.11. 시행)

- 분양권등 신규 계약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공급계약 체결일' 기준 주택 소유로 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소유로 봄)

- 분양권등 매수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실거래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을 기준으로 주택 소유로 봄

■ 2018.12.11.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 제1호 나목에 의거 주택(분양권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는 직계존속과 직계존속의 배우자는 가점제 항목의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습니

다. 부양가족 판단 시 직계비속은 미혼자녀와 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인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제1항에 따라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실시합니다.

■ 한국부동산원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한 공급유형별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급유형	당첨자 선정	예비입주자 선정	동호수 결정
특별공급	유형별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름	주택형별 공급세대수의 500%까지 추첨으로 선정	특별공급/일반공급 구분 없이 주택형별 무작위 추첨으로 결정
일반공급	순위별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름	(1순위) 주택형별 공급세대수의 500%까지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여 가점순으로 선정(동점 시 추첨) (2순위)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입주자 수만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여 추첨으로 선정	

- 특별공급 유형별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다른 특별공급 유형의 청약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분(기관추천 예비대상자 포함)을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이후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물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주택형별 특별공급 청약신청자 수가 특별공급 세대수의 60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주택형별 일반공급 1순위 청약신청자 수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600%를 초과할 경우 2순위 접수분은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2019.12.06.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청약신청자 수가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되어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합니다.(동점 시 추첨)
- 미계약 또는 계약해제 발생 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합니다. 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입주자 명단 및 순번은 당첨자명단 발표 시 함께 발표됩니다.
- 특별공급 잔여물량은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일반공급 잔여물량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물량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2018.05.04.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제6항에 의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이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예비입주자로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 동·호수 배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의 동·호수배정일(당첨일)이 다른 주택의 당첨자 발표일보다 빠른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 체결은 가능하며 다른 주택의 당첨 내역은 무효 처리됩니다.

■ 선정된 예비입주자 현황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18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 때까지로 함) 당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s://uws.skview.co.kr)에 공개하며, 공개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에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고, 예비입주자의 지위가 소멸된 때 예비입주자와 관련한 개인정보는 파기처리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19.11.0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 및 제23조제2항제7호에 따라 우선공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장기해외체류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신청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됩니다.

출입국사실증명서 상 해외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한 기간(입국 후 7일 내 동일국가 재출국 시 계속하여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봄) 또는 연간 183일을 초과(거주제한기간이 2년인 주택은 각 연도별 183일을 말함) 하여 국외에 거주한 기간은 국내 거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해당 주택건설지역으로 청약할 수 없습니다. 단, 90일 이내의 여행, 출장, 파견 등 단기 해외체류는 국내거주로 간주되어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1)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나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여 국외에 체류한 경력이 있으면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는 불인정하나 기타지역 거주자로는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2)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3)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한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불인정되며 기타지역 거주자로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8항에 따라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 고령자, 장애인, 다자녀가구(단, **미성년자녀 3명** 이상)의 최하층 우선배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1조)

- 최하층이라 함은 1층을 말하며(1층이 없는 경우 최저층을 말함), 최하층 주택의 분양금액이 바로 위층 주택의 분양금액보다 높은 경우는 최하층 우선배정하지 않습니다.
- **제1호**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인 분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 **제2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분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 **제3호 미성년자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분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이 있는 경우에는 청약 시 최하층의 주택 배정을 희망한 당첨자에 대해서 해당 층을 우선 배정합니다.
-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분과 제3호에 해당하는 분 사이에 경쟁이 있으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분에게 우선 배정합니다.

- 최하층 우선배정 신청자가 최하층 우선배정 세대수보다 많은 경우 최하층이 아닌 층을 배정받을 수 있으며, 적은 경우에는 최하층 우선배정 미신청자에게도 최하층이 배정될 수 있습니다.

■ 주민등록표초본상 말소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시·도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합니다.

■ 청약통장 관련 기준

-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 기한 :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 시 청약 신청가능
- 청약예금 지역간 예치금액 차액 충족 기한 : 청약 접수 당일까지 충족 시 청약 신청가능
  (단, 차액을 감액하는 경우이거나 주거지 변경없이 가입한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청약 신청할 경우에는 예치금액 변경없이 청약 신청가능)
- 청약예금의 신청가능 주택규모 변경 기한 :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 시 청약 신청가능(단, 작은 주택규모로 변경할 경우 해당구간의 청약예치금액 충족 시 별도의 주택규모 변경 절차 없이 하위 면적 모두 신청가능)
- 주택청약종합저축 예치금 충족 기한 : 입주자모집공고 당일까지 예치금 충족 시 청약 신청가능
- 종전통장(청약예금, 청약부금)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 기한 : 최초 청약접수일 전일까지 전환개설 완료 시 청약 신청가능 (단, 청약자격 및 순위 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산정)
  ※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하는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전환개설 완료하여야 청약 신청이 가능하며,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산정 (단, 국민주택 청약 시 기존 청약통장가입일을 기준으로 산정)

■ 위장전입 및 불법 전매제한 등을 통한 부정한 당첨자는「주택법」제65조 및「주민등록법」제37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21.02.19.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6조에 따라「주택법」제64조제1항 및 제6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적발된 경우, 위반한 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10년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 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7조제8항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상의 기간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 및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된 경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자발표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 사전청약 및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9조제2항에 따라 주택의 공급계약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사실 공고일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기간 동안에 체결합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음이 확인될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하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아래와 같이 청약신청 유형별 사용 가능한 인증서를 미리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신청 유형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KB국민인증서	토스인증서	신한인증서	카카오인증서
APT	O						

※ 단, APT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 중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는 유형의 청약신청자는 공동인증서 및 금융인증서만 사용가능합니다.

■ 개정된 내용에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후 정책변경 및 법 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부동산 거래의 신고,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신고 의무화

-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경기도 의왕시는 투기과열지구로「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 및 별표1 규정에 의거 주택매매 계약(최초 공급계약 및 분양권·입주권 전매를 포함)의 부동산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 및 입주계획서(매수자 본인이 입주할지 여부, 입주 예정시기 등 거래대상 주택의 이용계획)의 신고를 의무화하며,「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 규정에 의거 부동산 계약 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필요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해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비 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인지세 납부 관련 안내

- 계약자 부담 부분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납부,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분실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가산세 등)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 아파트 공급계약서는「인지세법」제3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인지세 납부 대상으로「인지세법」제1조 제2항에 의거 분

양계약 체결 시 사업주체와 분양계약자는 과세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정부수입인지 형태로 균등(각각 50%)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전자수입인지를 구입하여 계약서에 첨부)

기재금액		1천만원 초과~3천만원 이하	3천만원 초과~5천만원 이하	5천만원 초과~1억원 이하	1억원 초과~10억원 이하	10억원 초과
납부세액	총액	2만원	4만원	7만원	15만원	35만원
	사업주체 부담액	1만원	2만원	3만5천원	7만5천원	17만5천원
	분양계약자 부담액	1만원	2만원	3만5천원	7만5천원	17만5천원

- 발코니 확장 계약서 및 추가선택품목 계약서는「인지세법」제3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 '도급에 관한 증서'로서 인지세 납부 대상으로,「인지세법」제1조 제2항에 의거 분양계약 체결 시 사업주체(또는 시공사)와 분양계약자는 과세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정부수입인지 형태로 균등(각각 50%)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전자수입인지를 구입하여 계약서에 첨부)

기재금액		1천만원 초과~3천만원 이하	3천만원 초과~5천만원 이하	5천만원 초과~1억원 이하	1억원 초과~10억원 이하	10억원 초과
납부세액	총액	2만원	4만원	7만원	15만원	35만원
	공급주체(시공사) 부담액	1만원	2만원	3만5천원	7만5천원	17만5천원
	분양계약자 부담액	1만원	2만원	3만5천원	7만5천원	17만5천원

※ 부동산 등기(최초 분양계약자와 최종 매수자의 인지세 납부의무이행 확인)와는 무관하게 중간 전매계약도 인지세법에 따른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부동산 거래계약서의 실제거래가격(분양대금+프리미엄)을 기재금액으로 하여 해당되는 세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정부수입인지는 취급금융기관(우체국, 은행) 또는 전자수입인지 사이트(www.e-revenuestamp.co.kr)에서 발급 가능하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금융결제원(☎1577-5500)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부수입인지는 분양권 매매 당사자뿐만 아니라 물건을 중개하는 공인중개사나 등기 대행하는 법무사도 구매하여 첨부할 수 있습니다.

※ 정부수입인지는 1회에 한하여 출력되므로 직접출력 시 반드시 프린터 상태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재발행 불가)

※ 인지세 납부 등과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자료실(인지세 자주 묻는 상담사례)에서 확인하시거나 세무서(소비담당)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계약체결 이후 부적격 당첨, 공급질서 교란행위, 통장매매, 위장전입 등의 사유로 계약이 취소될 경우 사업주체에 인지세 환불을 요구할 수 없으니 이점 양지하여야 합니다.

■ 본 입주자공고문은 작성 당시 법령 및 정책 등의 규정에 의거하여 작성하였으며, 이후 정책변경 및 법 개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그로 인하여 사업주체에게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 단지 유의사항

■ 본 주택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6.07.10.(금)입니다. (청약자격 요건 중 기간, 나이, 지역우선공급 등의 판단기준일)

■ 해당 주택건설지역(의왕시)은「주택법」제63조 및 제63조의2에 의한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및「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입니다.

■ 본 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의왕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19세 이상인 분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 [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의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청약신청자 중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의왕시 2년 이상 거주자가(2024.07.10. 이전부터 계속 거주) 우선합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구 분	특별공급	일반공급 1순위		일반공급 2순위	당첨자발표	서류접수	계약체결
		해당지역	기타지역				
일 정	'26.07.20.(월)	'26.07.21.(화)	'26.07.22.(수)	'26.07.23.(목)	'26.07.29.(수)	'26.07.31.(금) ~ 08.08.(토)	'26.08.10.(월) ~ 08.13.(목)
방 법	▪ (PC·모바일) 청약홈(09:00 ~ 17:30) ▪ (현장접수) 견본주택	▪ (PC·모바일) 청약홈(09:00 ~ 17:30) ▪ (현장접수) 청약통장 가입은행			▪ (PC·모바일) 청약홈	▪ 의왕역 SK VIEW 견본주택 : 경기도 의왕시 삼동 277-6번지 (10:00 ~ 17:00)	

※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 한해 특별공급은 견본주택 현장접수(10:00~14:00, 은행창구 접수 불가), 일반공급은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09:00~16:00)에서 청

약 가능함(단, 은행 영업점별 업무 시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람)

※ 청약신청 취소는 청약신청일 당일 17:30까지 가능하며, 청약신청일 당일 17:30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청약신청 취소 불가

※ 모바일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모바일 청약 시,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인증서를 청약홈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기 바라며,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 당첨자로 선정 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른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게 되며 기존 주택 당첨으로 인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본 아파트 청약이 불가합니다.

당첨된 주택의 구분	적용기간(당첨자 발표일로부터)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제1항제6호)	10년

※ (예외1)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에 따라 신혼부부·생애최초·신생아 특별공급 신청 시, 배우자의 재당첨 제한 시작일이 혼인 전인 경우에는 당첨자발표일 기준 배우자의 재당첨 제한 기간이 만료되지 않았더라도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

※ (예외2) 2025.03.3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에 따라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 시, 청약신청자 본인의 재당첨 제한 시작일이 혼인 전인 경우에는 당첨자발표일 기준 본인의 재당첨 제한 기간이 만료되지 않았더라도 1회에 한해 재당첨 가능합니다.(혼인특례 사용하여 청약신청)

※ (예외3)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2에 따라 세대원간 재당첨제한 적용 주택에 중복당첨 시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구분		처리방법
당첨자발표일이 다른 주택		**당첨자발표일**이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당첨자발표일**이 늦은 당첨건은 **부적격** 처리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	부부가 중복당첨된 경우	**접수일시**가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접수일시**가 늦은 당첨건은 **무효** 처리 ※ 분 단위 접수일시가 동일한 경우,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청약신청자의 당첨건이 유효
	부부 외 세대원이 중복당첨된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수도권 외 지역에 거주하여도 기타지역(수도권) 거주자격으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해당지역 거주자격으로 청약은 불가함)

■ 본 주택의 전매제한은 최초 당첨자발표일(2026.07.29.)로부터 적용되며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기간	관계법령
전매제한기간	3년(단,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때까지)	「주택법 시행령」 제73조제1항 별표 3 규정에 따름

■ 2026.06.15. 시행된 내용 관련 자세한 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1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의왕시 도시정비과 - 10554(2026.07.09.)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입주자모집공고일 : 2026년 07월 10일(금)
■ 공급위치 : 경기도 의왕시 삼동 192-244번지 일원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 3층, 지상 34층, 13개동 총 1,857세대[조합원 922세대, 보류지 22세대, 임대 93세대] 중 일반분양 820세대
[특별공급 450세대(기관추천 82세대, 다자녀가구 82세대, 신혼부부 123세대, 노부모부양 24세대, 생애최초 57세대, 신생아 82세대 포함)]
■ 입주시기 : 2029년 12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공급대상

(단위: ㎡, 세대)

주택구분	주택관리번호	모델	주택형(전용면적기준)	약식표기(타입)	주택공급면적(㎡)			기타 공용면적(지하 주차장등)	계약면적	세대별 대지지분	총공급 세대수	특별공급 세대수							일반공급 세대수	최하층 우선배정 세대수
					전용	주거공용	소계					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신생아	계		
민영주택	2026000301	1	036.9653	36	36.9653	19.8208	56.7861	34.3874	91.1735	20.0540	3	-	-	-	-	1	-	1	2	-
		2	045.9344	45	45.9344	23.4813	69.4157	42.7310	112.1467	24.5141	34	3	-	5	1	2	3	14	20	2
		3	059.8216A	59A	59.8216	26.6495	86.4711	55.6497	142.1208	30.5372	66	7	8	10	2	5	7	39	27	18
		4	059.7397B	59B	59.7397	26.6509	86.3906	55.5734	141.9640	30.5088	415	42	43	62	12	29	42	230	185	14
		5	084.6871A	84A	84.6871	30.0039	114.6910	78.7811	193.4721	40.5030	50	5	6	8	2	4	5	30	20	17
		6	084.3460B	84B	84.3460	29.8721	114.2181	78.4638	192.6819	40.3360	142	14	14	21	4	9	14	76	66	7
		7	084.2485C	84C	84.2485	30.2609	114.5094	78.3732	192.8826	40.4390	110	11	11	17	3	7	11	60	50	6
	계										**820**	**82**	**82**	**123**	**24**	**57**	**82**	**450**	**370**	**64**

※ 평형환산방법 : 공급면적(㎡) x 0.3025 또는 공급면적(㎡) ÷ 3.3058
※ 주택형의 구분은 공고상의 표기이며 견본주택 및 공급안내문/홍보 제작물은 약식으로 표현되었으니, 청약 및 계약 시 주택형에 대한 혼돈 방지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형별 특별공급 물량 중 신청접수 미달 물량에 대해서는 다른 특별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신청자에게 추첨의 방법으로 우선 공급합니다.
단, 주택형별 특별공급 전체 신청물량이 공급량에 미달할 경우 남은 물량은 일반공급으로 전환됨에 따라 일반공급 물량은 특별공급 신청접수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세대 바닥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을 제외하고 남은 외벽면적과 계단, 복도, 엘리베이터 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기타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주민공동시설 등의 공용면적을 의미합니다.
※ 주거공용면적과 기타 공용면적은 상품성 개선 및 현장 여건 반영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최하층이라 함은 각호의 최저층을 말하며 1층 또는 2층이 필로티인 경우 필로티 바로 위층을 최저층으로 합니다.
※ 상기 면적은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표현되므로 면적 계산상 소수점 자리에서 단수정리에 따라 연면적과 전체 계약면적과는 소수점에서 약간의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택형 표시 안내

공고상(청약시) 주택형	036.9653	045.9344	059.8216A	059.7397B	084.6871A	084.3460B	084.2485C
약식표기(타입)	36	45	59A	59B	84A	84B	84C

■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단위 : 세대, 원)

약식표기 (타입)	동/호 구분	층구분	해당 세대수	공급금액				계약금(10%)		중도금(60%)						잔금(30%)
								1차	2차	1회(10%)	2회(10%)	3회(10%)	4회(10%)	5회(10%)	6회(10%)	
				대지비	건축비	부가가치세	계	계약 시	계약 후 30일 이내	2027-02-15	2027-08-17	2028-02-15	2028-10-16	2029-02-15	2029-06-15	입주지정일
36	113동 3, 4, 5호	17층	3	128,414,500	266,585,500	-	395,000,000	10,000,000	29,500,000	39,500,000	39,500,000	39,500,000	39,500,000	39,500,000	39,500,000	118,500,000
45	113동 7, 8호	2층	2	168,401,800	349,598,200	-	518,000,000	10,000,000	41,800,000	51,800,000	51,800,000	51,800,000	51,800,000	51,800,000	51,800,000	155,400,000
		3층	2	172,953,200	359,046,800	-	532,000,000	10,000,000	43,200,000	53,200,000	53,200,000	53,200,000	53,200,000	53,200,000	53,200,000	159,600,000
		4층	2	175,228,900	363,771,100	-	539,000,000	10,000,000	43,900,000	53,900,000	53,900,000	53,900,000	53,900,000	53,900,000	53,900,000	161,700,000
		5-9층	10	178,154,800	369,845,200	-	548,000,000	10,000,000	44,800,000	54,800,000	54,800,000	54,800,000	54,800,000	54,800,000	54,800,000	164,400,000
		10-17층	16	180,430,500	374,569,500	-	555,000,000	10,000,000	45,500,000	55,500,000	55,500,000	55,500,000	55,500,000	55,500,000	55,500,000	166,500,000
		26층	2	184,656,800	383,343,200	-	568,000,000	10,000,000	46,800,000	56,800,000	56,800,000	56,800,000	56,800,000	56,800,000	56,800,000	170,400,000
59A	101동 1, 2, 4, 5호 102동 2, 3, 5호 103동 2, 3, 5호 104동 2, 3, 5호 105동 2, 3호 110동 1, 2, 3호	1층	4	266,582,000	553,418,000	-	820,000,000	10,000,000	72,000,000	82,000,000	82,000,000	82,000,000	82,000,000	82,000,000	82,000,000	246,000,000
		2층	18	275,034,600	570,965,400	-	846,000,000	10,000,000	74,600,000	84,600,000	84,600,000	84,600,000	84,600,000	84,600,000	84,600,000	253,800,000
		3층	18	280,886,400	583,113,600	-	864,000,000	10,000,000	76,400,000	86,400,000	86,400,000	86,400,000	86,400,000	86,400,000	86,400,000	259,200,000
		4층	16	283,812,300	589,187,700	-	873,000,000	10,000,000	77,300,000	87,300,000	87,300,000	87,300,000	87,300,000	87,300,000	87,300,000	261,900,000
		5-7층	9	286,738,200	595,261,800	-	882,000,000	10,000,000	78,200,000	88,200,000	88,200,000	88,200,000	88,200,000	88,200,000	88,200,000	264,600,000
		33층	1	290,964,500	604,035,500	-	895,000,000	10,000,000	79,500,000	89,500,000	89,500,000	89,500,000	89,500,000	89,500,000	89,500,000	268,500,000
59B	101동 3, 6호 102동 1, 4, 6호 103동 1, 4, 6호 104동 1, 4, 6호 105동 1, 4호 110동 4호	1층	12	258,129,400	535,870,600	-	794,000,000	10,000,000	69,400,000	79,400,000	79,400,000	79,400,000	79,400,000	79,400,000	79,400,000	238,200,000
		2층	14	266,907,100	554,092,900	-	821,000,000	10,000,000	72,100,000	82,100,000	82,100,000	82,100,000	82,100,000	82,100,000	82,100,000	246,300,000
		3층	14	272,758,900	566,241,100	-	839,000,000	10,000,000	73,900,000	83,900,000	83,900,000	83,900,000	83,900,000	83,900,000	83,900,000	251,700,000
		4층	14	275,359,700	571,640,300	-	847,000,000	10,000,000	74,700,000	84,700,000	84,700,000	84,700,000	84,700,000	84,700,000	84,700,000	254,100,000
		5-9층	70	278,285,600	577,714,400	-	856,000,000	10,000,000	75,600,000	85,600,000	85,600,000	85,600,000	85,600,000	85,600,000	85,600,000	256,800,000
		10-20층	153	281,211,500	583,788,500	-	865,000,000	10,000,000	76,500,000	86,500,000	86,500,000	86,500,000	86,500,000	86,500,000	86,500,000	259,500,000
		21층 이상	138	287,063,300	595,936,700	-	883,000,000	10,000,000	78,300,000	88,300,000	88,300,000	88,300,000	88,300,000	88,300,000	88,300,000	264,900,000
84A	105동 5호 106동 2, 3, 5호 107동 2, 3, 5호 108동 1, 2, 3, 5, 6호 111동 2, 4호 112동 1, 2, 4호	1층	2	332,577,300	690,422,700	-	1,023,000,000	10,000,000	92,300,000	102,300,000	102,300,000	102,300,000	102,300,000	102,300,000	102,300,000	306,900,000
		2층	17	343,955,800	714,044,200	-	1,058,000,000	10,000,000	95,800,000	105,800,000	105,800,000	105,800,000	105,800,000	105,800,000	105,800,000	317,400,000
		3층	17	351,758,200	730,241,800	-	1,082,000,000	10,000,000	98,200,000	108,200,000	108,200,000	108,200,000	108,200,000	108,200,000	108,200,000	324,600,000
		4층	14	355,334,300	737,665,700	-	1,093,000,000	10,000,000	99,300,000	109,300,000	109,300,000	109,300,000	109,300,000	109,300,000	109,300,000	327,900,000
84B	106동 4호 107동 4호 108동 4호 109동 1, 2호 111동 3호 112동 3호	1층	6	324,124,700	672,875,300	-	997,000,000	10,000,000	89,700,000	99,700,000	99,700,000	99,700,000	99,700,000	99,700,000	99,700,000	299,100,000
		2층	7	336,153,400	697,846,600	-	1,034,000,000	10,000,000	93,400,000	103,400,000	103,400,000	103,400,000	103,400,000	103,400,000	103,400,000	310,200,000
		3층	7	343,630,700	713,369,300	-	1,057,000,000	10,000,000	95,700,000	105,700,000	105,700,000	105,700,000	105,700,000	105,700,000	105,700,000	317,100,000
		4층	7	347,531,900	721,468,100	-	1,069,000,000	10,000,000	96,900,000	106,900,000	106,900,000	106,900,000	106,900,000	106,900,000	106,900,000	320,700,000
		5-9층	35	351,433,100	729,566,900	-	1,081,000,000	10,000,000	98,100,000	108,100,000	108,100,000	108,100,000	108,100,000	108,100,000	108,100,000	324,300,000
		10-20층	50	353,708,800	734,291,200	-	1,088,000,000	10,000,000	98,800,000	108,800,000	108,800,000	108,800,000	108,800,000	108,800,000	108,800,000	326,400,000
		21층 이상	30	356,309,600	739,690,400	-	1,096,000,000	10,000,000	99,600,000	109,600,000	109,600,000	109,600,000	109,600,000	109,600,000	109,600,000	328,800,000
84C	105동 6호 106동 1, 6호 107동 1, 6호 111동 1호	1층	4	324,774,900	674,225,100	-	999,000,000	10,000,000	89,900,000	99,900,000	99,900,000	99,900,000	99,900,000	99,900,000	99,900,000	299,700,000
		2층	6	337,128,700	699,871,300	-	1,037,000,000	10,000,000	93,700,000	103,700,000	103,700,000	103,700,000	103,700,000	103,700,000	103,700,000	311,100,000
		3층	6	344,606,000	715,394,000	-	1,060,000,000	10,000,000	96,000,000	106,000,000	106,000,000	106,000,000	106,000,000	106,000,000	106,000,000	318,000,000
		4층	6	348,507,200	723,492,800	-	1,072,000,000	10,000,000	97,200,000	107,200,000	107,200,000	107,200,000	107,200,000	107,200,000	107,200,000	321,600,000
		5-9층	30	352,083,300	730,916,700	-	1,083,000,000	10,000,000	98,300,000	108,300,000	108,300,000	108,300,000	108,300,000	108,300,000	108,300,000	324,900,000
		10-20층	45	354,359,000	735,641,000	-	1,090,000,000	10,000,000	99,000,000	109,000,000	109,000,000	109,000,000	109,000,000	109,000,000	109,000,000	327,000,000
		21층 이상	13	356,959,800	741,040,200	-	1,098,000,000	10,000,000	99,800,000	109,800,000	109,800,000	109,800,000	109,800,000	109,800,000	109,800,000	329,400,000

■ **공통 유의 사항**

- 2009.04.01「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으로 인해 주택형 표기방식이 기존(주거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만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이점 유념하시어 청약신청 바랍니다.
- 본 주택은 분양가 상한제 미적용 주택으로 상기 공급금액은 분양가 자율화에 따라 '주택형별', '구조별', '층별'에 따라 차등을 두어 책정한 금액입니다.
- 전용면적은 안목치수로 산정하며 그 외 면적은 중심선 치수로 산정합니다. 소수점 이하 단수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모두 소유권이전등기 비용, 통합취득세가 미포함된 금액입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발코니 확장 비용, 추가선택 품목 비용이 미포함 되었으며, 주택 분양계약 체결 시 별도계약을 통해 선택이 가능합니다.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계단, 복도, 주현관 등 주거공용면적과 지하주차장, 관리/경비실, 주민공동시설, 기계/전기실 등의 그 밖의 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으며, 각 주택형별 지하주차장 및 기타공용부분에 대한 금액이 상기 분양금액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단지 내 상가)은 별도 분양대상으로서 상기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공급금액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며 잔금은 입주(열쇠 불출일)전에 완납하여야 합니다. (중도금 및 잔금 납부일이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일 은행영업일을 기준으로 함) 또한, 연체료 납부 시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로 인해 납부가 지연되는 경우에도 연체료가 발생함으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중도금은 해당 주택의 건축공정이 전체 공사비(부지매입비를 제외함)의 50% 이상이 투입된 때(다만, 동별 건축공정이 30% 이상이어야 함)를 기준으로 전후 각 2회 이상 분할하여 받으며, 상기 중도금 납부일자는 예정일자로서 감리자의 건축공정 확인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의 중도금은 사업주체와 대출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한 대출취급기관의 대출을 통해 납입할 수 있습니다. 단, 대출 미신청자와 본인의 사유(보증제한, 신용불량 등)로 인하여 대출이 불가한 계약자는 상기 납부일정에 맞추어 본인이 직접 납부하여야 하며, 미납 시 연체료 부과 또는 계약조건에 의거하여 계약해제될 수 있습니다. (중도금 대출취급기관과 관련한 내용은 별도 안내 예정)
- 중도금 대출을 원하는 수분양자는 계약체결 후 지정된 대출취급기관과 중도금 대출 계약을 별도로 체결해야 합니다. (세부적인 대출신청 일정 등은 별도 안내 예정)
- 잔금은 사용검사일 이후에 받되,「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0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임시사용승인(동별사용검사 포함)을 얻어 입주하는 경우에는 전체 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을 입주일에 납부하고, 전체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잔금은 사용검사일 기준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대지권에 대한 등기는 공부정리 절차 등의 이유로 실입주일과는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며, 본 조항은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 대출에 따른 보증수수료 및 인지대 등의 추가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대출에 관한 추가비용은 대출신청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단, 사업주체는 사업주체의 알선조건에 충족하는 계약자에게만 대출을 알선함)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는 것으로 봅니다.
- 본 표시재산의 구조물 등 제반 사항은 설계도면 등을 통하여 반드시 확인 후 계약하여야 하며, 확인하지 못한 사항으로 인한 이의제기 및 그 밖의 인쇄물이나 구두 약정의 내용은 인정하지 아니합니다.
- 본 아파트에 대한 신청자격 등 판단 시 기준이 되는 면적은 주거전용면적이고, 연령 조건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며, 당첨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본인의 책임과 비용으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소명기간 이내에 소명을 완료하여야만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 청약(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및 분양계약 시 모든 제출서류는 원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본 불가)
- 상기 공급세대의 청약접수는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한국부동산원)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 동별, 층별, 호별 구분 없이 주택형별, 청약 순위별로 접수를 받고 동·호수를 추첨하여 추첨결과에 따라 각 동별, 층별, 호별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본 아파트의 판매시점에 따라 향후 분양 및 판매조건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변경된 분양 및 판매조건은 소급해서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수분양자는 이와 관련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는 실입주자를 위하여 건립되는 것이므로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신청서의 내용 변조 등의 행위로 주택공급 질서를 어지럽힐 경우에는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 본 아파트의 지번(공급위치), 단지 명칭, 동 표시, 외부 색채와 계획, 조경시설물 등이 관계기관 심의 및 협의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청약신청 및 계약장소에서 발생되는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시공업체, 부동산중개업자 등의 영업행위)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 분양사업자와 무관한 사항입니다.
- 입주개시 전 특정 일자를 계약자들에게 통보하여 사전방문 및 점검토록 할 예정입니다.
- 특별공급 미 청약분은 일반공급으로 전환됨에 따라 일반공급 세대수는 특별공급의 청약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세대별 대지지분은 주택형별 분양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향후 지적확정측량 결과 및 공부정리 결과에 따라 법령이 허용하는 오차 범위 내에서 대지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단, 소수점 이하의 면적변경에 따른 분양가 정산은 없습니다.)
- 견본주택에는 59㎡B, 84㎡A, 84㎡B 타입이 설치되어 있으며, 이외 주택형은 견본주택에 설치되어 있지 않으므로 청약신청 시 공급안내문(카달로그 등)에 표기된 평형별 평면 등의 형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은 정부가 출자한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분양 보증 받은 공동주택입니다.
- 본 표기재산의 구조물 등 제반 사항은 설계도면 등을 통하여 반드시 확인 후 계약하여야 하며, 확인하지 못한 사항으로 인한 이의제기 및 그 밖의 광고, 인쇄물이나 구두약정의 내

용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2025.10.15. 발표된 [주택시장안정화 대책 방안]에 따라 잔금대출에 대한 LTV 및 DSR 등의 규제가 강화되어 추후 입주에 따른 잔금대출 시 금융기관으로부터 개인별 대출한도가 축소되거나 대출 자체가 거부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책임을 요구할 수 없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특별공급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 **특별공급 신청자격별 · 주택형별 공급세대수**

구 분(약식표기)			36	45	59A	59B	84A	84B	84C	합 계
기관추천 특별공급	장애인	경기도	-	1	1	6	1	2	2	**13**
		서울특별시	-	-	1	6	1	2	1	**11**
		인천광역시	-	-	1	6	-	2	1	**10**
	국가유공자		-	1	1	6	1	2	2	**13**
	장기복무 제대군인		-	-	1	6	-	2	1	**10**
	10년이상 장기복무군인		-	-	1	6	1	2	2	**12**
	중소기업 근로자		-	1	1	6	1	2	2	**13**
	소계		-	3	7	42	5	14	11	**82**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의왕시 및 경기도 거주자(50%)		-	-	4	22	3	7	6	**42**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거주자(50%)		-	-	4	21	3	7	5	**40**
신혼부부 특별공급			-	5	10	62	8	21	17	**123**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1	2	12	2	4	3	**24**
생애최초 특별공급			1	2	5	29	4	9	7	**57**
신생아 특별공급			-	3	7	42	5	14	11	**82**
합 계			**1**	**14**	**39**	**230**	**30**	**76**	**60**	**450**

※ 주택형별 특별공급대상 세대수는 공급세대수, 비율 등을 감안하여 배정하였으며 배정 호수가 없는 주택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음.

■ **[2025.03.31.「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5조의3(특별공급 신청 요건 등에 관한 특례) 개정 사항]**

조항	특별공급 신청유형	내용	유의사항
제1항 (배우자의 혼인 전 이력 배제)	신혼부부 생애최초 신생아	■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 당첨된 이력**에 따른 **청약 제한사항이 있더라도** 이를 배제하고 청약신청 가능	- 적용횟수 제한 없음
	생애최초	■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더라도 이를 배제하고 청약신청 가능(혼인 전 처분완료한 경우에 한함)	
제2항(혼인특례)	신혼부부	■ **청약신청자**가 **혼인 전 당첨된 이력**에 따른 **청약 제한사항(재당첨 제한, 특별공급 횟수 제한)이 있더라도** 이를 배제하고 청약신청 가능	- **혼인특례**는 **본인 기준 1회**에 한하여 적용 가능
제3항 (출산특례)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 **'24.6.19. 이후 출생한 자녀**(태아 또는 '24.6.19. 이후 출생한 사람을 입양한 경우 포함)가 있는 경우 **청약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가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이력이 있더라도** 제55조에 따른 특별공급 횟수 제한에도 불구하고	- **출산특례**는 **세대 기준 1회**에 한하여 적용 가능

	노부모부양 신생아	청약신청 가능 → 이 경우, 특별공급의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에도 불구하고 **청약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기존주택 처분 조건***으로 청약신청 가능 * **기존주택 처분 조건** :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함 - 1. 기존 소유 주택의 소유권 처분 조건을 승낙할 것 - 2. 공급받은 주택의 입주 전에 기존 소유 주택의 소유권 처분에 관한 서류(「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3조제4항 각 호)를 사업주체에게 제출할 것 - 3. 공급받은 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기존 소유 주택의 처분을 완료할 것 → 이 경우, 신혼부부, 신생아 특별공급(공공주택 제외) 추첨제 청약신청자의 **부동산가액 산정** 시 청약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가액은 합산하지 않음	- 특별공급 횟수 제한 외 **다른 청약 제한사항**은 배제할 수 없음 - **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이력이 없는 경우 출산특례 적용 불가** - 청약신청자 및 배우자 **외의 세대원**이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이력이 있거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출산특례적용 불가

※ **혼인특례** 또는 **출산특례**를 사용하여 청약하려는 분은 **청약신청 시 특례 사용여부를 선택**하여야 하며, 청약신청 시 선택한 특례 사용여부는 **변경·취소할 수 없습니다.**

- 특례를 사용하여 본 주택의 특별공급 입주자 및 추가입주자로 선정될 경우,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 없이 특별공급 당첨자 및 특례 사용자로 명단 관리**하며 향후 **혼인특례 사용자 본인**은 **혼인특례를 재사용할 수 없고, 출산특례 사용자가 속한 세대는 출산특례를 재사용할 수 없습니다.**
- 특례를 사용하지 않아도 특별공급 입주자로 선정될 수 있는 분이 착오에 의해 특례를 사용한 경우라 하더라도 **특례 사용 사실은 정정될 수 없으며, 특례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분**이 특례를 사용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당첨이 취소되고 **부적격 당첨자**로 관리합니다.

※ **혼인특례**와 **출산특례**를 **동시에** 사용하여 청약할 수 없습니다.

※ **기존주택 처분 조건**으로 특별공급에 당첨된 분이 공급받을 주택의 **소유권 이전 등기 시점**까지 기존주택 처분 완료함을 증빙하지 못한 경우 공급계약이 취소되며, 입주가 불가합니다.

■ **특별공급 공통사항**

<table>
<tr><th>구분</th><th>내용</th></tr>
<tr><td>공급기준</td><td>■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따라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제1호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 및 제55조의3을 적용하는 경우 특별공급 횟수 제한 예외)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1세대 2인 이상이 청약하여 한 명이라도 당첨될 경우 중복청약으로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
다만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2에 따라 부부는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에 대해 중복청약할 수 있으며, 중복당첨 시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table>
<tr><th colspan="2">구분</th><th>처리방법</th></tr>
<tr><td colspan="2">당첨자발표일이 다른 주택</td><td>당첨자발표일이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당첨자발표일이 늦은 당첨건은 부적격 처리</td></tr>
<tr><td rowspan="2">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td><td>부부가 중복당첨된 경우</td><td>접수일시가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접수일시가 늦은 당첨건은 무효 처리
※ 분 단위 접수일시가 동일한 경우,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청약신청자의 당첨건이 유효</td></tr>
<tr><td>부부 외 세대원이 중복당첨된 경우</td><td>모두 부적격 처리</td></tr>
</table>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청약통장 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특별공급 당첨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도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외국인은 주민등록법상 세대원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자격을 필요로 하는 특별공급 청약이 불가합니다.</td></tr>
<tr><td>무주택
요건</td><td>■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특별공급 유형별로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무주택세대구성원 정의는 "※ 공통 유의사항" p.2 참조)
-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 신생아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주 요건</td></tr>
<tr><td>청약통장
자격요건</td><td>■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기관추천(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청약통장 불필요)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특별공급</td></tr>
</table>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분(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한함)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 신생아 특별공급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한함)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구 분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의왕시 및 경기도)
전용면적 85㎡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 '지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따른 거주지역을 말함
※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가능함

2-1 기관추천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 세대수의 10% 범위 : 82세대

구분	내용
대상자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 해당 기관의 추천 및 인정서류를 받으신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단, 장애인, 국가유공자는 청약통장 불필요)
추천기관	■ 장애인 : 경기도청 장애인복지과, 서울특별시청 장애인자립지원과, 인천광역시청 장애인복지과 ■ 장기복무 제대군인, 국가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 국가보훈부 경기남부보훈지청 복지과 ■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 국군복지단 복지사업운영과 ■ 중소기업 근로자 :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성장지원과
당첨자 선정방법	■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자격요건을 갖춘 분은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해야 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의거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하므로 사업주체 및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은 대상자 선정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 기관추천 특별공급 확정대상자 및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분만 신청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특별공급 청약접수일에 청약신청 완료해야 합니다. (미신청 시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되며 계약 불가) ■ 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분과 함께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되므로,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2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 공급 세대수의 10% 범위 : 82세대

구분	내용
대상자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의왕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과거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가능함 ■ **만19세 미만의 자녀 2명 이상(태아, 입양자녀 포함)이 있는 분** - 자녀는 민법상 미성년자를 말하며, 자녀가 청약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자임을 입증해야 함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
당첨자 선정방법	■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지역 → ②배점 → ③미성년 자녀수 → ④청약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분 → ⑤추첨 ■ **①지역 :** 해당 시·도 거주자 50% (의왕시 및 경기도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자 50%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 우선공급(50%) 내 경쟁이 있을 경우 모집공고일 현재 의왕시 2년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하며, 의왕시 및 경기도 거주자가 우선공급(50%)에서 낙첨된 경우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거주자와 다시 경쟁하며 이때에 지역 우선공급은 적용되지 않음[경쟁이 있는 경우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배점기준표"에 의한 점수 순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함 (주민등록표초본 상 말소사실이 있는 경우 당해 시·도 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함)] ■ **②배점**

배점항목	총배점	배점기준		비고
		기준	점수	
계	100			
미성년 자녀수(1)	40	4명 이상	40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19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
		3명	35	
		2명	25	
영유아 자녀수(2)	15	3명 이상	15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미만의 영유아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
		2명	10	
		1명	5	
세대구성(3)	5	3세대 이상	5	- 청약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이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한부모 가족	5	- 청약신청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분
무주택기간(4)	20	10년 이상	20	- 배우자의 직계존속(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정)도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 청약신청자가 성년(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이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하되 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함)부터 무주택 기간 산정
		5년 이상 ~ 10년 미만	15	
		1년 이상 ~ 5년 미만	10	
해당 시·도 거주기간(5)	15	10년 이상	15	- 청약신청자가 성년자(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로서 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을 산정 * 시는 광역시.특별자치시 기준이고, 도는 도.특별자치도 기준이며, 수도권의 경우 서울·경기·인천 전체를 해당 시·도로 봄
		5년 이상 ~ 10년 미만	10	
		1년 이상 ~ 5년 미만	5	
입주자저축가입기간(6)	5	10년 이상	5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신청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명의 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 * 단,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함

※ (1), (2)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이혼·재혼의 경우 자녀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3) : 한부모 가족의 경우 한부모가족증명서로 확인
(4), (5)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주민등록표초본으로 확인
(3), (4) : 주택소유여부 판단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를 적용
(6) : 입주자저축 순위확인서로 확인

2-3 신혼부부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 세대수의 15% 범위 : 123세대

<table>
<tr><th>구분</th><th>내용</th></tr>
<tr><td>대상자</td><td>■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의왕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혼인기간이 7년 이내(혼인신고일 기준, 동일인과의 재혼인 경우에는 이전 혼인기간을 포함)인 분
■ 「신생아 및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td></tr>
<tr><td>당첨자
선정방법</td><td>■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소득구분 → ②순위 → ③지역 → ④미성년 자녀수 → ⑤추첨

■ ①소득구분
<table>
<tr><th>단계</th><th>소득구분</th><th>내용</th></tr>
<tr><td>1단계</td><td>우선공급(50%)</td><td>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00% 이하여야 함)</td></tr>
<tr><td>2단계</td><td>일반공급(20%)</td><td>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초과 14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16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40% 이하여야 함)</td></tr>
<tr><td>3단계</td><td>추첨공급</td><td>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40% 초과하나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초과),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td></tr>
</table>
※ 각 단계별 낙첨자는 다음 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됨
※ 3단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순위와 관계없이 해당지역 거주자(의왕시 2년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우선공급하고,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으로 선정

■ ②순위
<table>
<tr><th>순위</th><th>내용</th></tr>
<tr><td>1순위</td><td>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태아, 입양자녀 포함)하여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분</td></tr>
<tr><td>2순위</td><td>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분</td></tr>
</table>
■ ③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의왕시 2년 이상 계속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자[의왕시 2년 미만 거주자 및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거주자]</td></tr>
<tr><td>비고</td><td>■ 자녀기준
- 자녀는「민법」제855조제2항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외의 출생자*를 포함
* 현재 혼인관계인 배우자와의 자녀를 혼인신고일 전에 출생신고한 경우
- (②순위 판단 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내 출산(태아, 입양자녀 포함)한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1순위 신청가능
- (④미성년 자녀수 판단 시) 재혼인 경우 청약신청자의 전혼자녀(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 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청약신청자 또는 재혼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 (④미성년 자녀수 판단 시) 재혼인 경우 재혼 배우자의 전혼자녀(재혼 배우자가 이전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 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청약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 (임신·입양) 입주 시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하며,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임신,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td></tr>
</table>

때에는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음
* 출산의 경우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으로 판단
* 임신 상태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확인
* 입양의 경우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

■ **소득기준**

- **소득 확인 시점**

입주자모집공고일	상시근로자 근로소득 확인 시점	사업자 및 프리랜서 등 소득 확인 시점
2026.07.10.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 **2025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소득구분		비율	소득금액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우선공급	부부 중 한 명만 소득이 있는 경우	100% 이하	~7,533,763원	~8,802,202원	~9,326,985원	~9,906,263원	~10,485,541원	~11,064,819원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9,040,516원	~10,562,642원	~11,192,382원	~11,887,516원	~12,582,649원	~13,277,783원
일반공급	부부 중 한 명만 소득이 있는 경우	100% 초과 140% 이하	7,533,764원~ 10,547,268원	8,802,203원~ 12,323,083원	9,326,986원~ 13,057,779원	9,906,264원~ 13,868,768원	10,485,542원~ 14,679,757원	11,064,820원~ 15,490,747원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160% 이하	9,040,517원~ 12,054,021원	10,562,643원~ 14,083,523원	11,192,383원~ 14,923,176원	11,887,517원~ 15,850,021원	12,582,650원~ 16,776,866원	13,277,784원~ 17,703,710원
추첨공급	부부 중 한 명만 소득이 있는 경우	14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충족	10,547,269원~	12,323,084원~	13,057,780원~	13,868,769원~	14,679,758원~	15,490,748원~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충족	12,054,022원~	14,083,524원~	14,923,177원~	15,850,022원~	16,776,867원~	17,703,711원~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579,278) x (N-8)}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가구원수 산정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인정하되,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포함

※ (월평균 소득산정 대상) 가구원수에 포함되는 가구원 중 만19세 이상인 성년자(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 부양) 포함). 단, 세대원의 실종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

※ (월평균소득) 소득산정 대상자별 월평균소득을 합산한 금액.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총급여액(21번) 및 소득금액증명상의 지급받은 총액(수입금액)을 근로기간(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으로 나누어 산정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소득금액을 사업기간(사업자등록증명상의 기간)으로 나누어 산정

※ 소득산정은 청약신청자의 상황(계속적인 근로자 또는 사업자, 신규취업자, 이직자, 신규사업자, 프리랜서 등)에 따라 산정 방식이 달리 적용되므로 본인의 상황을 "주택청약 FAQ(국토교통부 발간)"를 확인하여야 하며, 소득증빙 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부적격 처리 또는 계약 포기로 간주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본인의 자격요건 및 증빙서류를 확인한 후 청약하시기 바람

■ **자산기준**

- **부동산가액 산출기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제13조제2항 및「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제4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서「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4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 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 **자산보유기준**

<table>
<tr><th>구분</th><th>금액</th><th colspan="2">내용</th></tr>
<tr><td rowspan="2">부동산
(건물+토지)</td><td rowspan="2">3억3,100만원
이하</td><td>건축물</td><td>- 건축물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table>
<tr><th colspan="2">건축물 종류</th><th>지방세정 시가표준액</th></tr>
<tr><td rowspan="2">주택</td><td>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td><td>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td></tr>
<tr><td>단독주택</td><td>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td></tr>
<tr><td colspan="2">주택 외</td><td>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td></tr>
</table></td></tr>
<tr><td>토지</td><td>-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표준지·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
단, 아래 경우는 제외
*「농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구·읍·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대장에 같은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초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축산법」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종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 건축물가액에 토지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의 부속토지도 토지가액에 포함(개별공시지가 기준)</td></tr>
</table>

2-4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6조) 공급 세대수의 3% 범위 : 24세대

구분	내용
대상자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의왕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 -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함 ■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한 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부양'의 의미는 같은 주민등록지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것**을 의미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24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과거 5년 이내 당첨된 분의 세대에 속하지 않을 것
당첨자 선정방법	■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지역 → ②가점 → ③청약통장 가입기간 → ④추첨 ■ **①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의왕시 2년 이상 계속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자**[의왕시 2년 미만 거주자 및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거주자]**

■ **②가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가점제 적용기준)에 의거한 청약가점 점수를 기준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며, 청약가점 점수가 본인의 기재 오류에 의한 잘못으로 판명될 경우 부적격 당첨 처리될 수 있으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청약신청자에게 있음.

- **가점 산정기준 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2 나목)**

가점항목	가점상한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①무주택기간	32	만30세 미만 미혼자	0	8년 이상 ~ 9년 미만	18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20
		1년 이상 ~ 2년 미만	4	10년 이상 ~ 11년 미만	22
		2년 이상 ~ 3년 미만	6	11년 이상 ~ 12년 미만	24
		3년 이상 ~ 4년 미만	8	12년 이상 ~ 13년 미만	26
		4년 이상 ~ 5년 미만	10	13년 이상 ~ 14년 미만	28
		5년 이상 ~ 6년 미만	12	14년 이상 ~ 15년 미만	30
		6년 이상 ~ 7년 미만	14	15년 이상	32
		7년 이상 ~ 8년 미만	16		
②부양가족수	35	0명	5	4명	25
		1명	10	5명	30
		2명	15	6명 이상	35
		3명	20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17	6개월 미만	1	8년 이상 ~ 9년 미만	10
		6개월 이상 ~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11
		1년 이상 ~ 2년 미만	3	10년 이상 ~ 11년 미만	12
		2년 이상 ~ 3년 미만	4	11년 이상 ~ 12년 미만	13
		3년 이상 ~ 4년 미만	5	12년 이상 ~ 13년 미만	14
		4년 이상 ~ 5년 미만	6	13년 이상 ~ 14년 미만	15
		5년 이상 ~ 6년 미만	7	14년 이상 ~ 15년 미만	16
		6년 이상 ~ 7년 미만	8	15년 이상	17
		7년 이상 ~ 8년 미만	9		

※ 본인 청약가점 점수 = ① + ② + ③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 시에는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 산정 시 배우자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를 합산하지 않음

■ **③청약통장 가입기간 :** 가입기간은 순위기산일을 기준으로 함
-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함
  * 단,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함

비고

■ 무주택기간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 피부양자(노부모) 및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산정
- 피부양자 및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에서 제외

■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피부양자의 배우자 포함)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 배우자 분리세대의 세대원인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수에 포함할 경우, 배우자는 해당세대의 세대주여야 하며, 세대원도 무주택자여야 함.

2-5 생애최초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3조)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 세대수의 7% 범위 : 57세대

<table>
<tr><th>구분</th><th>내용</th></tr>
<tr><td>대상자</td><td>■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의왕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
■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분
- 모든 세대구성원이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를 말함
※ (예외)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에 따라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 주택을 소유하였다가 혼인 전 처분한 이력은 배제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24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과거 5년 이내 당첨된 분의 세대에 속하지 않을 것
- 세대주일 것
■ 아래 ‘가’ 또는 ‘나’에 해당하는 분
- 가.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 청약신청자가 혼인 중이 아닌 경우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자녀)가 있는 분
- 나. 1인 가구(혼인 중이 아니면서 미혼인 자녀도 없는 분)
* 1인 가구는 추첨제로만 신청가능하며, ‘단독세대’와 ‘단독세대가 아닌 분’으로 구분됨
* ‘단독세대’란, 단독세대주이거나, 동거인이나 형제자매 등 세대구성원에 해당하지 않는 분과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를 말하며, 단독세대 신청자는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형에 한하여 신청 가능함
* ‘단독세대가 아닌 분’이란, 직계존속과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를 말함
■ 「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분
* 과거 1년 내에 소득세(「소득세법」 제19조 또는 제20조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함)를 납부한 분을 포함
** 소득세 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td></tr>
<tr><td>당첨자
선정방법</td><td>■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소득구분 → ②지역 → ③추첨

■ ①소득구분
<table>
<tr><th>단계</th><th>소득구분</th><th colspan="2">내용</th></tr>
<tr><td>1단계</td><td>우선공급(50%)</td><td colspan="2">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인 분</td></tr>
<tr><td>2단계</td><td>일반공급(20%)</td><td colspan="2">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초과 160% 이하인 분</td></tr>
<tr><td rowspan="2">3단계</td><td rowspan="2">추첨공급</td><td>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분</td><td>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td></tr>
<tr><td>1인 가구</td><td>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60% 이하이거나,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td></tr>
</table>
※ 각 단계별 낙첨자는 다음 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됨.

■ ②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의왕시 2년 이상 계속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자[의왕시 2년 미만 거주자 및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거주자]</td></tr>
</table>

비고

■ **자녀기준**

- (임신·입양) 입주 시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하며,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임신,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음
  * 출산의 경우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으로 판단
  * 임신 상태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확인
  * 입양의 경우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

■ **소득기준**

- **소득 확인 시점**

입주자모집공고일	상시근로자 근로소득 확인 시점	사업자 및 프리랜서 등 소득 확인 시점
2026.07.10.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 **2025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소득구분		비율	소득금액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우선공급		130% 이하	~9,793,892원	~11,442,863원	~12,125,081원	~12,878,142원	~13,631,203원	~14,384,265원
일반공급		130% 초과 160% 이하	9,793,893원~ 12,054,021원	11,442,864원~ 14,083,523원	12,125,082원~ 14,923,176원	12,878,143원~ 15,850,021원	13,631,204원~ 16,776,866원	14,384,266원~ 17,703,710원
추첨공급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분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충족	12,054,022원~	14,083,524원~	14,923,177원~	15,850,022원~	16,776,867원~	17,703,711원~
	1인 가구	160% 이하	~12,054,021원	~14,083,523원	~14,923,176원	~15,850,021원	~16,776,866원	~17,703,710원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충족	12,054,022원~	14,083,524원~	14,923,177원~	15,850,022원~	16,776,867원~	17,703,711원~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579,278) x (N-8)}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가구원수 산정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인정하되,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포함

※ (월평균 소득산정 대상) 가구원수에 포함되는 가구원 중 만19세 이상인 성년자(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 부양) 포함). 단, 세대원의 실종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

※ (월평균소득) 소득산정 대상자별 월평균소득을 합산한 금액.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총급여액(21번) 및 소득금액증명상의 지급받은 총액(수입금액)을 근로기간(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으로 나누어 산정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소득금액을 사업기간(사업자등록증명상의 기간)으로 나누어 산정

※ 소득산정은 청약신청자의 상황(계속적인 근로자 또는 사업자, 신규취업자, 이직자, 신규사업자, 프리랜서 등)에 따라 산정방식이 달리 적용되므로 본인의 상황을 "주택청약 FAQ(국토교통부 발간)"를 확인하여야 하며, 소득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부적격처리 또는 계약포기로 간주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본인의 자격요건 및 증빙서류를 확인한 후 청약하시기 바람

■ **자산기준**

- **부동산가액 산출기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제13조제2항 및「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제4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서「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4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 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 **자산보유기준**

※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산기준표 참조(동일)

2-6 신생아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의3)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 세대수의 10% 범위 : 82세대

<table>
<tr><th>구분</th><th>내용</th></tr>
<tr><td>대상자</td><td>■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의왕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24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과거 5년 이내 당첨된 분의 세대에 속하지 않을 것
- 세대주일 것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임신중이거나 입양한 경우 포함)가 있는 분
■ 「신생아 및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분</td></tr>
<tr><td>당첨자
선정방법</td><td>■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소득구분 → ②지역 → ③추첨

■ ①소득구분
<table>
<tr><th>단계</th><th>소득구분</th><th>내용</th></tr>
<tr><td>1단계</td><td>우선공급(50%)</td><td>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인 분</td></tr>
<tr><td>2단계</td><td>일반공급(20%)</td><td>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초과 160% 이하인 분</td></tr>
<tr><td>3단계</td><td>추첨공급</td><td>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td></tr>
</table>
※ 각 단계별 낙첨자는 다음 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됨

■ ②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의왕시 2년 이상 계속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자[의왕시 2년 미만 거주자 및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거주자]</td></tr>
<tr><td>비고</td><td>■ 자녀기준
- (임신·입양) 입주 시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하며,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임신,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음
* 출산의 경우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으로 판단
* 임신 상태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확인
* 입양의 경우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

■ 소득기준
- 소득 확인 시점
<table>
<tr><th>입주자모집공고일</th><th>상시근로자 근로소득 확인 시점</th><th>사업자 및 프리랜서 등 소득 확인 시점</th></tr>
<tr><td>2026.07.10.</td><td>(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td><td>(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td></tr>
</table></td></tr>
</table>

- **2025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소득구분	비율	소득금액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우선공급	130% 이하	~9,793,892원	~11,442,863원	~12,125,081원	~12,878,142원	~13,631,203원	~14,384,265원
일반공급	130% 초과 160% 이하	9,793,893원~ 12,054,021원	11,442,864원~ 14,083,523원	12,125,082원~ 14,923,176원	12,878,143원~ 15,850,021원	13,631,204원~ 16,776,866원	14,384,266원~ 17,703,710원
추첨공급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충족	12,054,022원~	14,083,524원~	14,923,177원~	15,850,022원~	16,776,867원~	17,703,711원~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579,278) x (N-8)}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가구원수 산정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인정하되,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포함

※ (월평균 소득산정 대상) 가구원수에 포함되는 가구원 중 만19세 이상인 성년자(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 부양) 포함). 단, 세대원의 실종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

※ (월평균소득) 소득산정 대상자별 월평균소득을 합산한 금액.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총급여액(21번) 및 소득금액증명상의 지급받은 총액(수입금액)을 근로기간(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으로 나누어 산정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소득금액을 사업기간(사업자등록증명상의 기간)으로 나누어 산정

※ 소득산정은 청약신청자의 상황(계속적인 근로자 또는 사업자, 신규취업자, 이직자, 신규사업자, 프리랜서 등)에 따라 산정방식이 달리 적용되므로 본인의 상황을 "주택청약 FAQ(국토교통부 발간)"를 확인하여야 하며, 소득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부적격처리 또는 계약포기로 간주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본인의 자격요건 및 증빙서류를 확인한 후 청약하시기 바람

■ **자산기준**

- **부동산가액 산출기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제13조제2항 및「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제4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서「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4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 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 **자산보유기준**

※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산기준표 참조(동일)

3 일반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table>
<tr><th>구분</th><th>내용</th></tr>
<tr><td>대상자</td><td>■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의왕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분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
■ 순위별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만족하는 분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경우 아래 조건을 만족해야 1순위 신청가능
- 세대주일 것 (외국인은 주민등록법상 세대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규제지역 1순위 청약 불가)
-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하지 않을 것
- 과거 5년 이내 당첨된 분의 세대에 속하지 않을 것</td></tr>
<tr><td>청약통장
자격요건</td><td>■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1순위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분(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한함)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 2순위 : 예치금액과 관계없이 청약예금·청약부금·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분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table>
<tr><th>구 분</th><th>특별시 및 부산광역시</th><th>그 밖의 광역시</th><th>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의왕시 및 경기도)</th></tr>
<tr><td>전용면적 85㎡ 이하</td><td>300만원</td><td>250만원</td><td>200만원</td></tr>
<tr><td>전용면적 102㎡ 이하</td><td>600만원</td><td>400만원</td><td>300만원</td></tr>
<tr><td>전용면적 135㎡ 이하</td><td>1,000만원</td><td>700만원</td><td>400만원</td></tr>
<tr><td>모든면적</td><td>1,500만원</td><td>1,000만원</td><td>500만원</td></tr>
</table>
※ '지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따른 거주지역을 말함
※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가능함</td></tr>
<tr><td>당첨자
선정방법</td><td>■ 당첨자 선정 순서
- 1순위 가점제 : ①지역 → ②가점 → ③청약통장 가입기간 → ④추첨
- 1순위 추첨제 : ①지역 → ②무주택자 우선공급 → ③추첨
- 2순위 : ①지역 → ②추첨
■ ①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의왕시 2년 이상 계속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자[의왕시 2년 미만 거주자 및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거주자]
■ ②가점
- 전용면적별 1순위 가점제/추첨제 적용비율
<table>
<tr><th>구분</th><th>가점제</th><th>추첨제</th></tr>
<tr><td>전용면적 60㎡ 이하</td><td>40%</td><td>60%</td></tr>
<tr><td>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td><td>70%</td><td>30%</td></tr>
</table></td></tr>
</table>

당첨자 선정방법

- 가점 산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2 나목)

가점항목	가점상한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①무주택기간	32		만30세 미만 미혼자	0	8년 이상 ~ 9년 미만	18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20
			1년 이상 ~ 2년 미만	4	10년 이상 ~ 11년 미만	22
			2년 이상 ~ 3년 미만	6	11년 이상 ~ 12년 미만	24
			3년 이상 ~ 4년 미만	8	12년 이상 ~ 13년 미만	26
			4년 이상 ~ 5년 미만	10	13년 이상 ~ 14년 미만	28
			5년 이상 ~ 6년 미만	12	14년 이상 ~ 15년 미만	30
			6년 이상 ~ 7년 미만	14	15년 이상	32
			7년 이상 ~ 8년 미만	16		
②부양가족수 (청약신청자 본인 제외)	35		0명	5	4명	25
			1명	10	5명	30
			2명	15	6명 이상	35
			3명	20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17	본인	6개월 미만	1	8년 이상 ~ 9년 미만	10
			6개월 이상 ~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11
			1년 이상 ~ 2년 미만	3	10년 이상 ~ 11년 미만	12
			2년 이상 ~ 3년 미만	4	11년 이상 ~ 12년 미만	13
			3년 이상 ~ 4년 미만	5	12년 이상 ~ 13년 미만	14
			4년 이상 ~ 5년 미만	6	13년 이상 ~ 14년 미만	15
			5년 이상 ~ 6년 미만	7	14년 이상 ~ 15년 미만	16
			6년 이상 ~ 7년 미만	8	15년 이상	17
			7년 이상 ~ 8년 미만	9		
		배우자	**배우자 없음 또는 배우자 통장미가입**	**0**	**1년 이상 ~ 2년 미만**	**2**
			1년 미만	**1**	**2년 이상**	**3**

※ 본인 청약가점 점수 = ① + ② + ③

※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2 나목에 따라 가점제 청약 시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에 배우자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를 합산할 수 있습니다.

- 배우자의 통장가입기간 점수표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50% 적용)	점수
1년 미만	6개월 미만	1점
1년 이상 ~ 2년 미만	6개월 이상 ~ 1년 미만	2점
2년 이상	1년 이상	3점

-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는 전체 가입기간의 50%에 해당하는 기간의 점수로 계산하며, 그 점수가 3점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3점까지만 인정
- 본인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와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 합산 시 17점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17점까지만 인정
- 청약 전 반드시 배우자 본인이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순위확인서를 발급하여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를 확인해야 하며, 향후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시 배우자의 순위확인서 및 배우자의 당첨사실 확인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하여 적격함을 증빙해야 함
  * 순위확인서 발급 : 청약홈 > 청약자격확인 > 청약통장 > 순위확인서 발급 >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 청약하고자 하는 주택명 선택
  * 당첨사실 확인서 발급 : 청약홈 > 청약소통방 > APT당첨사실 조회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배우자의 청약통장이 가입되어 있으나, 순위확인서 발급 전 배우자의 청약통장을 해지한 경우에는 순위확인서 발급이 불가하므로 적격증빙을 위하여 당첨자 발표 이후 계약 전까지 배우자의 청약통장 유지 필요

- **가점제 적용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1)**

구 분	내 용
①무주택기간 적용기준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 2)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제9호 각 목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소형·저가주택)의 가격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정. 다만, 2007년 9월 1일 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 9월 1일 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 중 2007년 9월 1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름 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 :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다) 분양권등의 경우 :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은 제외) 3) 무주택기간은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고, 주택공급신청자의 연령이 만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하되, 만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함. 이 경우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한다)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 4) 확인방법 : (1)주민등록표등본(배우자 분리세대 시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2)가족관계증명서, (3)혼인관계증명서(만30세 이전에 혼인한 경우 혼인신고일 확인), (4)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②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	1)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세대원을 의미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부양'의 의미는 같은 주민등록지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것**을 의미함 2)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주택공급신청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인 경우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다만,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으며,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직계존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음 - 외국인 직계존속 - 내국인 직계존속이라도 요양시설(「주민등록법」 제12조에 따라 주민등록을 하는 노인요양시설을 말함) 및 해외에 체류 중(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인 경우 ※ 2019.11.0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에 따라 부양가족을 산정 시에는 제53조제6호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음 3) 자녀(부모가 모두 사망한 손자녀 포함)는 미혼으로 한정 - 주택공급신청자의 만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봄 - 재혼배우자의 자녀는 주택공급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봄 4) 이혼한 자녀는 "미혼인 자녀"로 보지 않으며, 외국인인 직계비속과 아래의 경우처럼 해외 체류 중인 직계비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음 - (만30세 미만)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 (만30세 이상)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5) 확인방법 : (1)주민등록표등·초본, (2)가족관계증명서, (3)만18세 이상 성년자녀 부양가족인정 신청 시 추가확인 서류 - 만18세 이상 ~ 만30세 미만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만30세 이상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초본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 * 단,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함
주택소유여부 및 무주택기간 산정기준	①무주택기간 적용기준 및 ②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에 따라 주택소유 여부를 판정하거나 무주택기간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 및 제53조에 따름

■ **②무주택자 우선공급** : 1순위 추첨제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다음 단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단계	비율	내용
1단계	추첨제 물량의 75%	무주택세대구성원
2단계	1단계 공급 후 잔여물량	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
3단계	2단계 공급 후 잔여물량	1순위에 해당하는 분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분

■ **③청약통장 가입기간** : 가입기간은 순위기산일을 기준으로 함
-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함
  * 단,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함

비고

■ **1순위 가점제 청약 시 유의사항**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2년 이내 가점제로 당첨된 분 및 그 세대원은 가점제 청약이 불가하며, 가점제로 청약하여 당첨 시 부적격 처리됩니다.
- 1순위 가점제 당첨 시 가점제 당첨 제한자로 관리되어, 당첨자 및 그 세대원은 당첨자발표일로부터 2년간 다른 민영주택의 1순위 가점제 청약이 불가합니다.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경우 1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은 1순위 가점제 청약이 불가합니다.
- 배우자 분리세대의 세대원인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수에 포함할 경우, 배우자는 해당세대의 세대주여야 하며, 세대원도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4 청약신청 및 당첨자 발표 안내

■ **신청일정 및 장소**

구분	신청대상자		신청일시	신청장소	당첨자 및 동·호수 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특별공급	기관추천, 다자녀가구,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신생아		2026.07.20.(월) (청약Home 인터넷 : 09:00~17:30) (사업주체 견본주택 : 10:00~14:00)	• '청약Home'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견본주택 접수 : 경기도 의왕시 삼동 277-6번지 ☎ 031) 427 - 1857	• 일시 : 2026.07.29.(수) • 확인방법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www.applyhome.co.kr) 또는 스마트폰앱에서 개별조회
일반공급	1순위	해당지역 (의왕시 2년 이상 계속 거주자)	2026.07.21.(화) 09:00~17:30	• '청약Home'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청약통장 가입은행 창구	
		기타지역 [의왕시 2년 미만 거주자 및 수도권(경기도, 서울시, 인천시 거주자)]	2026.07.22.(수) 09:00~17:30		
	2순위		2026.07.23.(목) 09:00~17:30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 방법이 '견본주택 방문 신청'에서 인터넷(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청약 신청'으로 변경되었으며, 특별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나 정보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에 한하여 견본주택 방문접수(은행창구 접수 불가)가 허용됩니다.

※ 일반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나 정보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에 한하여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에서 청약이 가능합니다.
(창구 접수시간 : 09:00~16:00 단, 은행 영업점별 업무 시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람)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시 가점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체결 시 주민등록표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주택공급 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을 대조한 후 청약신청 내용과 청약자격이 일치할 경우에 계약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 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될 경우 본 아파트의 당첨을 취소합니다.(각각 동일한 청약관련 예금으로 청약 신청하여 당첨된 경우에 한합니다.)

■ 청약신청 방법 및 절차(PC·모바일)
- 경로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 → 신청유형 및 주택명 선택 → 청약자격 등 입력 →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 청약신청 완료
- 청약신청 시간* : 09:00 ~ 17:30
  * 17:30까지 청약신청 완료해야 하며, 청약 신청 진행 중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취소 방법 및 절차(PC·모바일)
- 경로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 → 청약취소 → 취소하고자 하는 신청 내역 선택 →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 청약신청 취소 완료
- 청약신청 취소 가능 시간 : 청약신청일 당일 09:00 ~ 17:30
  * 청약신청일 당일 17:30까지 청약신청 취소를 완료해야 하며, 청약신청일 당일 17:30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청약신청 취소가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방법 및 절차(현장접수, 정보취약계층에 한 함)
- 현장접수 시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없이 청약신청자가 기재한 사항만으로 접수를 받으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해야 합니다.
- **특별공급** :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견본주택 방문접수(은행창구 접수 불가)가 허용됩니다. (방문 접수시간 : 10:00~14:00)
- **일반공급** :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나 정보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에서 청약이 가능합니다.
  (창구 접수시간 : 09:00~16:00. 단, 은행 영업점별 업무 시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공급 현장접수 시 필요서류

<table>
<tr><th colspan="3">필요서류</th></tr>
<tr><td>본인 신청 시</td><td colspan="2">· 주택공급신청서(청약통장 가입은행 비치)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 통장
· 예금인장 또는 본인 서명</td></tr>
<tr><td rowspan="3">제3자 대리신청 시
추가사항
(배우자 포함)</td><td colspan="2">·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서류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해야 함</td></tr>
<tr><th>인감증명 방식</th><th>본인서명확인 방식</th></tr>
<tr><td>-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td><td>- 청약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 1통
- 청약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td></tr>
</table>

※ 상기 제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접수함(단,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서류 제출)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산일 산정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해야 함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음
※ 주택공급 신청서의 단말기 「(전산)인지란」의 인자된 내용과 신청내용을 확인해야 하며, 동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당일 내로 공급신청서를 접수한 영업점에 정정 신청해야 함
※ 본인 및 배우자가 인장 날인 없이 신청인[서명]으로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한 경우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며, 주택공급신청서의 [서명]은 접수 받은 직원 입회하에 신청인이 직접 기재해야 함

■ **청약홈에서는 청약자의 편의를 위하여 아래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이데이터 ('청약도움e') 서비스	- 청약신청 단계에서 본인정보 제3자 제공 요구 시, 주민등록표등·초본 등 행정정보를 수신하여 세대주 여부 및 해당지역 거주기간 등 청약신청 자격요건을 확인하여 드리는 서비스입니다. - 서비스 이용은 선택사항이며, 통신망 연결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 및 연계 기관(정보 보유기관)의 상황 등에 따라 서비스 제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이용방법 :** 청약신청 → APT → 청약홈 마이데이터('청약도움e') 서비스 팝업 → 본인정보 제3자 제공 요구	
공고단지 청약연습	- 공고일 다음날부터 일반공급 청약신청 전날까지 세대원을 등록하고, 해당 세대원(성년자에 한함)의 개인정보 동의가 완료되면, 실제 청약하고자 하는 모집공고에 대한 신청자 및 세대원의 청약자격(주택소유 및 각종 청약제한사실)을 미리 알아볼 수 있어, 부적격자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지원합니다. - 세대원 등록방법 : 청약자격확인 → 세대구성원 등록/조회 및 세대구성원 동의 - **이용방법 :** 공고단지 청약연습 → 공고단지 청약연습 신청(단, 세대구성원 등록 생략 시 신청자 본인에 대해서만 청약자격 검증)	
당첨자발표 서비스	청약홈	- **조회방법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당첨조회 - **조회기간 :** 2026.07.29.(수) ~ 2026.08.07.(금) (10일간) - 조회기간(10일) 경과하더라도 ①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 확인 또는 ②청약소통방 → APT당첨사실 조회를 통해 당첨내역 확인 가능 - 당첨 결과는 착오 안내 가능성이 있으므로 유선 및 서면 등 별도 통지하지 않습니다.
	문자	- 제공일시 : 2026.07.29.(수) 08:0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제공대상 : 청약 신청 시 휴대폰 번호를 등록하고 SMS 수신에 동의한 당첨(예비)자 * **당첨자 발표 안내 문자에는 스미싱 등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별도의 링크(URL)를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의 링크(URL) 또는 전화번호는 절대 누르지 않는 등 유사한 스미싱 문자에 대해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통신 환경 등에 따라 문자가 정상적으로 수신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당첨여부는 반드시 청약홈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서류제출 및 계약 체결

■ **당첨자(정당 당첨자 및 예비 입주자) 자격검증 서류제출 안내**

구 분	자격검증 서류제출 기간	장 소
당첨자(예비 입주자) 서류제출 (특별공급 / 일반공급)	2026.07.31.(금) ~ 08.08.(토) 9일간 (10:00 ~ 17:00)	의왕역 SK VIEW 견본주택 (경기도 의왕시 삼동 277-6번지)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정당 및 예비입주자는 지정된 서류제출 기간내에 관련 서류를 필히 제출해야 하며, 상기 서류제출 일정 이외에는 방문이 불가합니다.
(단, 정당 당첨자의 경우 계약체결 시 자격검증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입주대상자 자격 확인절차로 계약진행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방문 시 당첨자 본인만 입장이 가능합니다. (대리인 위임 시 대리인 1인만 입장 가능)
- 서류제출 장소 : 의왕역 SK VIEW 견본주택 (경기도 의왕시 삼동 277-6번지)

※ 당첨자별로 자격확인서류 및 제출서류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제출기간 이내 방문이 어려운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의 경우 견본주택으로 통지 후 계약체결 전 자격확인서류 일체 및 계약체결 시 구비사항을 준비하시어 계약체결을 하시기 바랍니다. 단, 계약체결시 자격확인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입주대상자 자격확인 절차로 계약진행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 당첨 동·호수의 공급금액 확인 후 지정된 공급대금계좌로 계약금을 납부하고 계약 체결 시 필요 구비서류를 준비하시어 반드시 지정된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자격확인서류 제출 시 구비서류 중 필요서류가 1건이라도 미비 시에는 접수가 불가할 수 있으며, 확인하여야 할 사항이 표기되지 않은 서류는 접수 불가합니다.

※ 신청자격에 맞는 제증명서류(당첨자 제출서류 참조)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 등으로 신청내용과 제출서류가 상이할 경우 별도의 보완자료 등으로 당첨자격을 소명하여야 하며, 소명하지 못할 경우 부적격 처리될 수 있습니다.

※ 제출서류로 신청자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소명자료 관련 추가서류 제출 요구 시 반드시 이에 응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자격확인서류 미제출'로 부적격 처리될 수 있습니다.

※ 소명자료 제출 관련 사항은 해당자에게 별도 통보 예정입니다.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신청자로 간주됩니다. (배우자, 직계존·비속도 대리신청자로 봄)
※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에 한하여 제출서류를 접수하며, 모든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합니다.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제출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나 정정할 수 없습니다.

■ 예비입주자 유의사항 및 공급 방법

- 특별공급 당첨자 중 부적격 당첨자의 동·호와 미계약 동·호는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됩니다.
- 일반공급 당첨자 중 부적격 당첨자의 동·호와 미계약 동·호는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됩니다.
-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본 아파트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으며, 동·호수 배정을 위한 추첨에도 참가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의 동·호수 배정일(당첨일)이 공급 신청한 다른 주택의 당첨자발표일보다 빠를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체결은 가능하며 다른 주택의 입주자 선정 내역은 무효처리됩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의 예비입주자 중에서 최초 동호수 배정 추첨에 참가하여 동호를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공급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되고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동·호수를 배정받은 예비입주자가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한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7일 이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예비입주자(특별공급 및 일반공급)로 선정된 자는 연락처 변경 시 본인의 연락처(주소, 전화번호)를 당사에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하지 않을 경우 연락처 및 주소 불명 등의 사유로 예비입주자 공급(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당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표1> 특별공급, 일반공급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자격확인 제출서류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해당자)			
공통서류 기관추천 특별공급 포함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서약서	본인	▪ 견본주택 비치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재외 동포 : 국내거소신고증 /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 2020.12.21. 이후 발급한 여권은 여권증명서를 함께 구비해야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음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발급 구분 : 본인발급 / 용도 : 서류접수 및 공급계약 체결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3자 대리 신청 불가 ※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의 경우 발급용도 및 제출처 확인 후 발급 [발급용도 : '기타'선택 → "서류접수 및 공급계약 체결" / 제출처 : "의왕역 SK VIEW"로 설정하여 발급]
	○		인감도장		▪ 인감증명서상의 도장과 대조하여 일치 확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서명으로 대체
	○		주민등록표등본(전체포함)		▪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뒷자리, 세대원 포함), 주소 변동 사항 및 변동 사유,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을 포함하여 "전체포함"으로 발급
	○		주민등록표초본(전체포함)		▪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주소변동사항·사유 및 발생일(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을 포함하여 "전체포함"으로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세대원 포함)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배우자 포함)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상세)		▪ 기록대조일 : 생년월일 ~ 입주자모집공고일로 지정하여,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포함하여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상세"로 발급 (1961년 이전 출생자는 1961.1.1.부터) ※ 기관추천 특별공급 제외
		○	복무확인서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자격으로 신청한 경우 (군복무기간 명시)
		○	주민등록표등본(전체포함)	배우자	▪ 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분리세대) ※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뒷자리, 세대원 포함), 주소 변동 사항 및 변동 사유,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등을 포함하여 "전체포함"으로 발급
		○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외국인등록증		▪배우자가 재외동포인 경우 국내거소신고증 /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등록증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		다자녀가구 배점표	본인	▪견본주택에 비치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3세대 구성 시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포함된 경우 ▪재혼가정에서 배우자의 전혼자녀를 자녀수에 포함 한 경우(청약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한함) ※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세대원 포함)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주민등록표초본(전체포함)	피부양 직계존속	▪3세대 이상 세대구성 배점을 인정받고자 하나, 청약신청자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주소변동사항(인정받고자하는 기간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을 포함하여 "전체포함"으로 발급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피부양 직계비속	▪만18세 직계비속을 미혼인 미성년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기본증명서(상세)		▪직계비속의 출생신고일 증명이 필요한 경우 ※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한부모가족증명서	본인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한 경우
		○	임신진단서 또는 출생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임신한 태아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 임신 증명 서류(임신진단서, 유산관련 진단서) 제출 ▪임신 증명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의료 기관명과 임신 주차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임신확인서 불가 ※ 담당 의사명, 출산예정일, 의료기관 등록번호 및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고, 해당 의료기관 직인 날인된 원본
		○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확인각서		▪임신의 경우 / 견본주택 비치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입양한 자녀를 자녀 수에 포함한 경우 ※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포함하여 "전부" 표기
		○	기존주택 처분 관련 서약서	본인	▪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 기존주택 처분 조건으로 청약을 신청한 경우 ▪견본주택 비치「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2항제4호에 따른 서약서(별지 제6호서식)
신혼부부 특별공급	○		자격요건확인서	본인	▪견본주택 비치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본인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청약신청자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 제출(분리된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세대원 포함) [발급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 Fax수신문서 제출가능] ※ 가입자 전체(직장+지역), 주민등록번호 표시하여 출력, 자격득실 전체내역 선택하여 발급
	○		소득입증 서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청약신청자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 제출(분리된 배우자의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 포함) ※ <표2> 신혼부부 / 생애최초 / 신생아 특별공급 소득입증 서류 참조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비사업자확인 각서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 / 견본주택 비치
		○	주민등록표초본(전체포함)	배우자	▪가구원에 해당하는 직계존속이 분리된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 상 등재되어 있는 경우 ※ 1년 이상의 주소변동 사항,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을 포함하여 "전체 포함"으로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재혼가정에서 배우자의 전혼자녀를 자녀수에 포함 한 경우(청약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한함) ▪배우자와 혼인 전 출생자녀를 혼인 중 출생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소득산정 시 청약신청자의 가구원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세대원 포함)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주민등록표초본(전체)	피부양 직계존속	▪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하였음을 확인하여, 소득산정 시 당첨자의 가구원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1년 이상의 주소변동 사항,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 포함"으로 발급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피부양 직계비속	■ 만18세 직계비속을 미혼인 미성년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배우자 포함)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기본증명서(상세)		■ 직계비속의 출생신고일 증명이 필요한 경우 ※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임신진단서 또는 출생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임신한 태아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 임신 증명 서류(임신진단서, 유산관련 진단서) 제출 ■ 임신 증명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의료 기관명과 임신 주차확인이 가능해야 함 / 임신확인서 불가 ※ 담당 의사명, 출산예정일, 의료기관 등록번호 및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고, 해당 의료기관 직인 날인된 원본
		○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확인각서		■ 임신의 경우 / 견본주택 비치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 입양한 자녀를 자녀 수에 포함한 경우 ※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하여 "전부" 표기
		○	부동산소유확인서	본인 및 세대원	■ 견본주택에 비치
		○	부동산소유현황/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경우 청약신청자와 세대구성원 전원 서류 제출 ■ 해당 부동산의 재산세 납부내역을 입증하는 서류 ■ "부동산 소유현황이 없는 경우" 지방세 세목별 미과세증명서 제출(전국/건축물·토지·주택포함,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 <표3> 신혼부부 / 생애최초 / 신생아 특별공급 자산입증 서류 참조
		○	자산가액입증서류		■ "부동산 소유현황이 있는 경우" 청약신청자 및 세대구성원 전원의 소유 부동산 자산가액입증서류 ※ <표3> 신혼부부 / 생애최초 / 신생아 특별공급 자산입증 서류 참조
		○	기존주택 처분 관련 서약서	본인	■ 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 기존주택 처분 조건으로 청약을 신청한 경우 ■ 견본주택 비치「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3조제2항제4호에 따른 서약서(별지 제6호서식)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청약 가점내용 확인서	본인	■ 견본주택 비치
	○		주민등록표초본(전체포함)	피부양 직계존속	■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주소변동 사항(3년 이상),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을 포함하여 "전체포함"으로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세대원 포함)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배우자 포함)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상세)		■ 기록대조일 : 생년월일 ~ 입주자모집공고일로 지정하여,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포함하여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상세"로 발급 (1961년 이전 출생자는 1961.1.1.부터)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진료개시일, 요양기관명 및 요양기관 연락처에 한정) ※ 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3년간의 내역 / 전체출력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 신청한 경우 ■ 재혼가정에서 배우자의 전혼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 (청약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한함) ※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세대원 포함)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주민등록표초본(전체포함)	피부양 직계비속	■ 만30세 이상 미혼의 직계비속을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한 사실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주소변동사항·사유 및 발생일(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을 포함하여 "전체포함"으로 발급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만18세 이상의 자녀를 미혼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상세)		■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 ■ 아래의 경우는 부양가족에서 제외 - 만30세 미만 미혼 자녀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 만30세 이상 미혼 자녀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 기록대조일 : 생년월일 ~ 입주자모집공고일로 지정하여,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포함하여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를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Y"로 설정하여 "상세"로 발급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진료개시일, 요양기관명 및 요양기관 연락처에 한정) ▪당첨자의 30세 이상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1년간의 내역 / 전체출력
		○	기존주택 처분 관련 서약서	본인	▪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 기존주택 처분 조건으로 청약을 신청한 경우 ▪견본주택 비치「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2항제4호에 따른 서약서(별지 제6호서식)
생애최초 특별공급	○		자격요건확인서	본인	▪견본주택 비치
	○		소득세 납부 입증서류		▪청약신청자 본인의 소득세 납부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 5개년도 서류 ※ <표4>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및 소득세 납부 입증서류 참조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본인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청약신청자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 제출(분리된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세대원 포함) [발급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 Fax수신문서 제출가능] ※ 가입자 전체(직장+지역), 주민등록번호 표시하여 출력, 자격득실 전체내역 선택하여 발급
	○		소득입증 서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청약신청자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 제출(분리된 배우자의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 포함) ※ <표2> 신혼부부 / 생애최초 / 신생아 특별공급 소득입증 서류 참조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비사업자확인 각서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 / 견본주택 비치
		○	주민등록표초본(전체포함)	배우자	▪가구원에 해당하는 직계존속이 분리된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 상 등재되어 있는 경우 ※ 1년 이상의 주소변동 사항,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을 포함하여 "전체 포함"으로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의 전혼자녀 또는 직계존속을 소득산정 시 청약신청자의 가구원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세대원 포함)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주민등록표초본(전체포함)	피부양 직계존속	▪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하였음을 확인하여, 소득산정 시 당첨자의 가구원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1년 이상의 주소변동 사항,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을 포함하여 "전체 포함"으로 발급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피부양 직계비속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 아닌 분으로 청약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상 등재된 만18세 이상인 자녀를 '미혼인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기본증명서(상세)		▪직계비속의 출생신고일 증명이 필요한 경우 ※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임신진단서 또는 출생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임신한 태아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 임신 증명 서류(임신진단서, 유산관련 진단서) 제출 ▪임신 증명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의료 기관명과 임신 주차확인이 가능해야 함 / 임신확인서 불가 ※ 담당 의사명, 출산예정일, 의료기관 등록번호 및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고, 해당 의료기관 직인 날인된 원본
		○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확인각서		▪임신의 경우 / 견본주택 비치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입양한 자녀를 자녀 수에 포함한 경우 ※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포함하여 "전부" 표기
		○	부동산소유확인서	본인 및 세대원	▪견본주택에 비치
		○	부동산소유현황/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경우 청약신청자와 세대구성원 전원 서류 제출 ▪해당 부동산의 재산세 납부내역을 입증하는 서류 ▪"부동산 소유현황이 없는 경우" 지방세 세목별 미과세증명서 제출(전국/건축물·토지·주택포함,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 <표3> 신혼부부 / 생애최초 / 신생아 특별공급 자산입증 서류 참조
		○	자산가액입증서류		▪"부동산 소유현황이 있는 경우" 청약신청자 및 세대구성원 전원의 소유 부동산 자산가액입증서류 ※ <표3> 신혼부부 / 생애최초 / 신생아 특별공급 자산입증 서류 참조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신생아 특별공급	○		자격요건확인서	본인	▪ 견본주택 비치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피부양 직계비속	▪ 신생아 특별공급 대상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 ※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세대원 포함)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본인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청약신청자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 제출(분리된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세대원 포함) [발급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 Fax수신문서 제출가능] ※ 가입자 전체(직장+지역), 주민등록번호 표시하여 출력, 자격득실 전체내역 선택하여 발급
	○		소득입증 서류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청약신청자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 제출(분리된 배우자의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 포함) ※ <표2> 신혼부부 / 생애최초 / 신생아 특별공급 소득입증 서류 참조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비사업자확인 각서		▪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 / 견본주택 비치
		○	주민등록표초본(전체포함)	배우자	▪ 가구원에 해당하는 직계존속이 분리된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 상 등재되어 있는 경우 ※ 1년 이상의 주소변동 사항,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을 포함하여 "전체 포함"으로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청약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으로 배우자 및 자녀에 관한 사항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세대원 포함)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주민등록표초본(전체)	피부양 직계존속	▪ 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하였음을 확인하여, 소득산정 시 당첨자의 가구원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1년 이상의 주소변동 사항,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 포함"으로 발급
		○	기본증명서(상세)	피부양 직계비속	▪ 직계비속의 출생신고일 증명이 필요한 경우 ※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임신진단서 또는 출생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임신한 태아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 임신 증명 서류(임신진단서, 유산관련 진단서) 제출 ▪ 임신 증명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의료 기관명과 임신 주차확인이 가능해야 함 / 임신확인서 불가 ※ 담당 의사명, 출산예정일, 의료기관 등록번호 및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고, 해당 의료기관 직인 날인된 원본
		○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확인각서		▪ 임신의 경우 / 견본주택 비치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 입양한 자녀를 자녀 수에 포함한 경우 ※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하여 "전부" 표기
		○	부동산소유확인서	본인 및 세대원	▪ 견본주택에 비치
		○	부동산소유현황/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경우 청약신청자와 세대구성원 전원 서류 제출 ▪ 해당 부동산의 재산세 납부내역을 입증하는 서류 ▪ "부동산 소유현황이 없는 경우" 지방세 세목별 미과세증명서 제출(전국/건축물·토지·주택포함,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 <표3> 신혼부부 / 생애최초 / 신생아 특별공급 자산입증 서류 참조
		○	자산가액입증서류		▪ "부동산 소유현황이 있는 경우" 청약신청자 및 세대구성원 전원의 소유 부동산 자산가액입증서류 ※ <표3> 신혼부부 / 생애최초 / 신생아 특별공급 자산입증 서류 참조
		○	기존주택 처분 관련 서약서	본인	▪ 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 기존주택 처분 조건으로 청약을 신청한 경우 ▪ 견본주택 비치「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3조제2항제4호에 따른 서약서(별지 제6호서식)
일반공급 (가점제)	○		청약 가점내용 확인서	본인	▪ 견본주택 비치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 ▪ 재혼가정에서 배우자의 전혼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 (청약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한함) ※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세대원 포함)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순위확인서		▪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 신청자 중 배우자의 청약통장가입기간 점수를 산입(1~3점)한 경우 ※ (청약홈) 청약홈 > 청약자격확인 > 청약통장 > 순위확인서 발급 >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 청약하고자 하는 주택명 선택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 (청약통장 가입은행) 창구 방문 >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순위확인서 발급
		○	당첨사실 확인서		▪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 신청자 중 배우자의 청약통장가입기간 점수를 산입(1~3점)한 경우 ※ (청약홈) 청약홈 > 청약소통방 > APT당첨사실 조회
		○	주민등록표초본(전체포함)	피부양 직계존속	▪ 피부양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과거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한 사실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주소변동 사항(3년 이상),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을 포함하여 "전체포함"으로 발급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피부양 직계존속이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 ※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배우자 포함)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상세)		▪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 ▪ 아래의 경우 부양가족에서 제외 -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 기록대조일 : 생년월일 ~ 입주자모집공고일로 지정하여,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포함하여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상세"로 발급 (1961년 이전 출생자는 1961.1.1.부터)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진료개시일, 요양기관명 및 요양기관 연락처에 한정) ▪ 당첨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3년간의 내역 / 전체출력
		○	주민등록표초본(전체포함)	피부양 직계비속	▪ 만30세 이상 미혼의 직계비속을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한 사실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주소변동사항·사유 및 발생일(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을 포함하여 '전체포함'으로 발급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만18세 이상의 자녀를 미혼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상세)		▪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 ▪ 아래의 경우는 부양가족에서 제외 - 만30세 미만 미혼 자녀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 만30세 이상 미혼 자녀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 기록대조일 : 생년월일 ~ 입주자모집공고일로 지정하여,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포함하여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상세"로 발급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진료개시일, 요양기관명 및 요양기관 연락처에 한정) ▪ 당첨자의 30세 이상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1년간의 내역 / 전체출력
부적격 의심 세대		○	주택 및 분양권 등 소유여부 증명서류	본인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대장등본(가옥대장등본 포함), 무허가건물확인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제8항에 따른 무허가 건물임을 확인하는 문구 포함분에 한하여 인정), 공동주택가격확인서, 철거예정증명서,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등「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주택소유여부 판정기준"에 따른 해당 필요 서류
		○	당첨사실 소명서류	본인	▪ 해당 기관의 당첨사실 무효확인서 등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
해외근무자 (단신부임)		○	단신부임 입증 서류	본인	▪ 국내기업 및 기관 소속 해외 주재원 및 출장자 : 파견 및 출장명령서 등 ▪ 해외 취업자 및 사업체 운영자 : 현지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사업, 근로 관련 서류, 취업, 사업비자 발급내역 등 ▪ 근로자가 아닌 경우 : ① 비자발급 내역 ② 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 ※ 유학, 연수, 관광, 단순체류자의 경우 생업 사정을 인정할 수 없으며, 생업관련 증빙서류 불가능 시 생업사정 불인정 ※ 해외에서 발급받은 서류의 경우 번역 공증 첨부 필수
		○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상세)	배우자 및 세대원	▪ 기록대조일 : 생년월일 ~ 입주자모집공고일로 지정하여,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포함하여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전체발급
		○	비자발급내역 및 재학증명서	해당자	▪ 여권 분실 및 재발급으로 체류국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 비자발급내역, 재학증명서 등 체류국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통해 소명을 하여야 하며, 청약신청자가 해외에 체류 중인 기간 내 세대원이 해외에 체류하지 않았다는 사실(국외 체류기간 연속 90일 미만)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단신부임 인정 불가
		○	주민등록표초본(전체포함)	직계존속	▪ 배우자 및 자녀가 없는 경우, 직계존속과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 등재 확인 ※ 주민등록번호, 과거 주소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 포함"으로 발급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대리인 추가서류	○		위임장	본인	▪청약신청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견본주택 비치)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본인	▪본인 발급 인감증명서에 한함 (용도 : 서류접수 및 공급계약 체결 위임) ※ 대리인 접수 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인정 불가
	○		신분증	대리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재외 동포 : 국내거소신고증 / 외국인 : 외국인 등록증) ※ 2020.12.21 이후 발급한 여권은 여권증명서를 함께 구비해야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음

※ 상기 제출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상세 발행분에 한하며, 주택공급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당첨 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주택공급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여부, 세대주와의 관계 확인 등을 위해 모두 표기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표2> 신혼부부 / 생애최초 / 신생아 특별공급 소득입증 서류

해당자격		소득입증 제출서류	발급처
근로자	일반근로자	① 재직증명서(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휴직기간을 명시하여 발급) ②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원본 또는 전년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 원본 ※ 휴직 기간이 있는 경우 : 휴직기간이 있는 년도의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매월 신고 납부대상자확인'으로 발급) ※ 계속 휴직으로 월평균 소득 산정이 어려운 경우 휴직 전 정상 재직기간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 출산휴가 기간 중 고용보험을 수령한 경우 출산전후 휴가 확인서(직인날인)	① 해당직장 ② 세무서, 해당직장
	금년도 신규취업자 I 금년도 전직자	① 재직증명서 ② 금년도 월별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원본 ※ 근로기간이 1개월을 경과하지 못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부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과 동일한 직장의 동일 직급, 동일 호봉인 자의 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과 재직증명서를 제출받아 월평균소득을 추정 또는 해당 직장 연봉/근로계약서(직인날인)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①,② 해당직장
	전년도 전직자 (연말정산 이후인 경우)	① 재직증명서 ②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원본 ※ 근무처별 소득명세표상 "주(현)" 총급여금액을 재직증명서상 근무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①,② 해당직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자 (건강보험증상 직장가입자만 해당)	① 소득금액증명 ② 재직증명서 ※ 재직증명서는 사업자의 직인 날인 필수 ※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닌 경우, 사업(기타)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위촉증명서	①,② 해당직장
자영업자	일반과세자 I 간이과세자 I 면세사업자	①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원본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①,② 세무서
	신규사업자 등 소득입증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자	① 국민연금보험료납입증명서(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 국민연금 미가입자 : 모집공고일 이전 최근에 신고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부본) (모집공고일 이전 신고분만 인정) (신고서상 금액(매출액-매입액) 및 사업기간으로 월평균 소득을 산정)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① 국민연금공단 ② 세무서
	법인사업자	① 전년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② 전년도 재무제표 및 원천징수이행명세서 ※ 계속적인 법인대표자의 경우 ①과 ②를 모두 제출하여 근로소득과 배당소득를 합산하여 근로기간으로 나뉘어 월평균소득을 산정 ③ 사업자등록증명 ④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⑤ 재직증명서	①,②,⑤ 해당직장 ③ 세무서 ④ 등기소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① 전년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또는 간이지급명세서 ② 위촉(해촉)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①② 해당직장/세무서

해당자격	소득입증 제출서류	발급처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①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증명서 ※ 공급신청자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이면 해당 세대 전체가 기준소득 이하인 것으로 간주	①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일용직 근로자	①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	①해당직장/세무서
무직자	① 비사업자 확인각서(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 등이 아닌 경우) ② 사실증명서(소득사실 없음을 입증함)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 : 전년도 1월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 소득을 동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	① 견본주택 비치 ② 세무서

※ 상기 제출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모든 발급 서류는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등을 포함하여 발급하여야 합니다.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상기 소득입증 관련 서류 외 대상자의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직업이 프리랜서이고 소득이 불규칙한 경우 :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의 소득을 근무월수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
(위촉증명서, 해촉증명서,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월별소득금액 증명이 가능한 서류제출로 소득기간을 산정)

■ **<표3> 신혼부부 / 생애최초 / 신생아 특별공급 자산입증 서류**

해당자격	자산입증 제출서류		발급처
부동산 소유현황이 있는 경우	필수 (소유증빙)	① 부동산 소유현황(세대원별 각각 발급)-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② 건물(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부동산소유현황에 표시된 해당 부동산 전체에 대한 서류 발급) 및 토지대장 ③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전국단위, 주택·건물·토지 대상)	① 대법원인터넷등기소 (www.iros.go.kr) ② 위택스(www.wetax.go.kr) ③ 행정복지센터
	필수 (자산가액 증빙)	① 공동(개별) 주택가격 확인서(소유 부동산이 건축물대장상 주택인 경우) ② 개별 공시지가 확인서 (소유 부동산이 토지이거나 단독·공동주택을 제외한 일반 건축물인 경우) ③ 건축물 시가표준액 조회결과 (소유 부동산이 건축물대장상 주택 외 건축물인 경우) - 서울시 : 'ETAX 이용안내 > 조회/발급 > 주택외 건물시가표준액조회'에서 조회결과를 인쇄하여 제출 - 서울시 외 : '위택스>지방세정보>시가표준액조회'에서 건축물시가표준액 조회결과를 인쇄하여 제출 ※ 이택스, 위택스에서 조회가 어려운 경우에는 건물시가 확인을 위하여 "재산세 과세내역"을 발급받아 건물시가 확인가능	①,②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일사편리(kras.go.kr) ③ 서울시이택스 (etax.seoul.go.kr) 위택스(www.wetax.go.kr)
	해당자	· 농지법 및 초지법 등에 따라 토지 가액에서 제외되는 경우 ①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 농지법에 따른 농지인 경우 ② 축산업 허가증, 축산업 사업장 토지이용계획 : 초지법에 따른 초지인 경우 ③ 종중소유토지 증빙 또는 현장 사진 및 해당 토지이용계획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종중소유토지(건축물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	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② 지자체 축산과 ③ 토지이음 (www.eum.go.kr)
부동산 소유현황이 없는 경우	필수	① 부동산 소유현황(세대원별 각각 발급) -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 발급방법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 등기열람/발급 > 부동산 > '부동산 소유 현황' 조회결과를 인쇄하여 제출 ② 미과세증명서 또는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전국단위, 주택·건물·토지 대상) ※ 발급방법 : 위택스 > 발급 > 문서발급 안내 및 발급 > 미과세증명서(전국단위,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① 대법원인터넷등기소 (www.iros.go.kr) ② 위택스(www.wetax.go.kr)

※ 상기 제출서류는 최초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청약신청자 및 세대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4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 전원(영유아 및 미성년자 포함)의 자산 입증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모든 발급 서류는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등을 포함하여 발급하여야 합니다.
※ 자산가액(부동산가액) 산정 시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주택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합산 산정해야 하며, 신혼부부 및 신생아 특별공급 출산특례(본인 또는 배우자 소유 주택의 처분 조건)를 사용한 경우 해당 주택의 가액은 합산하지 않고 산정 가능합니다.

■ <표4>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및 소득세 납부 입증 서류

서류구분	확인자격	제출서류	발급처
자격 입증서류	근로자	① 재직증명서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①, ③ 해당직장, 세무서 ② 건강보험공단
	자영업자	① 사업자등록증명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근로자,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분	① 위촉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③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직인날인) 또는 소득금액증명(납부내역증명 포함) ※ 과거 1년 이내 및 해당년도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납부분에 한함	
소득세 납부 입증서류	과거 5개년도 소득세 납부내역 (근로자 및 자영업자 /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분으로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분)	▪ 5개년도 소득세 납부증명서류로 아래에 해당하는 서류 중 하나 ① 근로자 :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원 ②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 : 소득금액증명원(종합소득세신고자용), 납부사실증명서(납부내역증명),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결정세액 환급 및 "0"원 일 경우) ※ 소득금액증명원의 결정세액과 납세사실증명(납부내역증명)을 비교하여 소득세 완납 확인 ③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가 아닌 경우(학원강사, 보험모집원, 프리랜서 등) : 거주자의 사업(기타)소득 원천징수영수증 ④ 일용직 근로자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일용근로자용 소득금액증명	①, ② 세무서 ③, ④ 해당직장

※ 상기 제출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상세 발행분에 한하며, 모든 발급 서류는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등을 포함하여 발급하여야 합니다.
※ 해당직장, 세무서 등 해당기관의 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 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상기 소득세 납부 입증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 5개년도 서류(통상 5년의 납부실적)이며, 대상자의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계약 체결 일정 및 장소

- 당첨자는 당첨 동·호수의 공급금액 확인 후 지정된 분양대금계좌로 계약금을 납부하고 필수 구비사항과 해당 추가 구비사항을 준비하시어 반드시 지정된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구분	계약기간	장소
정당 당첨자 계약체결	2026.08.10.(월) ~ 08.13.(목) (4일간, 10:00~17:00)	의왕역 SK VIEW 견본주택 (경기도 의왕시 삼동 277-6번지)

※ 순위 내 청약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후 정당 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특별공급 및 2순위 당첨자 포함)당첨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기간 종료 이후 미계약 세대 발생 시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잔여세대에 대해서는 무순위 청약을 진행한 후 경쟁 미달시에 사업주체에서 임의 분양합니다.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계약금은 반드시 지정계좌로 무통장 입금(계좌 이체 포함)하여야 합니다.

■ 계약체결 전 서류심사 및 부적격 여부 확인

- 주택의 공급계약이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체결하도록 함에 따라, 계약체결 이전에 견본주택을 방문하시어 아래 계약 시 구비서류를 제출하시고 부적격 사항 및 적격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자격, 세대주, 당해 거주기간, 주택소유, 배우자 분리세대 등 확인)
- 상기 사전검수(서류제출) 기간 내 서류심사를 하지 않을 경우 계약체결이 불가능하며, 계약체결이후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불이익(당첨 및 계약 취소, 재당첨제한 등)됨을 유념하시고, 계약체결 전 기간 내에 견본주택 방문하시어 관련 서류 제출 및 계약체결 자격 적격성 여부를 점검 받으시기 바랍니다.

■ **계약 체결 시 구비사항**

구 분	서류유형		구비 서류	발급 기준	확인 및 유의사항
	필수	해당자			
본인 계약 시	○		신분증	본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재외 동포 : 국내거소신고증 /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 2020.12.21. 이후 발급한 여권은 여권증명서를 함께 구비해야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음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구분 : 본인발급 / 용도 : 계약용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3자 대리 신청 불가 ※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의 경우 발급용도 및 제출처 확인 후 발급 [발급용도 : '기타'선택 → "공급계약 체결" / 제출처 : "의왕역 SK VIEW"로 설정하여 발급] ※ 서류제출 기한 내 제출한 경우 제외
	○		인감도장		▪인감증명서상의 도장과 대조하여 일치 확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서명으로 대체
	○		계약금 입금 확인 서류		▪무통장 입금 영수증 또는 입금 확인증 / 현장수납 불가
	○		부동산 실거래 신고서		▪견본주택 비치
	○		주택취득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증빙자료 포함)		▪아파트 공급대금, 발코니확장 공사비를 합산한 금액이 주택취득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의 합계액과 일치해야 함
	○		정부 수입인지(인지세)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1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 발급 ※ 아파트 공급계약(발코니 확장계약 및 추가선택품목 별도)에 따른 인지세를 사업주체와 균등(1/2) 납부 ※ 세부사항은 홈페이지 참고
		○	당첨유형별 입주대상자 자격확인 서류 일체		▪입주대상자 자격검증 서류 제출 기한 내 제출한 경우 제외
		○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요구한 서류		▪기타 사업주체가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요구하는 서류(개별통지)
대리인 계약 시	○		위임장	본인	▪당첨자 인감도장 날인, 견본주택 비치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계약자)	본인	▪본인 발급 인감증명서에 한함 [용도 : 공급계약 체결 위임 (본인 발급용)]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3자 대리 신청 불가
	○		신분증	대리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재외 동포 : 국내거소신고증 /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 2020.12.21 이후 발급한 여권은 여권증명서를 함께 구비해야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음

※ 상기 제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본인의 인장날인 없이 신청인 [서명]으로 계약을 체결하려 하는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는 정자체로 접수받은 직원 입회하에 신청인이 [서명]을 직접 기재하여야 합니다.(대리 접수 불가)
※ 계약 체결 시 계약자 본인이 방문하지 않는 경우, 제3자 대리 계약(본인 외에는 모두 제3자) 추가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분양대금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구분		금융기관명	납부계좌	예금주
분양대금	1차 계약금(최초 계약 시)	하나은행	231-910059-61104	부곡가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2차 계약금, 중도금, 잔금	계약 체결 시 세대별로 개별 가상계좌 부여		

※ 계약금은 상기 명시된 계좌로 납부하여야 하며, 2차계약금, 중도금, 잔금은 향후 세대별 부여되는 가상계좌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분양대금 납부계좌는 발코니확장,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 납부계좌와 상이하므로 입금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차계약금, 중도금, 잔금 납부계좌는 가상계좌로 부여되며 모계좌 (하나은행 231–910059–61104, 부곡가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로 관리됩니다.
※ 2차계약금, 중도금, 잔금 납부계좌는 계약시에 부여되는 세대별 가상계좌로 납부하여야 하며, 세대별로 계좌번호가 상이하므로 입금 시 유의 바랍니다.
(개인별 납부계좌(가상계좌)는 계약체결 시 세대별 계약서에 명기하여 고지 예정임.) 무통장 입금 시 동 ·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예시 - '101동 1403호 홍길동 → 1011403홍길동 / 101동 201호 홍길동 → 1010201홍길동'으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금, 잔금 납부일에 위의 해당 금융기관 계좌로 입금(계좌이체 및 무통장 입금)하시기 바라며, 사업주체에서는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단, 고객 서비스 차원에서 SNS, 문자 등으로 일정 안내가 가능하며, 이는 법적 구속력이 없고 수분양자는 반드시 본인 확인 하에 2차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위하여 온라인 수납만을 인정하며, 견본주택에서 일체의 현금 및 수표 수납은 하지 않으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타인 명의 등 계약금 납부 주체가 당첨자와 상이하거나 불분명하게 입금된 경우에는 계약금 미납 및 계약 미체결로 처리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제반 문제에 대하여 사업주체에서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상기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분양대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착오 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 시 사업주체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지정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가 계약기간 내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인지합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및 기타 관계법령에 위반될 시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공급계약은 효력이 상실, 해약 조치됩니다. 이에 따라 발생될 수 있는 불이익에 대하여 계약금을 제외한 이자 및 금융비용 등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부적격자로 판정된 자는 사업주체가 규정한 일정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 이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중도금 및 잔금 납입일이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일 은행영업일 기준으로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전매행위 제한에 관한 사항

- 본 아파트의 전매제한은 최초 당첨자발표일로부터 적용되며 전매제한기간은 최초 당첨자발표일로부터 3년입니다.(단,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때까지)
- 분양권 전매는 계약자가 사업주체에 대한 채무를 모두 이행한 경우에 한하며, 분양권 양수인은 계약자의 본 공급계약 과정에 체결한 약정에 대하여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합니다. 또한 전매로 인하여 발생될 수 있는 민형사상, 세무상 기타 제반 법적 문제에 대하여 계약자 및 분양권 양수인의 책임입니다. (전매는 정부의 부동산대책 및 관계법령의 제·개정에 의해 제한받을 수 있음)
- 계약자는 분양권 전매 전까지 채무 관계(미납대금, 연체료 등)를 반드시 이행하여야 하며, 해당 목적물에 가압류, 압류, 추심명령 등 제한채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이를 해제 또는 소멸시켜야 분양권 전매가 가능합니다.
- 전매자간 작성(합의)한 부동산 매매계약서 상 분양권 전매 금액이 최초 체결한 분양계약 상의 분양대금과 상이하더라도, 이는 당사와 무관하며 양도인 및 양수인이 책임집니다.
- 분양권 전매 거래시에 인지세가 추가로 발생하며, 이는 전매자 상호간에 합의 하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알선한 중도금 대출 취급기관으로부터 위 표시 부동산을 대상으로 대출받은 자는 전매 시 해당 대출취급기관이 발행한 전매 당사자간의 대출승계 증거서류를 사업주체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그러지 아니할 경우에는 대출금을 상환한 후 상환영수증을 즉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불법청약 등 최초 계약자의 불법행위로 인해 당 분양계약이 취소되더라도 분양권 매수자는 이에 따른 피해를 보호받을 수 없으며, 이에 대하여 충분히 인지하여야 합니다.
- 계약자 또는 분양권 양수인이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개인이나 법인일 경우에 계약을 하거나 권리 의무를 승계하는 경우 외국인토지법 및 관련 법규에 따른 신고 등 제한사항이 있을 수 있으며, 이를 해태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계약자가 부담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을 위반한 경우, 위반자는 위반한 행위 적발일로부터 10년간 입주자자격을 제한합니다.

■ 이중당첨자 및 부적격 당첨자의 처리 및 계약취소에 관한 사항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1조제3항제24호

- 입주대상자 자격확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2조에 따라 당첨자를「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따라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 신청 시 제출서류 확인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된 자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즉시 통보하며, 통보한 날로부터 7일 내에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을 참고하여 소명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부적격 사항 소명 안내 : 관련기관의 전산시스템과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시 입주대상자의 현황이 상이할 수 있으며, 부적격 사항 및 적격 여부 확인이 필요한 자로 통보된 경우 소명기간 내에 서류 확인 등을 통하여 소명을 할 경우에 한하여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 계약체결 이후 관련 법령 등의 처리 및 검증으로 인한 당첨 및 계약취소 확인 : 계약체결 후에라도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 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외되고, 공급계약은 취소됩니다.

① 당첨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의 소유 여부가 신청한 사실과 다른 경우 - '주택 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참조

② 특별공급 당첨자 중 과거 다른 주택에 특별공급 자격으로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특례 제외)

③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 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된 경우

④ 부적격 소명 대상자로서 사업주체가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한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 기간(7일)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단, 부적격 당첨자 중 부적격 당첨 사유가 고의성 없는 단순 착오기재가 사실임을 증명(사업주체 및 관계기관이 인정할 경우에 한함)하는 경우 당사 견본주택에 방문하여 "당첨사실 삭제 요청서(당사 비치)" 작성 시 청약통장 재사용은 가능하나, 본 아파트의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 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 사전청약 및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을 제한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제4항에 따라 부적격 당첨자를 당첨자로 인정하는 경우

① 같은 청약 순위에서 경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순위의 자격을 갖춘 자

② 같은 청약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에 따른 소명기간에 재산정한 가점제 점수(가점제를 적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공급 순차별 자격이 해당 순위의 당첨자로 선정되기 위한 가점제 점수 또는 자격 이상에 해당하는 자

■ 부적격 당첨자의 명단관리 등「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8조

- 사업주체는「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2조제3항 및 제57조제8항에 따른 부적격 당첨자가 소명기간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고 제58조제4항에도 해당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그 명단을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에 통보하야여야 합니다.
-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은 제58조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자의 명단을 당첨자 명단에서 삭제하는 등 전산관리하고, 제57조제7항에 따라 사업주체에게 전산검색 결과를 통보할 때 제58조제3항에 해당하는지를 표시 하여 통보 해야합니다.
- 제58조제1항에 따라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포함)의 입주자(민간 사전청약을포함)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사업주체는 부적격 당첨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첨자로 본다. 다만, 제57조제7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① 같은 순위(제28조에 따른 순위를 말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에서 경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순위의 자격을 갖춘 자

②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제52조제3항에 따른 소명기간에 재산정한 가점제 점수(가점제를 적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함) 또는 공급 순차별 자격 (순차별로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함)이 해당 순위의 당첨자로 선정되기 위한 가점제 점수 또는 자격 이상에 해당하는 자

■ 계약자 중도금 대출 안내

- **본 아파트의 중도금 대출은 이자후불제이며, 전체 분양대금의 40% 범위 내에서 중도금 융자 알선을 시행할 예정이며, 1~4회차 대출을 받았을 경우 5~6회차 중도금(분양대금의 20%)은 계약자가 직접 납부해야 합니다. (단, 정부정책 및 금융권 사정 등의 사유로 다소 변경할 수 있음)**
- 사업주체에서 지정한 금융기관을 통해 중도금 대출 신청이 가능하나, 관련 정책 및 대출상품의 종류, 개인의 사정 및 자격가능여부 등으로 대출한도가 계약자별로 상이하거나 대출이 불가할 수도 있으므로, 대출 관련 세부내용은 지정된 금융기관에 직접 문의하셔야 하며, 이 경우 계약자는 사업주체 및 시공자에게 책임 및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대출 불가사유로 공급계약 해제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 계약자는 법률의 변경 및 정부의 부동산 정책(주택담보대출의 제한 등), 금융시장 변화 또는 대출기관의 규제 등에 따라 사업주체의 중도금 대출 알선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러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분양대금은 계약자 본인 책임 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해야 합니다.(중도금 대출취급기관의 알선은 사업주체 및 시공자의 의무사항이 아니고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계약자에 대한 편의제공에 불과함)
- **수분양자가 중도금 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 계약금(분양대금의 10%) 완납 및 분양계약 체결 후 사업주체가 알선한 중도금 대출 취급기관과 별도로 계약 체결을 하여야 합니다.**
- 중도금대출 이자납부는 적격 대출 시 중도금대출 최초 실행일로부터 사업주체가 지정한 입주지정기간 최초일 전일까지의 대출이자에 대해서는 사업주체가 대납하되 계약자는 입주 시 사업주체에서 지정한 기일 내에 대납이자를 사업주체 측에 일시 납부하여야 입주 가능하며, 입주지정기간 최초일부터 발생하는 대출이자에 대해서는 계약자 본인이 해당 대출취급기관에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수분양자가 중도금 대출 신청 시 본인(법정 성년후견인 포함) 외에는 중도금 대출 신청이 불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의 중도금 대출조건에 대하여 충분히 인지하여야 하며, 중도금 대출 미신청, 대출비율 축소, 대출 불가시 계약자 본인 책임하에 정해진 납부일정에 맞춰 납부하여야 하며, 미납 시 공급계약서에 따라 연체료 발생 및 계약해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금융시장의 경색 또는 변동성으로 인하여 선정된 중도금 대출금융기관의 특유성(업종, 업태 등) 및 대출형태에 따라 부득이 계약자의 신용등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대출취급기관과의 중도금 대출협약 등에 의거하여 대출 금융기관에 중도금 대출을 위한 계약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중도금 대출기간 이내라도 계약자의 금융 신용불량 결격사유 등이 발생할 경우 대출 금융기관의 중도금 대출중단 등 요구에 따라 계약해지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계약자는 입주 전까지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담보대출로 전환해야 하며, 대출금을 담보대출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급금액을 전액 완납하고 소유권 이전 및 근저당권 설정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담보대출에 따른 제반 수수료 및 근저당설정 비용 등은 대출취급기관이 정한 부담 주체가 부담하여야 하며, 담보 전환 시 대출한도, 대출금리 등 기타대출조건 등은 대출취급기관의 조건에 따르기로 합니다.

- **계약자는 사업주체가 알선한 금융기관에서 중도금을 대출받았을 경우 준공 후 소유권 이전등기 및 대출은행의 1순위(제2금융권에서 추가대출을 받은 경우 제2금융기관의 2순위 포함) 근저당 설정 시까지 해당 부동산에 임대차 계약을 할 수 없습니다.**
- 사업주체 및 견본주택은 대출기관이 아니므로 분양상담 시 대출여부에 대해 확정할 수 없으며, 추후 금융기관 심사를 통하여 대출여부가 결정됩니다. 이에 고객의 대출비율 축소 또는 대출불가에 대하여 분양상담(전화 상담 포함) 내용을 근거로 사업주체 및 시공자에 대출 책임을 요구할 수 없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건설지역인 경기도 의왕시는 투기과열지구로 관계법령에 따라 개인의 주택소유, 대출유무, 분양권 소유여부 등에 따라 중도금 대출금액이 개인에 따라 상이하며, 개인별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비율이 축소되거나 대출 자체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
- 사업주체가 알선한 대출의 대출기간 만료 시(준공 후 미입주 등), 금융기관의 대출기간 연장 및 공정률에 따른 중도금 납입일자의 변경에 대해 별도의 절차 없이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와 한국주택금융공사 중도금 대출보증은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세대당 1건으로 제한되었으며, 금융기관의 대출조건에 따라 일부 중도금대출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6 기타 유의사항 및 안내사항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 및 제53조)

검색대상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세대원 전원
주택의 범위	건물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분양권등
주택처분 기준일	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처리일 2의2. 분양권등에 관한 계약서:「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2의3. 제2조제7호다목에 따른 분양권등의 매매계약서 가. 분양권등의 매매 후「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나. 분양권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경우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6.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자 제외) - 가점제의 부양가족 인정 여부 판단 시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에서 제외함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건물(종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해야 함)

9.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해당 목에서 정하는 주거전용면적 및 가격 요건을 갖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가.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나목3)에 해당하지 않는 것: 주거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서 별표 1 제1호가목2)에 따른 가격이 1억원(수도권은 1억6천만원) 이하일 것

나. 다음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로서 별표 1 제1호가목2)에 따른 가격이 3억원(수도권은 5억원) 이하일 것

1) 「주택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

2)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3)에 해당하지 않는 것

3)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

조항	주택 또는 분양권등의 유형	주거전용면적	수도권	비수도권
제53조제9호가목	아파트(도시형 생활주택 제외)	60㎡ 이하	1억 6천만원	1억원
제53조제9호나목	단독주택	85㎡ 이하	5억원	3억원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10.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

11. 임차인으로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사람이 임차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그 주택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함

가. 주택가격이 1억5천만원(수도권은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이 경우 주택가격의 산정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 제1호가목2)를 준용함)

나.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12. 주택공급 신청자가 임차인으로서 거주하던 임차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생애 최초로 취득한 경우로 한정한다)한 주택(「주택법 시행령」 제2조 각 호 및 제3조제1항제2호·제3호에 따른 주택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일 것

나. 주거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그 취득가격(「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한 가격을 말한다)이 2억원(수도권은 3억원) 이하일 것

다. 해당 주택의 취득일(제23조제4항제1호 또는 제2호 중 빠른 날을 말한다) 전날까지 1년 이상 해당 주택에 거주했을 것

■ 기타 안내사항

※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에 의거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외국인이 국내 토지를 취득할 경우

- 국내 거주 외국인이 주거목적의 국내 주택 구입 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토지취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8에 의거 외국인등이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계약(최초 공급계약 및 분양권 매매 제외)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관할 신고관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영리목적 법인의 국내 설립 후 토지 취득 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신고, 외국인투자 기업 등록을 마치고 토지취득신고를 한 후 국내 토지를 취득하여야 합니다.
- 또한, 외국인 거소 요건 등에 따라 일부 외국인은 중도금 대출의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자 본인의 자금으로 중도금을 납부해야 하며, 이때 공급계약의 해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준공 전·후, 개인 또는 임의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세대 내외, 공용부분 시설물 등)을 요구할 수 없으며 만약 최종 주택건설사업승인도면 이외의 사항을 요구할 경우에는 사업주체의 수락 하에 이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고, 또한, 사업승인변경 등 관련 법규에 대한 제반 서류는 요청 당사자가 징구하여 사업주체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 장소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시공, 부동산 중개업자의 영업행위 등)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와 무관함으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 관련으로 개인정보 요구 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적인 관례에 따르며, 분양신청자는 계약서를 작성하시기 전에 분양사무실에 비치된 입주자 모집공고문과 계약서의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7 발코니 확장

■ 발코니 확장 금액 및 납부일정 [단위 : 원, VAT 포함]

약식표기	공급금액	계약금(10%)	잔금(90%)	비고
		계약 시	입주지정기간	
45	7,900,000	790,000	7,110,000	-
59A	17,000,000	1,700,000	15,300,000	-
59B	17,000,000	1,700,000	15,300,000	-
84A	21,000,000	2,100,000	18,900,000	-
84B	20,000,000	2,000,000	18,000,000	-
84C	20,000,000	2,000,000	18,000,000	-

※ 타입별 확장위치 등 세부사항은 반드시 계약 전 견본주택에서 해당 내용을 확인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 공사비 납부계좌

구분		금융기관명	납부계좌	예금주
발코니 확장금액	계약금(최초 계약 시)	하나은행	231–910059-45104	에스케이에코플랜트(주)
	잔금	계약 체결 시 세대별로 개별 가상계좌 부여		

※ 계약금은 상기 명시된 계좌로 납부하여야 하며, 잔금은 향후 세대별 부여되는 가상계좌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발코니확장 납부계좌는 아파트 분양대금,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 납부계좌와 상이하므로 입금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잔금 납부계좌는 가상계좌로 부여되며 모계좌 (하나은행, 231 – 910059 – 45104, 에스케이에코플랜트(주))로 관리됩니다.
※ 잔금 납부계좌는 계약시에 부여되는 세대별 가상계좌로 납부하여야 하며, 세대별로 계좌번호가 상이하므로 입금 시 유의 바랍니다.
(개인별 납부계좌(가상계좌)는 계약체결 시 세대별 계약서에 명기하여 고지 예정임.) 무통장 입금 시 동 ·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예시 - '101동 1403호 홍길동 → 1011403홍길동 / 101동 201호 홍길동 → 1010201홍길동'으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잔금 납부일에 위의 해당 금융기관 계좌로 입금(계좌이체 및 무통장 입금)하시기 바라며, 사업주체에서는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단, 고객 서비스 차원에서 SNS, 문자 등으로 일정 안내가 가능하며, 이는 법적 구속력이 없고 수분양자는 반드시 본인 확인 하에 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위하여 온라인 수납만을 인정하며, 견본주택에서 일체의 현금 및 수표 수납은 하지 않으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타인 명의 등 계약금 납부 주체가 당첨자와 상이하거나 불분명하게 입금된 경우에는 계약금 미납 및 계약 미체결로 처리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제반 문제에 대하여 사업주체에서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착오납부에 따른 문제 발생 시 사업주체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발코니 확장 유의사항

- 발코니 확장은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기준 내에서 구조변경 공사가 진행되며, 아파트 분양 대금과 별도의 계약 품목으로서 일괄 확장을 전제로 산정된 금액이므로 실별·위치별 선택적 확장은 불가합니다.
- 발코니 확장 금액은 확장으로 인해 기존 설치 항목의 미설치 감소 비용과 추가 설치 항목(외부 창호 금액 포함)의 증가 비용이 상쇄 정산된 금액이며, 본 금액에는 취득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추후 관할 지자체로부터 계약자 본인에게 취득세 등이 별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자재 발주 및 공정 관리 상의 제한으로 인해 일정 시점 이후에는 발코니 확장 계약의 신청 및 변경이 전면 불가하며, 공사 착공 이후 계약을 해지할 경우 계약자는 공급 계약서에 의거한 위약금 및 원상회복 비용(실손해액)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 발코니 확장 면적 및 외부 창호 사양(창틀, 하드웨어, 유리 두께, 색상 등)은 주택형별, 층수별 내풍압 구조 검토 및 세대별 조건(일부 세대 외벽 장식물 부착 등)에 따라 견본주택과 다르게 일부 변경 및 축소 시공될 수 있으며, 자재의 품절·생산 중단·제조사 도산 등 부득이한 경우 동질·동급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시 확장 부분의 외부 창호는 PVC재질 등으로 설치되며 창호 사양(제조사, 브랜드 및 창틀, 하드웨어, 유리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계약자의 사용·관리상 과실 및 입주 후 임의 개보수 세대를 제외하고, 시공상 결함이나 제품 자체의 하자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정상적인 하자보수 책임을 집니다.
- 발코니 바닥은 배수를 위한 구배(기울기) 시공이 적용되므로 실제 시공 시 바닥 단차는 견본주택 및 도면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외벽 단열재 마감 두께 확보 공정으로 인해 실제 안목치수로 측정되는 실사용 면적은 표기된 발코니 면적보다 일부 줄어들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설계 당시 소비자의 사용성 등을 고려해 발코니 확장을 감안하여 설계하였으며, 발코니 확장을 선택 하지 않을 경우 단위세대의 공간 활용도가 저하될 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외부 전면창 설치 및 발코니 확장에 따른 냉난방 비용의 상승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발코니에 설치되는 난간 및 창호는 기능 및 미관 개선을 위하여 형태, 재질 및 사양이 실 시공 시 인·허가 협의 완료 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창호는 내풍압, 구조검토 등의 결과에 따라 세대별, 층별, 위치별로 창호규격 및 사양(유리, 창틀, 손잡이 모양)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세대의 상부세대가 비확장일 경우 상부세대의 배관 일부가 확장세대 상부에 노출되어 이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확장 세대의 인접세대(좌/우, 상/하부 세대 등)가 비확장일 경우 추가 단열공사를 위해 해당부위 벽 또는 천장이 돌출 시공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시 세대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천장 환기구 위치, 에어컨 매립배관 및 슬리브 위치, 배선기구 위치, 조명기구 위치 등 세대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고, 실내습도 등 생활습관에 따라 발코니 창호 및 유리, 기타확장부위에 결로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니 입주자께서는 환기 등으로 예방하여야 합니다.
- 상기 발코니 확장 공사비에는 취득세 등이 포함되지 않았으며, 입주 후 관할 관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으며, 추후 분양계약자가 납부하셔야 합니다.
- 발코니 확장은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시공되어야 하므로 사업주체가 직접 시공하도록 제한합니다.
- 발코니 개별 확장 세대의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실내인테리어업체 등을 통하여 개별시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칙적 시공책임이 불분명한 경우, 사업주체는 적법한 감리를 통한 시공으로 사용승인을 득하였으므로 본 아파트의 사업주체에게 일방적인 하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하자발생 책임소재에 대한 원인 규명 의무는 입주자 본인에게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미확장 시 각 세대의 발코니에 선홈통 또는 배수구 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발코니 확장 세대는 인접 발코니 비확장 세대의 발코니 사용 또는 우천으로 인해 소음 등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발코니 확장 세대는 미확장 발코니에 선홈통 또는 배수구 등이 설치됨)
- 옥외화재대피시설은 외벽 마감재 설치로 인하여 발코니 실사용 면적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유상옵션 미선택 시 공간 특성상 유상옵션(추가옵션)은 신청이 불가하오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36타입의 경우에는 발코니 확장 여부와 상관없이 유상옵션 선택 가능함)
- 발코니 확장 시 외부 창호의 사양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시 외부 창호 및 하드웨어는 고급형으로 설치될 예정입니다.
- 발코니 확장 계약 시 비확장으로 남아 있는 세대는 발코니, 실외기실은 준 외부공간으로서 외부 창호, 난방 시공 및 단열재가 설치되지 않으므로 내·외부 온도차에 의하여 결로 및 결빙에 의한 마감 손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보관된 물품은 훼손될 수 있습니다. (결로 및 곰팡이 등의 하자 발생 시 하자보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발코니의 단차는 바닥 구배 시공으로 인해 견본주택 및 준공도면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에 따라 외부 창호가 설치된 발코니 외벽에는 단열재 및 마감재가 설치되며(옥외화재대피시설 및 실외기실은 제외) 설치 부위와 재질은 발코니별, 주택형별로 다를 수 있음. 또한, 실제 발코니 면적보다 실사용 면적은 줄어들어 시공됩니다.
- 견본주택은 발코니 확장형 구조를 기본으로 설계되었으므로, 기본형(비확장) 선택 세대는 확장형 세대와 다르게 전용 공간이 협소하고 내부 인테리어, 가구 배치, 가구·선반의 길이 및 구성, 냉매 배관 및 조명·배선기구의 타입·위치 등이 전혀 다르게 적용됩니다.
- 기본형(비확장) 세대는 거실/침실과 발코니가 만나는 내측 면에만 창호가 설치되며 발코니 외측 벽면에는 분양가 포함 외창이 설치되지 않습니다. 또한, 상·하·좌·우 인접 세대의 확장 여부에 따른 단열 및 배수 설계로 인해 비확장 발코니의 천장고 및 창호 높이가 축소되거나 바닥 레벨(턱)이 거실 및 침실보다 높게 시공되어 이용에 상당한 불편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인접 세대의 단열재 추가 시공으로 인하여 비확장 발코니 내부의 우물천장 폭·깊이가 축소되거나 벽체 돌출로 인한 실사용 면적 감소가 발생할 수 있으며, 주방 발코니 상부 렌지후드 환기 덕트, 배관, 연도 등이 천장에 노출되거나 하부 바닥 배관 턱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 비확장 발코니, 실외기실 등은 준외부 비난방 공간으로 외창 미설치 및 내·외부 온도 차에 의해 결로, 결빙, 곰팡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마감재 손상 및 보관 물품 훼손, 그리고 외창 미설치 상태에서 발생한 우수 침투 등의 현상은 입주자의 관리 책임 영역으로서 시공사의 기본 하자보수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에 따릅니다.

8 추가 선택품목(유상옵션)

■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단위 : 원, VAT 포함]

타입	선택		설치위치	제조사	공급금액	계약시(10%)	잔금(90%)
						계약시	입주시
36	1안	2대	거실/침실+침실2	LG전자	3,500,000	350,000	3,150,000
45	1안	2대	거실+침실1		3,600,000	360,000	3,240,000
	2안	3대	거실+침실1+침실2		5,500,000	550,000	4,950,000
59A	1안	2대	거실+침실1		3,900,000	390,000	3,510,000
	2안	3대	거실+침실1+침실2		5,800,000	580,000	5,220,000
	3안	4대	거실+침실1+침실2+침실3		7,300,000	730,000	6,570,000
59B	1안	2대	거실+침실1		3,900,000	390,000	3,510,000
	2안	3대	거실+침실1+침실2		5,800,000	580,000	5,220,000
	3안	4대	거실+침실1+침실2+침실3		7,300,000	730,000	6,570,000
84A	1안	2대	거실+침실1		4,200,000	420,000	3,780,000
	2안	3대	거실+침실1+침실2		6,000,000	600,000	5,400,000
	3안	4대	거실+침실1+침실2+침실3		7,700,000	770,000	6,930,000
84B	1안	2대	거실+침실1		4,200,000	420,000	3,780,000
	2안	3대	거실+침실1+침실2		6,000,000	600,000	5,400,000
	3안	4대	거실+침실1+침실2+침실3		7,700,000	770,000	6,930,000
84C	1안	2대	거실+침실1		4,200,000	420,000	3,780,000
	2안	3대	거실+침실1+침실2		6,000,000	600,000	5,400,000
	3안	4대	거실+침실1+침실2+침실3		7,700,000	770,000	6,930,000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은 발코니 확장(36제외) 계약 시 선택 하실 수 있으며, 본공사 시공을 위해 일정 시점 이후 유상옵션 선택 및 기계약에 대한 변경은 불가합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옵션계약은 제안된 사항 외에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으며, 시스템에어컨 옵션금액은 공동주택 공급금액과 별도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선택 시 별도의 천장 냉매배관으로 시공, 설치됩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선택 시 36, 45타입 거실의 경우 천장 전열교환기 장비 주변 에어컨 실내기가 설치됩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절 품귀 또는 신제품의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 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의 실내기 설치 위치는 세대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냉방전용제품으로 난방운전이 불가하며, 운전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설치로 인하여 우물천장의 크기 및 깊이, 에어컨 설치부위의 천장 높이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위치는 등기구 위치를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가동 시 발생되는 응축수 배수를 위해 설치되는 드레인 배관은 세대 내 일부 벽체에 노출되어 설치됩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리모컨(무선)은 실내기 1대당 1개가 제공됩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선택에 따라 각 세대 내 실외기실에는 에어컨 실외기가 설치되며, 이로 인한 실외기실 공간이 협소해질 수 있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선택 시 설치되는 실외기에 추가 에어컨을 연결하여 가동할 수 없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미선택 시 매립 냉매배관은 거실(스탠드형), 침실1(벽걸이형)에 기본 설치됩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미선택 시 36타입 매립 냉매배관은 거실/침실(스탠드형), 침실2(벽걸이형)에 기본 설치됩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계약 이후 선택 취소 시, 기본제공 품목인 냉매매립배관의 시공은 불가하오니 양지 바랍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옵션 선택에 따른 실 이외의 별도의 냉매배관은 시공되지 않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은 제조사별 IoT 어플리케이션과 연동되는 제품이며, 세대 내 월패드 또는 스마트홈을 통해 표시되는 기능은 시스템에어컨에서 제공되는 기능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평면 특화

[단위 : 원, VAT 포함]

구분	84A	84B	비고
①스마트 언박싱 현관	2,100,000	1,800,000	-
②수납강화형 주방	500,000	-	-

- 평면선택형은 발코니 확장 계약 시 선택 하실 수 있으며, 본공사 시공을 위해 일정 시점 이후 평면선택형 유상옵션 선택 및 해지는 불가합니다.
- 스마트 언박싱 현관 옵션 선택 시 타입별 제공되는 옵션의 구성과 형태가 상이하오니 계약 전 확인 바랍니다.
- 84A 수납강화형 주방 선택 시에는 쿡탑, 후드의 위치 조정 및 주방가구 형태가 변경 제공되오니 필히 확인 바랍니다.
- 평면 특화 선택에 따라 전기, 설비 관련 제품의 수량 및 설치 위치가 변경 시공될 수 있습니다.
- 평면선택형에 따라 추가 유상옵션 선택이 상이하오니 관련 내용 숙지 후 선택 하시기 바랍니다.
- 평면 특화 ①스마트 언박싱 현관 선택 시, 현관 창고 및 시스템선반이 미제공됩니다.
- 평면 특화 ①스마트 언박싱 현관 선택 시, 타입 별 제공되는 가구의 길이와 형태가 상이하오니 계약 전 확인 바랍니다.
- 평면 특화 ②수납강화형 주방 선택 시, 침실1 드레스룸의 길이가 줄어들며 주방 팬트리가 제공됩니다.
- 평면 특화 ②수납강화형 주방 선택 시, 쿡탑, 후드의 위치, 주방가구의 형태, 주방상판/벽 길이 등이 변경 제공되오니 변경되는 평면을 필히 확인 바랍니다.

■ 공간 특화

[단위 : 원, VAT 포함]

구분		45	59A	59B	84A	84A (수납강화형 주방)	84B	84C	비고
주방	①주방 특화	6,300,000	6,800,000	6,400,000	8,700,000	7,800,000	9,000,000	9,000,000	[동시선택 불가 항목] ■공간특화 ②미니멀 주방 동시선택 불가 [84A(수납강화형 주방)선택 조건] ■평면특화 ②수납강화형 주방 선택 시 선택가능
	②미니멀 주방	-	10,400,000	10,400,000	10,400,000	10,500,000	10,400,000	10,400,000	[동시선택 불가 항목] ■공간특화 ①주방 특화 동시선택 불가 ■가전/시스템 ②키친핏 4도어 냉장고+3도어 김치냉장고+톨장 동시선택 불가 [84A(수납강화형 주방)선택 조건] ■평면특화 ②수납강화형 주방 선택 시 선택가능
	③주방 특화+미니멀 주방 (①+②)	-	17,200,000	16,800,000	19,100,000	18,300,000	19,400,000	19,400,000	①+② 동시선택 옵션 [동시선택 불가 항목] ■공간특화 ①주방 특화, ②미니멀 주방 동시선택 불가 ■가전/시스템 ②키친핏 4도어 냉장고+3도어 김치냉장고+톨장 동시선택 불가 [84A(수납강화형 주방)선택 조건] ■평면특화 ②수납강화형 주방 선택 시 선택가능
욕실, 드레스룸	④욕실, 드레스룸 특화	1,800,000	9,600,000	5,500,000	12,200,000	9,900,000	8,100,000	7,800,000	[84A(수납강화형 주방)선택 조건] ■평면특화 ②수납강화형 주방 선택 시 선택가능

- 공간 특화(①주방 특화, ②미니멀 주방, ③주방 특화+미니멀 주방, ④욕실, 드레스룸 특화)는 발코니 확장 계약 시 선택 하실 수 있으며, 본공사 시공을 위해 일정 시점 이후 유상옵션 선택 및 기계약에 대한 해지는 불가합니다.
- ①주방 특화, ②미니멀 주방 동시선택은 불가하며, 동시선택을 원하는 경우 ③주방 특화+미니멀 주방으로 별도 선택 바랍니다.
- 미니멀 주방(②,③) 선택 시 가전/시스템 특화 ②키친핏 4도어 냉장고+3도어 김치냉장고+톨장 동시선택은 불가합니다.
- 미니멀 주방(②,③) 선택 시 냉장고, 김치냉장고 설치공간에 미니멀 주방이 설치됨에 따라 별도의 냉장고, 김치 냉장고장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 미니멀 주방(②,③) 선택 시 기본, 유상옵션 주방가구 및 주방 벽/상판의 길이가 변경되오니 사전에 확인 바랍니다.
- ②미니멀 주방의 히든가전캐비넷 상판은 SOFT WHITE로 적용되어 별도의 스타일 선택은 불가합니다.
- ③주방 특화+미니멀 주방 선택 시 히든가전캐비넷 상판은 ①주방 특화에 포함되어 있는 스타일 선택제(SOFT WHITE, MUTE GRAY)에 따라 공통 적용됩니다.
- 주방 특화(①,③) 유상옵션 미선택 시 제공되는 주방 상부장의 높이는 유상옵션 선택 시 제공되는 주방 상부장의 높이와 상이하니 사전에 확인 바랍니다.
- 84A 평면특화 ①수납강화형 주방 선택 시 공간특화 유상옵션 적용 범위가 기본형과 상이하오니 계약전 확인 바랍니다.
- 미니멀 주방(②,③)의 히든가전캐비넷에 적용된 조명용 스위치의 위치가 이동선반 간섭을 고려하여 후면 하단에 설치되어 사용상 불편할 수 있습니다.
- 기본, 유상으로 제공되는 인조석 및 엔지니어드 스톤은 자재 특성상 색상, 무늬 등은 동일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음부의 위치는 본공사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기본, 유상으로 제공되는 타일은 자재 특성상 색상, 무늬 등은 동일하지 않을 수 있으며, 본공사 시 시공성을 고려하여 사이즈 및 나누기는 변경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욕실, 드레스룸 특화는 욕실1, 욕실2 (45 욕실), 드레스룸(해당 타입)에 적용되며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를 지정 하실 수는 없으니 계약전 위치를 반드시 확인 바랍니다.
- 84A, 84B, 84C 타입은 욕실, 드레스룸 특화 선택 시 욕실1의 세면기, 휴지걸이 사양 및 ABS 도어, 양변기, 악세서리, 비상콜 등의 설치 위치가 변경되며, 제공되는 수건걸이의 길이가 짧게 조정되어 제공됩니다.
- 84A, 84B, 84C 타입은 욕실, 드레스룸 특화 선택 시 세면기의 배수 소음을 고려하여 카운터탑 하부에 조적이 추가 시공됩니다.
- 84A, 84B, 84C 타입은 욕실, 드레스룸 특화 선택 시 욕실1 ABS 도어 위치 변경으로 제공되는 드레스룸의 깊이 및 시스템 선반의 길이는 줄어들며, 파우더장 옆 톨장이 추가

제공됩니다.
- 욕실, 드레스룸 특화 선택 시 제공되는 드레스룸 서랍은 드레스룸 규모에 따라 상이하게 제공되며, 일부타입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 욕실, 드레스룸 특화 선택 시 드레스룸에 제공되는 선반 조명용 스위치가 추가 제공되며, 시스템 선반은 벽판넬 고정 및 조명 적용으로 선반 이동이 불가합니다.
- 욕실, 드레스룸 특화 선택 시 제공되는 비데일체형 양변기 리모컨은 욕실 벽면에 시공되지 않으며, 입주 시 지급품목으로 입주자께서 수령 후 직접 부착하셔야 됩니다.

■ 마감 특화

[단위 : 원, VAT 포함]

구분	36	45	59A	59B	84A	84B	84C	비고
발코니 외창	2,300,000	-	-	-	-	-	-	-
현관 중문	-	2,600,000	2,600,000	2,600,000	2,600,000	2,600,000	2,600,000	-
바닥 특화	-	450,000	650,000	610,000	870,000	820,000	860,000	-
벽면 특화	-	3,200,000	3,000,000	3,200,000	4,300,000	4,100,000	4,000,000	-
조명 특화	-	1,200,000	2,300,000	2,000,000	3,000,000	2,800,000	2,800,000	-

- 현관 중문, 바닥 특화, 벽면 특화, 조명 특화는 발코니 확장 계약 시 선택 하실 수 있으며, 본공사 시공을 위해 일정 시점 이후 유상옵션 선택 및 기계약에 대한 해지는 불가합니다.
- 현관 중문, 벽면 특화, 조명 특화의 설치 위치는 타입별 상이하며,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를 지정 하실 수는 없으니 계약전 위치를 반드시 확인 바랍니다.
- 현관 중문은 기밀, 차음, 단열 등의 성능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며, 공간 분리의 목적에 한하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현관 중문은 시공상 중문틀 또는 벽과 다소 이격이 생길 수 있으며 이로인해 소음, 먼지 외풍 유입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현관 중문은 타입별 사이즈가 다르며, 본공사 시 형태, 재질, 색상, 하드웨어의 사양 등이 동급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현관 중문 유상선택에 따라 신발장의 형태, 규격, 도어 개수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미선택 시 가구와 이웃하여 벽체가 조성됩니다.
- 바닥 특화의 설치 위치는 타입별 상이하며,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를 지정하실 수는 없으니 계약전 위치를 반드시 확인 바랍니다.
- 기본, 유상으로 제공되는 강마루는 자재 특성상 반복되는 패턴으로 인위적인 느낌이 들 수 있으며, 본 공사 시 자재 수급 및 단종 시 유사 패턴지로 변경 시공될 수 있습니다.
- 기본, 유상으로 제공되는 강마루의 패턴지는 동일, 규격은 상이하며, 본 공사시 강마루의 규격은 생산과정에서 일부 조정 될 수 있습니다.
- 벽면 특화의 설치 위치는 타입별 상이하며,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를 지정하실 수는 없으니 계약전 위치를 반드시 확인 바랍니다.
- 벽면 특화 기본, 유상으로 제공되는 타일은 자재 특성상 색상, 무늬 등은 동일하지 않을 수 있으며, 본공사 시 시공성을 고려하여 사이즈가 및 나누기는 변경 시공 될 수 있습니다.
- 기본, 유상으로 제공되는 아트월 타일에는 미관을 고려하여 메지가 시공 되지 않습니다.
- 조명 특화 설치 위치는 타입별 상이하며,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를 지정하실 수는 없으니 계약 전 위치를 반드시 확인 바랍니다.
- 조명 특화 유상옵션 선택 유무에 따라 제공되는 등기구의 타입, 기능, 수량, 위치가 달라지며, 그에 따라 해당 실의 스위치 타입, 기능, 회로 수가 달라지므로 계약 전 확인 바랍니다.
- 84A 평면 특화 중 ①수납강화형 주방 선택 시 조명 특화 적용 범위의 주방 우물천장의 사이즈가 기본형과 상이하오니 계약 전 확인 바랍니다.
- 84A 평면 특화 유상옵션 선택 유무에 따라 제공되는 등기구의 타입, 기능, 수량, 위치가 달라지며, 그에 따라 해당 실의 스위치 타입, 기능, 회로 수가 달라지므로 계약 전 확인 바랍니다.
- 거실 및 주방 우물천장의 크기는 평형별로 사이즈가 상이하며, 일부 평형은 거실 우물천장이 확대되어 주방공간까지 하나의 우물천장으로 구성될 수 있습니다.
- 조명 특화 선택 시, 주방 우물천장 간접등은 평면구조 및 주방 규모를 고려하여 타입별 상이하게 제공되거나 미제공 되오니 계약 전 확인 바랍니다.
- 조명 특화 선택 시, 욕실장 하부 센서등의 경우, 등기구는 욕실장 하부에 설치되며, 등기구 동작을 위한 센서는 욕실 천장에 별도로 설치됩니다.
- 조명 특화 선택 시, 욕실장 하부 센서등의 설치방식 및 하부 타공 수량은 본공사시 견본주택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조명 특화 선택 시, 거실 및 주방 우물천장 내에 적용되는 간접등은 On/Off 기능만 제공되며, 디밍 및 색온도 조절 기능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 조명 특화 선택 시, 안방 및 침실조명에 밝기 조절(디밍) 기능과 색온도 조절 기능이 추가되며, 이에 따라 스위치의 기능/모양이 달라집니다. (옵션 미선택 시, 조명 On/Off 기능만 제공됨)
- 조명 특화 미선택 시, 거실에는 단순 우물천장만 시공되며 간접조명이 설치될 등 박스 공간은 설치되지 않습니다.

- 조명 특화 미선택 시, 욕실장 하부에는 조명이 설치되지 않으며, 등기구 동작을 위한 센서 또한 욕실 천장에 설치되지 않습니다.
- 조명 특화 미선택 시, 설치되는 식탁 매입등의 수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조명 특화 미선택 시, 안방 및 침실의 조명은 On/Off 기능만 제공됩니다.
- 조명 특화 유상옵션 미선택 시, 안방 및 침실 스위치는 일반형 네트워크 스위치가 제공되며, 선택 시에는 터치형 네트워크 스위치가 제공됩니다.

■ **가전/시스템 특화**

[단위 : 원, VAT 포함]

구분	36	45	59A	59B	84A	84B	84C	비고
인덕션	-	400,000	400,000	400,000	400,000	400,000	400,000	-
키친핏 4도어 냉장고 + 3도어 김치냉장고 + 톨장	-	-	5,200,000	5,200,000	5,200,000	5,200,000	5,200,000	[동시선택 불가 항목] ■공간특화 ②미니멀 주방, ③주방 특화+미니멀 주방 동시 선택 불가
키친핏 4도어 냉장고	-	3,400,000	-	-	-	-	-	-
식기세척기	-	-	-	-	1,020,000	1,020,000	1,020,000	-
직배수형 로봇청소기(삼성)	-	2,000,000	2,000,000	2,000,000	2,000,000	2,000,000	2,000,000	후라이팬 서랍장 미제공
욕실 복합환풍기	380,000	380,000	750,000	750,000	810,000	810,000	810,000	-

- 가전/시스템 특화는 발코니 확장(36제외) 계약 시 선택 하실 수 있으며, 본공사 시공을 위해 일정 시점 이후 유상옵션 선택 및 기계약에 대한 해지는 불가합니다.
- 가전기기는 유상옵션 선택 시 설치되는 제품은 입주시점이 아닌 공사 시점에 생산된 제품으로 설치되며, 단종에 따른 제품 사양 변경 시 에너지소비효율 등급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키친핏 4도어 냉장고+3도어 김치냉장고+톨장 유상옵션 선택 시 제공되는 도어 마감 및 색상은 견본주택 내 시연된 제품으로 제공됩니다.
- 키친핏 4도어 냉장고+3도어 김치냉장고+톨장 유상옵션 선택 시 인출식 서랍이 포함된 톨장이 제공되며, 제공되는 톨장의 규격은 타입별 상이합니다.
- 키친핏 4도어 냉장고+3도어 김치냉장고+톨장 유상옵션 선택 시 공간특화 ②미니멀 주방, ③주방 특화+미니멀 주방 유상옵션은 선택하실 수 없습니다.
- 키친핏 4도어 냉장고+3도어 김치냉장고+톨장 유상옵션 선택 시 바닥, 후면에는 별도 마감이 시공되지 않습니다
- 키친핏 4도어 냉장고+3도어 김치냉장고+톨장 유상옵션 미선택 시 일반 프리스탠딩 냉장고, 김치냉장고 설치 공간을 기본제공하나, 보유 또는 신규 구매 제품의 크기에 따라 설치가 불가하거나, 가구보다 도출되어 설치 될수 있으니 사전에 확인바랍니다.
- 식기세척기 미선택 시 주방 하부장이 제공됩니다.
- 식기세척기 유상옵션 선택 시 뒷벽에는 별도 마감이 시공되지 않으며, 본공사 시 시공성 등을 고려하여 주방가구 걸레받이 일부를 따내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식기세척기 유상옵션 선택 시 일부타입은 주방가구 배치에 따라 주방하부 코너장이 제공되지 않으며 사용상 불편할 수 있으니 설치 위치를 사전에 확인바랍니다.
- 식기세척기 유상옵션 선택 시 설치 높이를 고려하여 본공사 시 식기세척기 위 가구 판넬이 시공 될 수 있습니다.
- 인덕션 쿡탑 미선택 시 4구 가스쿡탑이 설치되며, 가스밸브가 노출되어 시공됩니다.
- 인덕션 쿡탑 유상옵션을 선택하지 않고, 고객이 별도 구매하는 전기용량 3.3kw 초과 전기쿡탑을 설치할 경우 계약자 본인이 전기공사를 별도로 진행하여야 합니다.
- 직배수형 로봇청소기(삼성) 유상옵션 선택 시, 후라이팬 서랍장이 제공되지 않으며 로봇청소기 장이 설치됩니다.
- 욕실 복합환풍기 옵션계약은 욕실1, 욕실2(36, 45 욕실)에 설치되며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 욕실 복합환풍기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절 품귀 또는 신제품의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 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욕실 복합환풍기 설치 위치는 세대별로 차이가 있으며, 공간특화 ④욕실, 드레스룸 특화 옵션 선택 유무에 따라 견본주택 시공 위치와 상이 할 수 있습니다.
- 욕실 복합환풍기 리모컨(무선)은 장비 1대당 1개가 제공됩니다.
- 욕실 복합환풍기 미선택 시 기본형 욕실 배기팬이 설치 됩니다.
- 욕실 복합환풍기를 두 대 이상 설치하는 59타입 이상의 경우, 전기용량으로 인해 별도의 전기 차단기가 설치됩니다.

■ 추가 선택품목 납부일정

계약금(10%)	잔금(90%)
추가 선택품목 옵션 계약 시(추후 별도고지)	입주지정기간

■ 추가 선택품목 금액 납부계좌

구분		금융기관명	납부계좌	예금주
추가 선택품목금액	계약금(최초 계약 시)	하나은행	231-910059-46804	에스케이에코플랜트(주)
	잔금	계약 체결 시 세대별로 개별 가상계좌 부여		

※ 계약금은 상기 명시된 계좌로 납부하여야 하며, 잔금은 향후 세대별 부여되는 가상계좌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 납부계좌는 아파트 분양대금, 발코니확장 납부계좌와 상이하므로 입금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잔금 납부계좌는 가상계좌로 부여되며 모계좌 (하나은행, 231 – 910059 – 46804, 에스케이에코플랜트(주))로 관리됩니다.
※ 잔금 납부계좌는 계약시에 부여되는 세대별 가상계좌로 납부하여야 하며, 세대별로 계좌번호가 상이하므로 입금 시 유의 바랍니다.
(개인별 납부계좌(가상계좌)는 계약체결 시 세대별 계약서에 명기하여 고지 예정임.) 무통장 입금 시 동 ·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예시 - '101동 1403호 홍길동 → 1011403홍길동 / 101동 201호 홍길동 → 1010201홍길동'으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잔금 납부일에 위의 해당 금융기관 계좌로 입금(계좌이체 및 무통장 입금)하시기 바라며, 사업주체에서는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단, 고객 서비스 차원에서 SNS, 문자 등으로 일정 안내가 가능하며, 이는 법적 구속력이 없고 수분양자는 반드시 본인 확인 하에 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위하여 온라인 수납만을 인정하며, 견본주택에서 일체의 현금 및 수표 수납은 하지 않으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타인 명의 등 계약금 납부 주체가 당첨자와 상이하거나 불분명하게 입금된 경우에는 계약금 미납 및 계약 미체결로 처리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제반 문제에 대하여 사업주체에서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착오납부에 따른 문제 발생 시 사업주체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추가 선택품목 유의사항

-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제4조,「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시행지침」제4조와 제4조의2에 의거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품목으로 사업주체가 제시하여 추가로 품목을 선택하고 공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 계약은 아파트 공급계약 및 발코니 확장 계약과 별도로 진행할 예정이며, 계약일정은 추후 별도로 공지할 예정입니다.
-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의 계약일정, 계약내용, 납부일정(계약금, 잔금 등), 납부계좌 및 제품에 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견본주택(분양사무소)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 판매가는 아파트 공급금액 및 발코니 확장금액과 별도이며,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에는 취득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입주 후 관할관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시공 상의 문제로 일정시점 이후에는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의 계약 및 취소가 불가합니다.
-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과 관련하여 모델은 제품의 품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 또는 동급 이상(타사 제품 포함)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은 견본주택에 설치된 세대에 전시(일부)되오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 계약은 공급계약에 부수되는 마감공사 관련으로 소요자재를 선발주하여 미리 확보하여야 하고 특히 계약 이후에는 계약 해제 변경 시 원상복구, 변경공사 비용 등이 추가로 발생하는 계약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일정시점 이후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은 발코니 비확장 시 구조상의 문제로 일부 및 전체 품목 선택이 제한될 수 있으며, 일부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은 특정 품목을 선택해야만 추가선택이 가능한 유상옵션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의 입주자모집공고 시 공개된 금액의 총액 범위 내에서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별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의 위치 및 선택항목은 당사 분양홈페이지 또는 견본주택에 전시되오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의 설치 위치는 지정되어 있으며,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를 지정할 수 없습니다.
-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의 설치 여부에 대하여 입주자모집공고 시 입주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입주자와 주택공급계약 체결 시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의 구입 의사가 있는 입주자와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 공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에 관한 내용은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시행지침」에 따릅니다.
- 시공사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기타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에 대해서 계약자는 시공사에 민원 제기 및 하자보수 책임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9 단지여건 및 유의사항

공통	일반사항	• 타사 아파트의 마감 사양, 부대편의시설 및 조경 수준을 근거로 본 아파트에 건축인허가도서 외의 추가적인 시설 설치나 자재 교체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계약자는 주택법 제60조 제3항에 따라 견본주택 내에 비치된 마감자재 목록표 및 평면도, 시방서를 충분히 비교·검토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준공 전·후 개인 또는 임의 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세대 내·외 공용부분 시설물 등)을 요구할 수 없으며, 만약 준공 전·후 최종 건축허가도면 이외의 사항을 요구할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 사업시행사 및 시공사가 선정한 감리자가 성능시험 등을 통하여 품질 또는 성능 확인 후 현장 시공에 적합하다고 승인하여 설치한 자재 또는 제품에 대하여 시공사가 설계도면 및 시방서 등에 따라 시공한 경우 설치(시공) 당시부터 성능미달의 제품을 설치하거나 시공(설치) 상의 하자가 있었음이 밝혀지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재 상태에서 성능미달 사실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시공자에게 품질 또는 성능미달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거나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 전항의 경우 입주 이후 입주자의 사용에 따른 자재 또는 제품의 성능저하 발생 시 입주자 또는 관리주체가 유지 보수 및 관리하여야 하며, 입주 이후에 발생하는 유지 보수 및 관리상의 문제로 인한 성능미달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입주자 또는 관리주체가 책임져야 합니다. • 본 아파트(단지)의 공사 중 현장여건 반영, 시공성 개선, 구조 상세 해석에 따른 구조 안정성 확보(부재 단면, 배근 간격 등) 및 각종 인증·성능 개선 등 품질 제고를 위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습니다. • 「주택법」 및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계약자의 별도 동의 및 안내 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카탈로그, CG, 모형 등 각종 홍보물에 표현된 단지 외관, 주민공동시설, 조경 등의 연출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 시공 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최종 인·허가 도서 및 설계변경 도서에 준하여 시공됩니다. • 공사 진행 및 인허가 과정에 따라 내·외부 입면 디자인(옥탑, 측벽 등), 마감재의 컬러·패턴·규격, 가구 및 기기의 디자인 등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견본주택 내에서 확인이 곤란한 공용부 상세 사항은 최종 사업시행인가 도서(설계변경 도서 포함)를 준수합니다. •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의 발견 및 발굴, 전염병 발생, 정부의 정책 및 관계 법령의 변경, 관련 지자체의 기반시설 공사 지연 등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불가항력적 사유로 공사 및 입주가 지연될 경우, 해당 지연 기간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입주지연 배상금이 발생하지 아니합니다. 입주 지연 시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는 입주전 별도 안내 예정입니다. • 본 아파트는 교육청이나 인·허가청 요청 시 분양계약 관련사항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분양 카탈로그, 팜플렛, 홈페이지, 사이버 견본주택 등 각종 홍보물 및 인쇄물에 기재된 내용과 입주자모집공고문 및 분양계약서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주자모집공고문과 분양계약서의 규정이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본 아파트의 전반적인 공사 품질 관리, 마감 자재 기준 수립 및 하자 예방을 위하여 일부 세대를 샘플하우스(목업세대 또는 선행시공세대)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운영 이후 원상복구 하여 인도하기로 합니다. • 지정일(입주자사전점검일 등의 지정일) 외에는 안전사고 등의 예방을 위하여 현장에 출입할 수 없습니다. • 당첨 이후 주소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내용을 사업시행자 및 시공자에 즉시 서면(주민등록표등본 포함)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인허가	• 본 아파트의 소유권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는 준공 전·후 관련 행정관청의 인·허가 이행 여부, 준공검사, 지적공부정리 절차 및 토지 합병·분할 등 부득이한 행정 절차로 인하여 실제 입주일(입주지정기간)과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 각종 분양 홍보물 상의 단지 배치 및 세대 현황은 사업시행인허가(변경 포함) 도서를 기준으로 제작된 것으로, 실제 시공은 관계기관 협의 및 사업승인 조건에 따라 변경된 최종 준공 도면을 기준으로 시공됩니다. • 홍보물에 표기된 단지 주변 개발계획 및 각종 시설(도로, 학교, 차도, 하천, 광장, 공원, 녹지, 유보지 등)조성 계획은 각 시행 주체가 계획 또는 예정 중인 사항을 표현한 것으로 시행 주체 및 국가시책에 따라 향후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사업시행인가 변경 시 기인가조서상의 내용과 견본주택에 전시된 사항에 일부 상이한 부분이 있을 수 있고, 인·허가 진행과정 중에 일부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며, 분양계약 체결 시 또는 이후 해당 변경에 대한 동의서를 요청할 경우 이를 확인하여야 하며, 자세한 사항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추후 인허가 변경 시 현장여건 및 관련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될 수 있으며, 입주자의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충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내 편의시설물, 안내시설물, 아파트 단지명, 동번호, 외벽로고 등의 위치, 형태 및 재질

		: 조경식재, 조경시설물 및 수공간, 어린이놀이터, 옥외 주민운동시설, 휴게소, 쓰레기분리수거장, 자전거보관소, 가스정압기, 한전패드, 포장, D/A(환기구), 외부계단 : 비상차량동선, 소방차전용구역, 공기안전매트 설치공간, 단지 레벨차에 따른 조경/옹벽 등의 디자인, 위치 및 개소 : 기타 주택법 및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경미한 설계변경사항
	사업지 및 도로단지 주변현황	• 본 단지 주변 도로, 인접 교통망 및 주위 건축물(인접 단지 포함)의 통행 차량 등으로 인하여 소음, 진동, 채광 제한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계약 체결 전 반드시 사업 부지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주변의 도로 여건, 학교 배치, 냄새·소음 유발 시설 등 주위 환경을 충분히 확인하고 계약하여야 합니다. • 단지 주변부의 미개발 필지 신축, 증·개축 공사 및 도로 정비 공사 등이 진행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일정 기간 먼지, 소음, 진동 발생 및 통행 지장이 초래될 수 있으나 이는 본 사업의 사업주체 및 시공사와 무관합니다. •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시공되는 단지 인접 건물(지상 구조물 포함)의 신축, 증·개축 또는 단지 주변의 재개발·재건축, 단지 내 자연 단차에 따른 옹벽/석축 시공 등으로 인해 조망권 침해, 일조량 감소, 소음 등의 직·간접적인 불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각종 홍보물 및 안내문에 표기된 단지 주변의 도로 계획, 대중교통망, 주변 환경 및 기타 공공시설 등의 개발 계획은 각 행정 관청 및 개발 주체가 추진 예정인 사항으로, 향후 인허가나 국가 정책 등에 따라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으며 이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와 무관합니다. • 단지 내 도로 방향에 면한 세대의 경우에는 차량 및 일반인의 통행으로 인한 소음, 프라이버시 침해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사용검사 때와 달리 입주 후 교통량 증가 등 주변여건 변화로 소음이 심화될 경우에는 행정청에 이의제기 및 보상요구를 할 수 없으므로 소음에 대한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분양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실제 시공 시 현장여건 또는 인·허가에 따라 도로 및 보도 등의 경사도, 단지레벨 계획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현재 도로계획은 향후 정비계획변경 등의 사유로 도로선형에 변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학교	• 당 사업지의 초등학교 통학구역은 의왕덕성초등학교입니다. • 학생 배치계획은 개발계획의 변경, 학생 배치여건 변화 등에 의해 추후 변경될 수 있고, 동 계획은 향후 공동주택 입주시기 및 학생수 등을 감안하여 해당 관청에서 결정하는 사항이므로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군포의왕교육지원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단지	**동별 현황**	• 단지 내 공공장소(중앙광장, 오픈스페이스, 산책로), 주민공동시설(커뮤니티 공간, 경로당, 어린이집, 관리사무소 등), 옥외 시설물, 어린이·유아 놀이터, 주민운동시설, 휴게쉼터, 외부 계단 및 외부 엘리베이터 등)에 인접한 세대는 이용자 및 유동 인구에 의한 소음, 진동, 보행자 시선 노출로 인한 사생활 침해(프라이버시 간섭)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일부 저층 세대는 단지 내 설치되는 쓰레기 분리수거장 및 재활용 보관소, 자전거 보관소, 조경식재 및 옹벽(자연단차) 등에 인접하여 조망·일조 제한, 미관 저해, 냄새, 해충 등 환경권의 침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견본주택에 비치된 도면 및 단지 모형을 통해 해당 시설물의 위치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지하주차장, 주민공동시설 등 단지 내 부대복리시설은 각 동별 위치 및 계단실 등의 배치에 따라 접근 거리와 동선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각 동의 주출입구는 주변 지반레벨 등에 따라 위치 및 구조형식 등이 동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쓰레기 분리수거장은 동별·코아별로 접근성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109동의 경우 지하층에서 이용) • 각 주동별 출입구 디자인 및 동선 구조, 캐노피 형태에 따라 낙수(우수) 소음이나 외부인 통행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주동 코어에 배치된 엘리베이터(E/V) 기계실 및 승강로와 벽체를 공유하거나 인접한 단위세대의 경우 엘리베이터 운행에 따른 미세 소음 및 진동이 전달될 수 있습니다. • 일부 동의 지하시설물(기계실, 전기실, 발전기실, 팬룸, 제연휀룸, 보일러실 등) 및 지상에 노출된 드라이에어리어(D/A 급배기구), 필로티·측벽의 제연그릴창 가동 시 인접 세대(특히 저층 및 지하 인접 세대)에는 장비의 주기적인 시험 가동 및 비상 가동으로 인한 소음, 진동, 매연, 냄새가 전달될 수 있습니다. • 각 동 출입구에 인접하여 자전거보관소가 설치되며 저층 일부 세대 조망권 및 환경권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각 동별로 자전거보관소의 위치나 개수는 상이합니다. • 각 동별 필로티의 사이즈 및 위치는 동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각 동별 필로티상부(최하층)세대의 경우 욕실배관은 층상배관으로 설치됩니다. • 각 동별 최하층 E/V 홀에 설치되는 제습시스템 가동에 따른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해당 비용은 관리비에 포함되어 부과됩니다. • 일부 저층 세대의 경우 동출입구 형태에 따라 동 현관 및 장애인 경사로 설치에 따른 시각적 간섭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비상시 인명구조를 위한 공기안전매트 설치 구간에는 식재 및 차폐시설이 제한되며, 이로 인해 일부 세대 사생활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발전기실 인접 동(106동)의 경우 발전기의 비상가동 및 주기적 시험가동 시 소음, 진동 및 매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단지 계획 (설계, 디자인, 마감)	• 본 아파트는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동간 거리 및 배치를 준수하여 계획되었으나, 동별·향별·층별 위치에 따라 세대 상호 간 일조권, 조망권, 사생활권 등의 환경권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층간·세대 간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계약 전 사업부지 현장 및 주변 여건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내 도로 방향에 면한 세대의 경우에는 차량 및 일반인의 통행으로 인한 소음, 프라이버시 침해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정비구역 내 시공되는 공원, 녹지, 도로 등은 기부채납 부지이며, 관계기관의 요구 및 인허가 변경 등에 따라 위치와 면적, 경사도 및 레벨 계획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의 주택형별 공급면적, 계약면적 및 대지지분은 소수점 넷째 자리까지 표현하였으며, 관련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절차 및 준공 전 지적확정측량 결과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단, 관련 법령 및 측량 오차 범위 내의 경미한 소수점 이하의 증감에 대해서는 상호 정산하지 아니합니다. • 지하주차장, 주민공동시설, 근린생활시설, 외부 시설물(D/A, 지하주차장 계단실, 쓰레기 분리수거함, 자전거 보관대 등)은 현장 여건 및 인·허가 과정에 따라 내·외부 디자인, 용도, 규모, 구조, 재료, 창호 사양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수분양자는 계약 체결 시 이러한 변경 가능성을 인지한 것으로 봅니다. • 각종 인쇄물 및 이미지, 모형 상에 표현된 주변환경, 부지고저차 등은 실제 시공 시 입주자 동의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단지의 동 표시, 동 번호, 외부색채, 그래픽, 조경, 외관, 옥탑디자인, 외부조명시설 등은 현장여건 및 인·허가 관청과의 심의, 협의(자문) 과정에서 입주 시 공급 시의

		명칭과 일부 디자인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외부 난간 및 옥상 난간의 턱 높이, 형태, 재질은 변경될 수 있으며, 단위세대 및 공용부의 창호 사양, 위치, 크기 변경 등에 따라 입면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주변도로, 단지 내 차로(비상차로 포함), 주차장 출입구 램프, 문주 등에 인접한 저층 세대는 차량 진·출입 및 통행으로 인한 소음, 진동이 발생할 수 있으며, 차량 전조등, 가로등 및 야간 경관 조명에 의한 눈부심, 사생활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목적물의 명칭 또는 지번은 계약 체결 이후 상표등록 여부 및 필지의 분할 또는 합필에 의하여 홍보물과 다르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부 포장의 재료, 패턴 및 색상, 도로선형 등은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으며, 단지 내 도로 등의 경사도 및 단지레벨은 시공 중 주변도로의 경사도 및 레벨에 순응하기 위하여 조정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배치도 상의 각 시설의 명칭 및 내용은 인·허가과정, 법규 변경, 현장여건 및 상품개선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변 도로의 경사도 및 대지의 레벨차이로 인하여 단지 내 도로 경사도가 발생하며, 시공 중 주변도로의 경사도 및 레벨에 순응하기 위하여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공부상 주소 체계도 향후 관할 관청의 기준에 따라 브랜드명이 표시되지 않고 마을 명칭만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 실제 시공 시 현장 여건, 대지 측량 결과, 인·허가 변경 등에 따라 단지 내 도로 선형, 조경(수목·수경 시설물·포장 일체, 옥상 녹화 포함), 옹벽의 형태 및 위치, 배기탑 등 구조물의 규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외부 레벨변화에 따른 경사로 및 조경석쌓기, 옹벽계획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외부 옹벽 패턴 및 색채, 디자인 등은 현장여건 및 인·허가 관청과의 심의, 협의(자문)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추후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구역 내 공원 및 기반시설, 도로 등의 계획은 인·허가 관청과의 심의, 협의(자문)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추후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조경공간(중앙광장,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휴게공간), 주민공동시설 등에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인접한 세대는 사생활 간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지 조경 및 식재계획, 조경시설물(놀이, 운동, 휴게, 수경시설)계획 위치는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조경 수목의 안정적인 생육과 조기 활착을 위해 식재 시 뿌리분에 감겨 있는 철사, 고무바, 거적 등은 조경 시공 기준 및 전문 시방서에 의거하여 제거하지 않고 일부 존치하여 시공되며, 이는 수목의 정상적인 생육을 돕는 공법으로 수목 고사와 무관합니다. • 준공 후 단지 조경수의 정기적인 관수, 시비, 전지 등 유지 관리 의무는 공동주택 관리주체 및 입주자에게 귀속되며, 입주 이후 유지 관리 소홀로 인하여 발생한 조경수 고사 및 조경 시설물 노후화는 시공사의 하자보수 책임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 단지 내 조경 공간, 식재 수종, 조경 시설물(놀이·운동·휴게 시설)의 배치 및 산책로 선형 등은 전체적인 단지 조화와 시공성 향상을 위해 현장 여건에 따라 일부 변경되거나 증감될 수 있습니다. 단, 자재의 규격이나 총 수량의 변경이 있을 시 당초 계획보다 동등 이상의 품질로 시공됩니다. • 관계기관 심의결과, 시공과정(현장여건) 등에 따라 단지 내 도로 및 보행로의 경사, 폭, 조경선형 및 식재계획, 포장계획, 시설물계획의 재료, 형태, 색채, 포장문양 위치 및 규모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관계기관 심의결과에 따라 주민공동시설(어린이집, 경로당, 돌봄센터) 및 근린생활시설 지붕 저관리형 옥상녹화 계획 되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수 없습니다. • 단지 내 수경시설의 청소, 점검 등 관리 미흡으로 녹조, 백화현상 등이 발생 할 수 있으며 미관저해 및 악취가 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조경시설물 및 수경시설, 옥상녹화로 인해 발생하는 유지/보수/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정기 점검, 수질검사, 소독, 안전관리요원 배치 등)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단지 내 설치되는 미술작품은 미술작품 설치계획 심의를 득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위치, 형태 등은 심의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부출입구 도로 형태는 주변 현황 및 레벨 측량값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한전PAD, 통신맨홀 등의 인입 위치 및 외부 배관 위치는 한국전력, KT 또는 기간 통신사업자와의 협의 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당 현장의 구내용 이동통신설비는 사업시행인가 승인 시 협의 비대상임을 25.01.02. 한국전파진흥협회에서 확인하였으므로, 최상층 모든 세대에 한하여 이동통신설비가 설치될 가능성이 있음을 인지하시고, 이에 따른 별도 민원 제기가 불가함에 동의합니다.
	외관 계획	• 외관개선을 위하여 건물외관(지붕, 옥탑, 주동 입면, 측벽, 발코니 앞 장식물, 창틀모양 및 색, 난간 디테일, 색채, 줄눈계획, 입면패턴, 마감재 등), 공용부 디자인(동출입구, 지하층 출입구, 필로티, 캐노피, 주차장 램프, 경비실, 부대시설, 커뮤니티 지원시설 등), 외부 시설물 (문주, DA, 자전거 보관소, 쓰레기 분리수거장 등), BI위치 및 내용, 옹벽 디자인, 조경 디자인 등은 설계 및 인·허가 과정, 발주처 협의에 따라 실제 시공시 변경될 수 있으며, 단지 전체의 통일성과 완성도를 위한 것으로, 입주자의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아파트 및 기타 건축물의 외관은 관할관청의 이미지 개발에 따른 고유 마을명칭, 경관계획(야간 경관조명 포함) 및 색채계획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측벽 로고의 위치는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 취향 민원에 의한 변경사항이 될 수 없습니다. • 아파트 외관개선 또는 인·허가 조건상 일부 세대의 전·후면 발코니 및 일부 지붕 및 옥탑상부 등의 위치에 장식물 또는 구조물 등이 부착될 수 있습니다. • 주동 옥탑의 외관 형태 및 디자인은 인허가 조건 및 기계실 구조 개선 방향에 따라 본 공사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거동 외부 석재는 3개층 기준이나, 일부 뿜칠 및 적용 부위가 현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외부마감에 따라 창호 프레임 및 실외기 그릴 컬러가 변경될 수 있으며, 각동별 석재와 페인트 적용 비율이 상이할 수 있고 인·허가 및 현장여건에 의해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주동의 동출입구 및 저층부 3개층의 외벽마감은 지정석재로 마감될 예정(필로티 내부 및 일부 구간 제외될 수 있음)이며, 재료의 색상 및 디자인은 시공 중 변경될 수 있습니다. 외부마감에 따라 창호 프레임 및 실외기 그릴 컬러가 변경될 수 있으며, 각동별 석재와 페인트 적용 비율이 상이할 수 있고 인·허가 및 현장여건에 의해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야간 조명 효과, 야간 시 차량 진·출입, 주변도로의 차량통행에 의한 눈부심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각 동의 외창부 벽에 입면의 디자인을 위한 돌출부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주동 저층부 및 외벽 마감재 설치 계획에 따라 입면 돌출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저층 세대의 경우 외부 창호의 크기가 다소 축소·변경되거나 벽체 두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문주는 진입공간 배치 현황 및 현장 여건에 맞춰 형태, 크기, 배치가 결정되며 문주 설치로 인해 주진입부에 위치한 일부 저층세대에서는 세대 조망에 간섭 및 일조권 침해가 있을 수 있으며, 문주에 설치된 조명 및 빛의 산란에 의해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의 마감재 사양 및 디자인에 대해 타사 및 당사의 타 단지를 비교하여 추가 설치 또는 교체 등의 요구를 할 수 없으므로 충분히 비교 검토 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아파트 옥상 및 외벽에 경관조명, 조형물 및 로고(BI), 태양광 발전설비, 외장재 등이 설치되어 일부 세대 일조, 조망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LED 조명으로 인하여 인접 세대는 빛 반사로 인한 눈부심, 소음 등 피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태양광 발전설비의 위치는 본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동 배치 및 일조량에 따라 일부동 혹은 전체 동에 분산 설치되며, 구조물에 의해 설치 높이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일부동 측벽에는 발주처 협의에 따라 추후 마감 및 조명이 설치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입면디자인 및 옥탑구조물, 저층부 석재계획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입주 시 단지 내 도로, 바닥마감, 조경, 창호형태, 난간재질, 입면장식 몰딩 등으로 인하여 사다리차 이용 시 제한이 있으므로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이사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 입주 시 엘리베이터를 이용한 이삿짐 운반 및 인테리어 공사 진행 시에는 관리사무소의 안내에 따라 사전 보양 조치를 완료해야 **하며,** 운행 중 계약자(또는 이사·인테리어 업체)의 고의·과실로 발생한 공용부 시설물 파손 및 변형은 원인 제공자의 책임 하에 원상복구 하여야 합니다.
	공용시설	• 본 아파트 단지는 임대주택을 포함하고 있으며, 단지 내 건립되는 부대복리시설(관리사무소, 경로당, 주민공동시설 등), 공유시설물 및 대지는 분양구분(조합원·일반·임대 등)에 관계없이 전체세대가 공동으로 사용하여야 합니다. • 주동 주변 또는 지하주차장 진출입 램프에 인접하여 배치되는 쓰레기 집적소(재활용 분리수거함), 자전거 보관소, 주차 차량의 진·출입으로 인하여 일부 저층 세대는 소음, 차량 전조등 및 가로등에 의한 야간 눈부심, 분진, 미관 저해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쓰레기 수거 차량의 상시 접근에 따른 간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부대복리시설, 경로당, 어린이집 및 근린생활시설(상가)의 옥상 및 주변에는 가동 설비(냉난방 실외기, 환기 배기팬, 보일러 연도 등)가 설치될 수 있으며, 인접 세대는 장비 가동에 따른 소음, 진동, 열기, 업종에 따른 조리 냄새 등이 전달될 수 있으므로 견본주택 내 도면과 단지 모형을 통해 해당 시설 위치를 반드시 사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부대복리시설, 경로당, 어린이집 및 근린생활시설(상가)의 옥상에는 저관리형 옥상녹화가 설치 예정이므로 견본주택 내 도면과 단지 모형을 통해 해당 시설 위치를 반드시 사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출입구, 주민공동시설의 위치 및 형태는 본 공사 시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공공장소(중앙광장, 놀이터, 운동시설, 분리수거함 등) 및 지하시설물(기계실, 전기실, 환기탑 D/A 등)과 인접한 세대는 소음, 진동, 불빛, 분진, 미관 저해 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 간섭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분양 공고문상에 명기되지 않은 단지 내 유해 요소를 확인해야 합니다. • 단지 내 공공장소 및 부대복리시설(중앙광장, 어린이/유아놀이터, 주민운동시설, 휴게공간, 필로티, 외부 계단 및 엘리베이터), 주민공동시설, 근린생활시설, 미술장식품 등의 설치로 인해 인접 세대는 소음, 진동, 사생활 침해 및 일조/조망권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부대복리시설(경로당, 어린이집, 관리사무소, 주민공동시설 등), 공용시설물(재활용 창고, 쓰레기 집적소, 자전거 보관소, 설비환기구, 실외기실 등) 및 도로선형, 석축의 배치에 따라 일부 세대(특히 저층부)는 일조권·조망권 제한, 소음, 진동, 냄새, 빛반사, 사생활 침해 등의 환경권 제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자전거 보관소와 스마트 모빌리티 거치공간이 설치되며 향후 위치 및 설치 대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는 단지 내 건립되는 공유시설물 및 대지는 근린생활시설 입주자(입점자)와 공동으로 사용하여야 합니다. • 해당 동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해당 세대에 주차 후 이동거리 증가, 근접한 주차면 부족 등으로 불편할 수 있으나 이는 설계상 불가피한 사항으로 이에 대한 민원 등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출입구(주·부출입구)의 위치, 단지 내 도로, 지하주차장(램프 포함) 등은 교통영향평가, 교통통제의 효율성, 현장 측량 결과 등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출입구 경비실 및 주차차단기 위치는 교통통제의 편리성 및 효율성을 위하여 이동하여 설치될 수 있으며, 근린생활시설 이용자와 공용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일부 보행자 출입구의 경우 경비실이 설치되지 않으며, 실시공시 보안/안전상의 문제로 경비실이 추가 설치(이동식 또는 고정식)되거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각 차량 및 보행자 출입구의 특화 디자인은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가로변 시설물이 신설, 추가되어 공사 중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민공동시설(커뮤니티 센터), 근린생활시설(상가), 어린이집,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야외 운동시설, 주민 휴게공간 및 단지 내 산책로와 인접하거나 동선이 겹치는 일부 세대는 시설 이용자들에 의한 소음, 진동, 야간 불빛, 사생활 노출(프라이버시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고 청약 및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상기 부대시설의 운영을 위해 필수적으로 설치되는 부속 설비시설물(보일러 연도, 배기 팬, 공조 환기구 D/A, 에어컨 및 냉난방 실외기, 쓰레기 분리수거장 등) 및 주동·부대시설 지붕 옥탑층에 설치되는 의장용 구조물, 항공장애등, TV공청 안테나, 피뢰침, 이동통신 중계기 등으로 인해 인접 세대에 미세한 진동, 소음, 열기 배출, 조망 차단 및 빛의 산란에 따른 사생활 침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주민운동시설, 쓰레기 집적소, 자전거 보관소, 설비환기구 등의 최종 설치 위치 및 개소는 본 공사 시 현장 여건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경관조명, 영구배수시스템, 기타 시설물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경우 단지에 포함된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되는 유지, 보수, 관리에 따른 일체의 비용(공용조명, 단지 홍보용 사인물, 휴대폰/인터넷을 이용한 홈네트워크서비스 운영 및 유지비용 등)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각 동의 저층부 및 고층부 세대는 가로등 및 경관조명 등에 의한 야간 조명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자전거보관소는 주민의 통행과 비상 시 소방작업 등으로 이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지하층(지하주차장, 주동 연결 통로, 지하 엘리베이터 홀, 계단실 등)은 구조적으로 밀폐된 공간이며 외기 온도와 지하 구체 간의 온도 차, 그리고 여름철 우기(장마철)의 높은 외부 습도 유입으로 인해 바닥, 벽체, 천장 표면에 결로 및 미끄럼 현상이 일시적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주동, 지하주차장 및 부대시설의 기초구조형식은 추가 지반조사 결과 또는 굴토 후 지내력 시험 결과에 따라 현장 여건에 맞추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하수위 저감을 위해 단지 내 영구배수공법이 적용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지하주차장 내에 별도의 지하수 배수를 위한 영구배수펌프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입주 후 펌프 가동 및 유지관리에 따른 비용은 공용관리비로 부과됩니다. • 단지 내 부대시설은 사업주체가 설치하고 운영 및 관리 등은 입주 후 입주자 부담으로 입주자가 직접 운영하여야 하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인수, 인계하기 전까지 위탁관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 단지에 설치되는 부대/복리시설 및 주민공동시설 등에 대한 사용과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입주민 전체의 공동시설물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나, 실입주 후 각 단지의 '입주자대표위원회(가칭)'에서 결정됩니다. • 주동 지하층 일부 구간에는 세대 창고(세대수 약30%)가 계획되어 있고, 세대창고의 위치 및 크기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세대창고의 운영방식은 입주 후 '입주자 대표위원회(가칭)'에서 결정됩니다. •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의 세부시설은 변경될 수 있으며, 주민공동시설은 대표회의 구성 후 입주민이 자체적으로 유지, 관리 및 운영을 하여야 합니다. • 홈페이지, 분양 카탈로그, 리플릿 등 각종 인쇄물에 인용된 조감도, 사진, 일러스트(CG), 단지배치도, 조경 및 커뮤니티 내부 인테리어 계획 등은 수분양자의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 연출 제작된 것으로 실제 시공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 시공은 관련 법령에 따른 최종 건축인허가도서(설계변경 포함) 및 준공도면을 기준으로 진행됩니다. • 주민공동시설에 운동시설(헬스장) 설치 시「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의 규정에 의한 영리를 목적으로 한 신고 체육시설업으로 운영할 수 없습니다. • 주민공동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상가)은 기능 향상 및 상품 개선을 위해 설계변경을 거쳐 일부 실 배치, 내부 레이아웃, 층별 구성, 입점 업종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민공동시설 등 부대복리시설은 기본마감만 제공되고 이동식 가구 및 가전, 소모 집기 및 비품은 제외되며, 마감재 및 제공품목, 진·출입 동선 계획 등은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 시 현장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주민공동시설 등 부대복리시설의 내부 평면 계획 및 시설 구성은 동등 이상의 수준으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부대복리시설의 형태, 모양, 색채, 수량 등은 현장 실시공 시 대관 인허가 과정, 측량 결과 및 각종 평가(심의) 결과에 따라 법적 범위 내에서 위치와 규모가 일부 증감되거나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일부 부대복리시설의 경우 지하층 등에 위치함에 따라 자연채광 및 자연환기에 불리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각종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되는 유지관리 및 운영에 관한 일체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부대복리시설 등의 시설의 사용과 운영은 주민자치협의기구에서 결정하여 운영되며, 관리비는 세대별 전용면적의 차이로 인해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 각 경관에 해당하는 조명, 경관계획은 관할청의 규제사항에 저촉 또는 권고될 경우 계획이 변경 및 삭제될 수 있습니다. • 옥외조명 등 단지에 포함된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되는 유지/보수/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공용조명, 단지 홍보용 사인물 등)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단지 내 전기 공급을 위한 한전 시설물(전주, 변압기, 개폐기 등)이 단지 내·외 지상에 설치되어 일부세대에서 조망될 수 있습니다. • 지하층 내 PIT 내부의 경우 천장 및 바닥, 벽체부의 마감은 미 시공됩니다. •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공용부의 창호(계단실, E/V 홀 등)에는 방충망이 설치되지 않습니다. • 커뮤니티는 인허가조건 및 개선 방향에 따라 계획안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공용설비 및 시스템	• 단지 내 CCTV는 실제 시공 시 방범 효율성, 기능 개선 및 감시 범위 최적화에 따라 설치 위치와 수량이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시스템 특성상 일부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으며,「개인정보보호법」및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방범, 안전관리 등 법적 허용 범위 내에서만 관리 및 운영됩니다. • 엘리베이터와 인접한 세대의 경우, 엘리베이터 운행으로 인한 소음 및 진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각 주동별 엘리베이터실 및 계단실 공용 홀에 설치되는 창호는 위치 및 층별 구조에 따라 크기, 형태, 설치 여부가 상이하여 부분적으로 채광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엘리베이터의 운행 속도 및 인승은 각 주동별 최고 층수와 법적 수용 인원 기준에 따라 동별로 차등 적용되며, 주동 코어 및 코널 형태(동별 배치)에 따라 계단실과 엘리베이터 홀의 세부 레이아웃 및 마감, 연결 형태가 상이할 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동별 건축도서를 필히 확인해야 합니다. • 단지 내 설치된 엘리베이터는 아파트 준공 및 입주 전, 법정 안전검사 및 공사용 선행 운행을 포함한 정밀 시험 운전을 거쳐 정식 이관됩니다. • 엘리베이터 홀은 채광창호의 설치 유무 및 창호크기, 또는 창위치는 부분적으로 채광이 제한됨을 사전에 인지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각 세대의 엘리베이터 홀(복도)과 현관문 사이의 공간(전실 등)은 집합건물법상 전 수분양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용면적이므로, 적치물 방치나 이를 개별적으로 칸막이 설치 등 전용화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식수 공급을 위하여 단지 내 맨홀이 단지 주출입구 인근에 설치될 예정이며, 설치 위치 및 제반사항은 수도 공급업체와의 최종 협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도시가스 공급을 위하여 사업부지 내 지역정압기가 설치될 수 있으며, 설치 위치 및 제반사항은 도시가스 공급업체와의 협의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추후 정압실 건축물 및 부지 제공에 대한 계약의 승계 의무가 입주민들에게 있습니다. • 택배보관함 이용자에 의한 사생활권 등의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택배보관함 위치는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휀룸, 배기탑, 발전기실 연도, 제연휀룸, D/A 등의 지상 돌출물의 위치 및 형태 일부가 공사 중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제연휀룸이 계획되어 있으며 일부 저층 세대에 소음 및 진동이 발생될 수 있으며 지상층에 제연급기용 그릴이 설치됩니다. • 단지 내 보도에 개보수와 도로시설물 및 지하매설물 설치가 상시 가능토록 하여야 하며, 관리사무소에는 해당서류를 상시 비치하여야 합니다.

		• 주동 지하층 계단실 진입 개구부에 바닥높이 차이로 인한 턱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각 세대 내부(침실, 신발장, 복도, 창고 등)에는 세대분전반, 세대통신단자함, 온도조절기, 홈네트워크 기기 등이 개별 설치되며, 실제 본 공사 시의 설치 위치 및 장비 배치, 그리고 옵션 평면 선택 여부에 따라 인접한 붙박이 가구 및 가구 선반의 내부 구조, 전기 배선기구의 위치와 수량이 견본주택 및 설계도면과 상이하게 조정될 수 있습니다. • 각 세대별 욕실 및 주방환기는 직배기 시스템이 적용되어 있으며, 환기캡의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각종 외부조명 및 홈네트워크 설비 등의 유지, 보수, 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 후 관리규약에 따릅니다. 시설물에 대한 계획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 및 부대시설(주민공동시설, 근린생활시설 등) 옥탑층 및 지붕층에 설치되는 의장용 구조물, 설비 통기 배관, 연도, 경관조명, 안테나(위성/공청), 항공장애등, 이동통신 중계기, 피뢰침, 측뢰피뢰침 등으로 인하여 인접 세대는 일조, 조망 차단이나 야간 조명 빛 산란, 소음·진동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홈네트워크를 통한 화상통화는 불가합니다. • 무인택배시스템 사용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은 관리비에 포함하여 부과되며, 무인택배함은 동별 1개소 각 동의 지하층에 설치될 예정이며, 설치 위치, 형태, 규모 등은 관계기관의 인·허가 과정 및 본 공사 시 현장 여건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홈네트워크 서버의 경우 고정IP(전용회선) 사용으로 입주 후 관리비용이 발생됩니다. • 정보통신공사는 초고속 정보통신 건물 인증(공동주택) 1등급 수준으로 시공되며, 홈네트워크 공사는 홈네트워크 건물 인증 AA등급 수준으로 시공됩니다. • Homeniq 서비스의 경우 이동통신사/포털사/제휴사의 서비스가 포함될 수 있으며, 해당 업체 정책에 따라 사용요금 및 사용제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Homeniq 가전기기 제어서비스는 Homeniq과 연동된 IoT 가전기기를 구매하고 세대 내 무선인터넷 환경이 구축된 경우 사용이 가능하며, 해당 기기 제조사의 정책에 따라 사용제한 및 제공하는 기능에 따라 서비스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Homeniq 서비스는 성능 개선이나 입주시의 기술개발 환경 등의 사유로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며, 입주 후 플랫폼 운영사의 정책에 따라 사용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Homeniq 서비스사의 운영 현황에 따라 입주 전 화면 구성, 디자인 및 제휴서비스가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차장	• 단지 내 지하 주차장은 지하3층~지하1층까지 3개층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 지하2층 주차장은 택배차량이 진입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 전기차 충전시스템은 총 204개(급속 14개, 완속 48개, 콘센트 142개) 설치되며, 주차장의 위치 및 구조에 따라 배치 위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측량 결과, 관련 법령의 변경, 관련 기관과의 인·허가 협의 및 단지 내 동선·기능·성능 개선을 위하여 아파트 주동의 위치, 지하층 층고, 일부 지하주차장 레벨, 램프 및 단지 출입구(주·부출입구)의 위치 등이 본 공사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은 동선 및 기능 개선을 위한 설계 변경에 따라 일부 구간에서 교차로가 형성될 수 있으며, 해당 교차 부분에서는 보행자 동선과 차량 동선의 간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도로(보행 및 비상차량 동선) 및 주차장 출입구에 인접한 세대는 차량 이동에 따른 조명, 소음, 진동 등의 환경적 간섭을 받을 수 있으며, 보행 및 비상차량 통행로를 통한 지하주차장 차량 진입은 불가능합니다. • 지하주차장 최상층 및 중간층에는 트렌치가 설치되지 않으며, 최하층 트렌치는 상시 물이 흐르는 배수 용도가 아닌 일부 결로수 등을 집수하는 공간으로 별도의 경사(구배)가 적용되지 않으며, 시공 허용 오차에 따라 일부 구간에 소량의 물이 고일 수 있습니다. • 지하층의 구조적 특성상 우기나 환절기에는 내부 온도·습도 차이에 의해 지하주차장 바닥, 벽면, 연결통로, 엘리베이터 홀, 계단실 부위에 결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진·출입 경사로(램프)는 동절기 기온 저하 시 차량의 미끄럼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행 시 유의해야 합니다. • 지하주차장 일부구간 빗물저류조 펌프실, 오수펌프실 등 내부 장비 작동으로 인해 인근 통행 시 소음, 진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은 입주자 전체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으로, 특정 동이나 세대별로 주차 위치를 지정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지하주차장과 아파트 지하층 엘리베이터 홀을 연결하는 통로의 길이 및 형태는 각 주동의 여건에 따라 다르게 시공될 수 있으며, 주동별로 인접한 주차대수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은 주차대수를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기둥 간격이 일정하지 않게 계획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일부 주차면은 기둥과 간섭되어 운전석 및 보조석의 승하차 시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상부에는 각종 배선, 배관, 환기장치(유도휀)가 노출되어 시공될 수 있으며, 일부 벽면에는 분전반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 또한 바닥 줄눈은 공사 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해당 부위 코킹은 시공되지 않습니다. • 지하주차장과 각 주동을 연결하는 지하층 통로 공간, 엘리베이터 홀, 계단실 등은 외부와의 급격한 온도 차 및 높은 습도로 인해 계절별 일시적 결로 현상이나 바닥 습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은 관련 법령 및 인허가 관청과의 협의에 따라 설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충전면 설치로 인해 법정 주차대수 내에서 일반 주차대수가 일부 감소하거나 변경될 수 있습니다.
	근린생활시설	• 근린생활시설(상가)은 기능 향상 및 상품 개선을 위해 설계변경을 거쳐 일부 실 배치, 내부 레이아웃, 층별 구성, 입점 업종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의 입점시기는 아파트 입주 시기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 전기 공급을 위한 한전 시설물(전주, 변압기, 개폐기 등) 및 쓰레기 분리수거장, 근생주차 등이 단지 내·외 지상에 설치되어 일부세대/점포에서 조망될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의 용도별 대지지분은 공동주택 공급면적, 근린생활시설 분양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습니다.

		• 근린생활시설의 대지지분은 아파트와 별개로 산정되어 있으나, 근린생활시설과 아파트 간 대지 경계가 분리되어 있지 않아 대지지분에 따른 구획 및 분할을 요청할 수 없으며, 지상차로 등 공동 사용 시설에 대한 일체의 점유권 등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단위세대	**평면**	• 단위세대 평면도 및 이미지들은 입주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계약 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인·허가 과정이나 본 공사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계약자는 동·호수 위치에 따라 견본주택 및 카탈로그의 평면이 좌우 대칭(동대칭)되어 적용될 수 있음을 인지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아트월 위치, 가구 배치 방향, 외부 조망 등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각 주택형별 유상옵션과 무상옵션 항목은 평면 여건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주택형별 공급 품목 및 유·무상 옵션 품목의 적용 여부는 상이하므로 반드시 카탈로그 및 옵션 안내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의 주택형별 단위세대 구조에 따라 발코니 면적 및 확장면적에 차이가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여야 하며,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택형, 동호수 등에 따라 각 시설별 공간의 크기, 창호의 크기 등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계약 체결 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 후 불법구조 변경 시 관계 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주자에게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의 세대 간 경계벽 및 바닥 구조(층간소음 차음 등)는 정부의 관련 주택 건설 기준 및 법정 규격에 적합하게 설계·시공되나, 공동주택의 구조적 특성상 발생하는 일상적인 생활 소음 및 진동(층간·세대간 소음)은 일정 부분 존재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 시 다용도실, 실외기실, 욕실, 현관 등 단차부위 시공 오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본 공사 시 실외기 루버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거실 우물천장은 스프링클러 배관설치로 인해 크기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 시 세대 내 욕실의 천장높이는 바닥타일의 마감 구조와 천장 내 설비배관 설치 등에 의하여 도면상의 치수와 달리 일부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 시 세대 내 욕실 단차는 바닥구배 시공으로 인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침실 내부로의 물 넘김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계되었으므로 욕실 출입 시 문짝에 의한 신발 걸림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실내 환기를 위해 도입된 기계환기시스템(디퓨저, 전열교환기 등), 주방 렌지후드 및 시스템 에어컨 가동 시 장비 자체 운전 소음과 진동이 발생하여 침실이나 거실 등 실내로 전달될 수 있으며, 욕실 직배기 방식의 배관 길이에 따라 세대별로 가동 소음의 체감 정도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다용도실 또는 창고, 수전이 있는 발코니, 실외기실 등은 겨울철 동파가 발생할 수 있으니, 창문 닫기 및 보온 조치 등 입주자의 신중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 세대복도 및 천장의 마감치수는 현장 시공 시 벽체 및 천장마감으로 인하여 인·허가 도면보다 안목치수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 현관, 침실1 발코니, 실외기실의 경우 비난방공간입니다. • 본 아파트의 내부 구조벽체 제거 및 변경은 불가하며 이를 어길 경우 민·형사상 처벌을 받게 됩니다.
	발코니/다용도실	• 환기 시스템 설치 또는 시스템 에어컨 선택에 따라 실외기실 또는 다용도실 천장에 덕트, 배관 등이 노출 시공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미관이 저해되거나 천장고가 낮아질 수 있고, 내부 마감(창호와 그릴, 전등의 크기 및 위치) 및 건축 입면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탁기와 건조기의 수직 설치 시 창문 개폐에 불편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소방인허가청 요구조건에 따라 3~10층 구간에는 침실, 거실, 발코니 등 단위세대 내부에 완강기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주택형 및 계획 용도에 따라 수전, 드레인(배수구), 선홈통, 환기구가 설치되는 발코니와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가 구별되며, 드레인이 없는 발코니(실외기실 포함)에서는 물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세탁기·보일러 설치 공간 및 선홈통 배치 구간은 동절기 수도 동파가 발생하지 않도록 입주자의 철저한 문단속 및 보온 관리가 필요합니다. • 세탁실(다용도실)에 세탁기와 건조기를 수직으로 직렬 설치할 경우 공간 협소로 인해 외창의 개폐나 채광에 간섭이 발생할 수 있으며, 실외기 공간은 지정된 장비 외 물품을 적재할 경우 에어컨 성능 저하, 과열, 소음·진동 증폭의 원인이 되므로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화재 등 비상 상황 발생 시 이웃 세대로의 대피를 위해 실외기실 내에 '하향식 피난구'(또는 36타입의 경우 발코니 내 경량칸막이)가 설치되며(일부 1층 및 필로티, 부대복리시설 상부 세대 등 제외), 해당 구역에는 피난 동선 확보를 위해 일체의 물건을 적치할 수 없습니다. • 하향식 피난구 구조적 특성상 미세한 층간 소음이나 방범 상의 문제가 일부 제기될 수 있으나 이는 관련 소방법령에 따른 필수 시설로 시공사의 책임 범위가 아닙니다. • 입주 후 개별적으로 발코니 확장공사를 진행할 경우, 계약자는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에 의거하여 해당 동 입주민 2/3 이상의 사전 동의 및 지자체 행위허가·준공검사를 적법하게 득해야 하며, 개별 시공 부위에서 발생한 하자 및 타 세대에 미친 소음·진동·분진 피해에 대한 모든 법적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발코니, 다용도실, 세탁실 및 실외기실 천장·벽체에 설치되는 각종 소방·드레인 설비 배관은 노출 시공되어 미관 저해 및 유수 소음이 일시적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다용도실 또는 발코니에서 배기형 가전제품(의류건조기 등)을 사용할 경우, 실내 온도와 습도가 급격히 상승하여 벽면 및 창호에 결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동 시 반드시 외부 창문을 개방하는 등 신중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 발코니 바닥레벨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실외기실은 물건 적재 장소가 아니므로, 해당 공간에 물품을 적치할 경우 에어컨 냉방 효율 저하, 장비 소음 증폭은 물론 비난방 구간 특성상 결로 및 결빙에 의한 물품 손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수전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는 배수설비가 설치되지 않습니다. • 옥상 배수를 위해 침실1 발코니, 다용도실, 실외기실 등에 우수선홈통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일부 발코니에는 선홈통 및 배수구가 설치되며 위치 및 개수는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습니다. 수전이 설치되지 않은 발코니는 물청소를 위한 배수설비가 설치되지 않습니다. • 발코니에 설치되는 난간과 발코니 창호의 형태 및 사양은 기능 및 미관개선을 위하여 형태 및 재질이 실 시공 시 인·허가 협의 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의 서비스 면적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면적 증감 시 분양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창호	• 외부 창호 색상, 디자인, 프레임 사이즈, 유리 두께 등의 창호 사양은 외부 입면 계획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저층부 세대 1,2층의 창호 외부에는 방범용 적외선 감지기가 설치됩니다. • 실제 시공 시 협력업체 계약관계 및 세대환기장치의 설치(환기덕트)로 인해 형태, 규격, 개폐방향, 손잡이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창호는 인테리어 마감, 시스템에어컨 등의 간섭을 고려하여 창호높이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창호, 문의 형태 및 위치는 견본주택 및 분양 안내책자 기준으로 시공되나 규격 및 사양, 열림(개폐)방향, 형태가 본 공사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내·외부 창호사양(유리, 하드웨어, 창틀)은 내풍압을 고려하여 세대별, 층별, 위치별로 상이하게 시공될 수 있습니다. • 환기 부족, 밀폐된 생활 환경 속에서 음식 조리, 가습기 사용, 실내 화분 비치, 실내 빨래 건조 등으로 인해 세대 내 창호 유리면, 창틀 주변, 외벽 단열 부위에 결로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창호 및 난간의 형태, 분할, 재료, 색상, 개폐방향 크기, 위치 등은 본 공사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저층 세대의 외벽 마감재 설치에 따라 외부 창호는 다소 축소 및 변경될 수 있으며, 벽체 두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및 공용부위의 창호는 재질, 규격 및 사양, 레버형태, 열림(개폐)방향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창호 외부에 설치된 유리난간 파손 우려로 이사 시 사다리차 사용이 불가합니다. • 거실 및 발코니1(36타입 발코니)의 외부창호는 유리난간이 적용된 조망형 창호가 설치되며, 유리난간은 고정되어 이동이 불가능합니다. 외부창호는 유리난간이 설치되는 부위만 개폐(슬라이딩식)가 가능하며, 유리난간이 설치되지 않는 창호는 안전상 고정되어 개폐가 불가능합니다. • 침실2, 침실3(84C타입 측창 제외)에 설치되는 창호는 시스템 창호 적용으로, 개폐창 제외한 나머지 외창1짝이 고정창으로 설치됩니다. 견본주택을 필히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가구 및 마감재	• 천연자재(석재, 목재 등)가 사용될 경우, 자재 특성상 동일한 무늬나 색상의 공급이 어려우므로, 자재 자체의 품질상 하자판단은 KS기준에 명시된 내용에만 한정합니다. (미사용 시 해당 없음) • 천연석(석재), 엔지니어드 스톤, 인조대리석, 마루, 타일, 유리 등 자재는 천연 자재 및 제조 공정의 특성상 일정한 무늬나 색상 공급이 불가능하므로 자재 특유의 자연적 패턴, 색상 차이, 베인(결)의 불균질성, 미세한 갈라짐 등이 존재할 수 있으며, 실제 본 공사 시 견본주택에 설치된 샘플 자재와 무늬 및 패턴이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인조대리석(현관디딤판, 화장대상판, 욕실뒷선반 등)은 무늬와 색상이 동일하지 않습니다. 재료의 접합연결부가 발생하며, 스크래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공장생산 자재(타일 등)의 경우 자재 자체의 품질상 하자의 판단은 KS기준에 의합니다. • 마감자재의 하자 판단은 관계 법령 및 국가표준(KS) 기준에 명시된 내용에만 한정하며, 시공 특성상 미세한 요철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적용되는 모든 자재는 시공 시기의 생산여건에 따라 자재의 품절, 품귀, 생산중단, 제조회사의 도산 등의 사유로 동등 이상의 다른 자재(타사자재 포함)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벽체, 바닥, 발코니 등의 타일 나누기 형태 및 주방 상판·벽체 마감재의 줄눈 위치는 본 공사 시 실제 시공 허용 오차 및 현장 여건에 따라 견본주택과 다르게 조정되어 시공될 수 있으며, 유리류 자재는 특성상 실내 조명의 종류 및 외부 채광 각도에 따라 색상이 다르게 보일 수 있습니다. • 주방 가구 및 일반 가구(신발장, 붙박이장, 화장대 등)의 마감재(시트지, 도장, 하이그로시 등)는 설치 후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환경적 요인(자외선, 실내 습도 등)으로 인해 자연스러운 황변 현상 및 표면 평활도의 미세한 변형이 발생할 수 있으며, 본 공사 시 자재 단종, 품귀, 제조사 도산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시행·시공사의 결정에 따라 동등 이상 성능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 시공됩니다. • 타일 및 가공석의 줄눈나누기, 마감 등을 고려하여 월패드, 세대분전반, 통신단자함, 스위치, 콘센트, 보일러 온도조절기 등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현관 신발장, 주방가구, 붙박이장, 욕실장 등 수납공간의 크기와 마감자재는 형별로 상이하므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사 시 각종 유리도어(슬라이딩, 여닫이, 픽스 등)의 디테일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옵션선택에 따라 조명기구, 배선기구(주방 상판 가스배관 타공 등)의 종류 및 설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 시 현관 디딤석의 나누기 위치는 변경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주방가구 상부장 후면 가스배관 설치로 수납장 폭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 본 공사 시 세내 내 설치되는 도어(목재, 철재, ABS) 및 문틀의 형태는 유무상옵션 선택 유무 및 마감을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 시 세내 대 커텐박스의 길이, 깊이는 건축, 전기, 설비 공종의 변경 및 주변세대의 발코니 확장 여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 시 붙박이 가구 및 욕실장으로 가려지는 벽, 천장, 바닥은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습니다. • 주방상판 위 제공되는 조리용 콘센트는 유지보수를 고려하여 주방하부장에 노출되어 시공됩니다. • 작업용 콘센트가 아일랜드 주방 상판에 설치될 시 주방가구 하부장 내 가림판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주방하부 코너장의 도어 설치는 타입별 상이하오니 사전에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주방가구 상부장 후면 가스배관 설치로 수납장 폭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 본 공사 시 아일랜드의 길이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본 공사 시 시스템 선반의 형태, 하드웨어, 사양, 색상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 시 욕실 단차 높이 및 천장고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 시 욕실 천장에는 배관점검을 위한 점검구가 설치되며, 수량 및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 시 세대 내 적용되는 마감자재(강마루, 타일류, 인조대리석, 시트류 등)는 자재 특성상 색상, 무늬, 패턴 등이 균일하지 않을 수 있으며, 단종 등의 사유로 동등사양 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 시 몰딩, 목창호, 시트판넬 등의 사이즈, 디테일, 취부방식, 디자인은 변경될 수 있으며, 판넬 고정을 위한 Staple Tacker 자국이 보일 수 있습니다. • 욕실장, 샤워부스, 시스템선반의 형태, 색상, 하드웨어의 사양 등이 동급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마감 표면재(벽지, 시트, LPM, 마루 등)는 제품 생산 시 미세한 색상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타일류는 재료적 특성 상 각 장 별 색상 및 패턴의 차이(멀티 패턴 타일)가 있을 수 있고, 시공 시 인접 타일과 줄눈 두께 상이 혹은 단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현장 여건에 따라 본 공사 시 나누기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바닥에 적용되는 타일은 균열 및 파손 하자를 예방하기 위해 분절 시공 될 수 있습니다. • 석재류(인조석재 포함) 자재 특성 상 색상, 무늬, 패턴 등이 균일하지 않을 수 있으며, 현장 여건에 따라 본 공사 시 나누기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현관중문(유상)은 주택형 별 사양(개폐 타입, 사이즈 등)이 다를 수 있으며, 본 공사 시 형태, 재질, 색상, 하드웨어의 사양 등이 동급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현관중문(유상) 설치 유무에 따라 신발장의 형태나 규격, 설치 위치, 도어 개수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기본형 또는 확장형 평면에 제공되는 품목(주방 가구, 냉장고장, 붙박이장, 드레스룸 선반 등)이 서로 차이가 있으므로, 계약 전 확장 시 제공 품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일부 타입의 경우 평면 형태에 따라 현관 거울사이즈 및 가구 사이즈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우물천장과 걸레받이는 본 공사 시 하자발생 방지를 위해 PVC 위 래핑 또는 도장으로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설치되는 마감재의 고유 두께(아트월, 주방벽 등)와 천장틀 종류에 따라 도면과 실제 안목치수 간에 미세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내부 가구의 폭이 일부 축소되거나 가구·전기·설비 시설물 간섭으로 일부 미사용 공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가구배치 및 마감자재 내용은 주택형별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견본주택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발코니 비확장 시 확장 세대와 상이합니다. • 거실 아트월은 오픈 줄눈으로 시공됩니다. • 거실 아트월의 패턴이 규칙적이지 않고 불규칙하게 설치되며 색상, 줄눈나누기 및 간격이 다소 다를 수 있습니다. • 거실 아트월 타일시공은 가로(수평) 및 세로(수직)의 무늬가 연결되지 않습니다. 타일 자재의 개별 고유무늬로 연결이 불가합니다. • 세대 아트월 부위는 내부 인테리어 마감재가 시공되어 있으므로, 벽걸이 TV 등을 고정할 경우 충격에 의한 마감재 탈락·파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거실 후면의 경량벽체나 콘크리트 구체에 직접 고정하여야 하며 필요시 별도의 보강공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 36~59㎡ 타입의 분합창 높이는 스프링클러설비 배관에 의해 사이즈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36~45㎡ 타입 거실 천장의 경우 카세트형 전열교환기가 설치됩니다. • 옵션 선택 유무에 따라 주방 자동식소화기기 조절부가 주방 상부장 하단 또는 주방후드 면에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 시 가구 및 세대 내부 마감재(시트, 도배지, 타일, 마루 등)의 제조사, 색상, 치수는 자재 수급 상황 등에 따라 동급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동일 모델인 경우에도 천연자재의 특성 또는 제조 로트(Lot)에 따라 견본주택 제품과 색상 및 무늬가 상이해 보일 수 있습니다. • 주방 상판은 무늬와 색상이 동일하지 않을 수 있으며, 상판 크기와 형태에 따라 나누어 제작/설치되는 관계로 본 시공 시 연결부위가 발생(세대별로 위치가 다를 수 있음)되며, 제품 특성상 스크래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인·허가 과정 및 본 공사 시 사용성 개선을 위하여 주방가구 및 수납공간의 계획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방가구(하부장, 아일랜드 포함), 붙박이장, 신발장, 욕실장/거울, 현관거울 등 고정식 가구 및 위생기구 설치로 인해 가려지는 비노출면(벽, 바닥, 천장)에는 마루, 타일, 석재, 도배 등 인테리어 내부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습니다. • 주방가구 상·하부장은 설치상의 사유로 인하여 장의 코너 부분을 사용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 타입별 주방가구 규모에 따라 유무상으로 제공되는 씽크대 크기, 주방하부장의 코너부분의 수납형태 및 도어 설치 위치 등이 상이하오니 확인 바랍니다. • 일부타입의 경우 주방(식탁공간)이 협소하여 식탁설치에 제약이 있거나, 식탁이 복도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 유상옵션 선택에 따라 주방가구의 케이싱폭은 변경 시공됩니다. • 일반 냉장고 설치 시 주방가구보다 냉장고 전면이 돌출될 수 있습니다. • 욕실 및 세탁실 문턱높이는 물 넘침을 방지하기 위함이며, 욕실화의 높이와 상관없습니다. (문 개폐 시 걸릴 수 있습니다.) • 세대 내부 욕실 및 발코니의 바닥 단차는 바닥구배 시공으로 인하여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위생도기, 수전류 및 각종 액세서리류(수건걸이, 휴지걸이 등)의 설치 시 현장 여건에 따라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욕실 거울의 경우 보호페인트가 입혀졌더라도, 자재특성(은 성분) 상 산성, 알칼리성 세제와 쉽게 화학반응하며, 습기에 의해 변색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 바 욕실 환기 및 유지관리에 유의해야 합니다. • 수전류, 각종 액세서리류(수건걸이, 휴지걸이 등) 및 샤워부스, 철재류는 녹발생 방지를 위하여 알칼리나 산성세제가 아닌 중성세제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사 커튼박스 시공 시 간섭부분의 가구 사이즈가 일부 줄어들 수 있습니다. • 본 공사 시 코킹 시공 부위는 달라질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세대 내 문 및 창의 위치는 시공과정에서 이동,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별 급배기를 통한 환기를 위하여 세대 환기장치가 다용도실 또는 실외기실 상부에 설치될 예정이며, 천장마감 없이 노출된 형태로 설치될 예정으로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의 발코니, 가구내부 등 실내 벽면에 PD내 기계배관 점검을 위한 점검구가 노출되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욕실/현관 등 단차부위 시공 오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상부 세대 비확장 시 하부 세대 천장 부위의 추가 단열공사로 인해 거실 우물천장 깊이, 폭, 커텐박스 깊이, 등기구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우물천장에 단이 추가로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실내 점검구는 설비공사 등의 유지관리를 위해 수량이 증감될 수 있으며, 사양, 위치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실 시공 시 바닥재의 종류에 따라 법정 허용한도 내에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전기기계설비	• 본 아파트는 개별난방 방식으로 설계됩니다. • 각 세대 내 환기 시스템은 본 공사 시 설치 위치에 따라 장비 및 덕트 등이 노출되며, 건축 입면 및 내부마감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환기구(급·배기용 및 디퓨저)의 위치와 개소는 관련 인·허가 도서에 준하여 설치되나, 실제 시공 시 환기 성능 개선 및 건축 변경 허가 등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확장 및 비확장, 옵션에 따라 배선기구 및 전등 위치가 상이할 수 있으며, 세대 내 스위치, 콘센트, 조명기구는 위치, 사양, 개소 등이 변경되거나 타입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배선기구(스위치, 콘센트), 조명기구, 홈네트워크 월패드, 세대분전함 및 통신단자함의 설치 위치 및 수량은 주택형별 · 타입 별로 상이할 수 있으며, 본 공사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분전함 및 통신단자함은 벽체(침실)에 커버가 돌출된 형태로 노출되어 설치될 수 있으니 계약자는 인테리어 마감 상태 및 시공 특성을 견본주택과 카탈로그를 통해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커튼박스의 깊이 및 길이는 배관 설치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타입별로 상이합니다. • 우·오수 배관, 바닥드레인 및 수전의 위치 및 개수는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일부 세대는 공용설비 점검을 위한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벽걸이 TV 설치 시 전선, 케이블 등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 에어컨 매립배관이 설치될 경우 확장여부에 따라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천장형 에어컨은 추가선택품목으로 제공되며 미선택 시 전 타입에 냉매배관 2개소[거실(스탠드형 기준 1개소)], [안방(벽걸이형 기준 1개소)]가 제공되며, 천장형 에어컨을 위한 냉매배관 및 드레인 배관은 설치되지 않습니다. • 시스템에어컨 옵션 미선택 시 거실용 에어컨 냉매박스는 거실 아트월 벽면에 플라스틱 마감카바로 설치될 예정이며, 냉매박스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실외기 설치 세대 여건에 따라 냉매배관의 설치 방향 및 형태가 세대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에어컨 실외기실의 전원은 단상(1Ø x 220V x 60Hz)이 공급되므로, 입주 후 제품 선정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시공 시 기본 포함되거나 옵션으로 선택하여 설치 완료된 가구(주방가구, 붙박이장 등)는 내부에 전기 배선 및 마감재가 연계 시공되므로, 설치 완료 후 임의로 위치를 변경하거나 이동할 수 없습니다. • 36, 45타입의 경우 거실 천장에 카세트형 전열교환기가 설치되어 작동 중 소음, 진동이 발생할 수 있으며 필터 교체 시 일부 필터 먼지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 가전기기(냉장고, 김치냉장고, 세탁기 등)의 용량, 크기에 따라 일부 제품이 설치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36타입 주방배기의 경우 공동배기 방식이 적용됩니다. • 주방에 설치되는 자동식 소화기는 사용 열원에 맞는 종류로 설치됩니다. • 주방 렌지후드에는 소방법규에 따라 자동식소화기가 설치되며 렌지후드 덕트 커버 사이즈 및 상부장 수납공간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옵션 선택 유무에 따라 주방 자동식소화기 조절부가 주방상부장 하단 또는 주방후드 면에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및 주방에 가스계량기 및 가스배관이 시공되며, 가스배관관경, 인입경로(위치) 등은 도시가스 공급측과 협의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 시 바닥 배수구, 수전류, 우·배수관의 디자인 및 설치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방에 설치되는 가스차단기 및 가스배관은 주방가구 고급화 옵션 선택에 따라 노출 또는 매립될 수 있습니다. (인덕션 옵션 선택 시에도 가스차단기 및 가스배관 적용) • 전기쿡탑, 전기레인지를 설치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제공하고 있으며, 단 전기용량 3.3kW 초과 전기쿡탑, 전기레인지를 설치할 경우 입주자 별도 전기공사 필요합니다. • 본 공사 시 싱크대 하부에는 온수분배기가 설치되며, 이로 인해 싱크대 하부공간이 부분 수정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 시 싱크대 하부 온수분배기에 연결된 노출 온수 파이프는 보온시공을 하지 않습니다. • 본 공사 시 싱크대 하부 온수분배기 앞 유지보수에 용이하도록 별도의 가림막 설치를 하지 않습니다. • 가스배관 설치 계획에 따라 가스배관이 외부에 설치될 예정이며 가스배관이 설치되는 주방 상부장의 깊이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욕실 내 설치되는 배수구 및 환기팬, 천장점검구의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욕실 복합환풍기 옵션 미선택 시 기본 욕실팬이 적용되며, 옵션 선택으로 복합환풍기가 설치될 경우 기본 욕실팬은 설치되지 않으며, 설치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저층부 세대는(1~3층) 세탁실 발코니 입상배관이 두개 이상 더 시공될 수 있습니다. (저층용 배관 및 통기관) • KT와 같은 기간통신사업자의 일반유선전화를 가입하지 않고 인터넷전화 등을 사용할 경우에는 홈네트워크기기(월패드 등)의 일부기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견본주택	**견본주택**	• 모형 및 조감도 등에 표현된 아파트 외벽의 줄눈 형태 및 컬러는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 도면과 견본주택(모델하우스)이 상이할 경우 인테리어사항은 견본주택(모델하우스)이 우선 적용됩니다. • 견본주택(모델하우스) 내부에 설치된 CCTV는 견본주택 보안 및 관리용 가시설물로, 본 공사 시 세대 내부 등에는 설치되지 않습니다. • 동일한 주택형(타입)이라도 동·호수 배치 및 평면 구조상 좌우 대칭형으로 시공되는 세대가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아트월 위치, 가구 배치, 소파 설치 벽면, 거실 창호의 열림(개폐) 방향, 주동 진입로와의 거리 및 외부 조망·일조권 등이 상이할 수 있으니 계약 전 동별 평면도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홍보 모형·CG와 견본주택 건립 유니트의 마감 내용이 상이할 경우 견본주택 시공 내용을 우선 적용합니다. • 견본주택(사이버 견본주택 VR동영상 포함) 내 건립된 유니트에는 분양가 포함 기본 품목, 발코니 확장형 옵션, 추가선택품목 (유상옵션) 및 디스플레이용 전시품(가구,

		소품, 가전, 연출용 조명 및 전시 전원 등)이 혼합되어 시공되어 있으므로, 계약자는 공급계약서 및 옵션 안내서를 통해 분양가 포함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본 공사 시 연출용 전시품은 일절 설치되지 않습니다. • 견본주택 내 건립 유니트 및 CG 등에 표현된 이동형 가구, 인테리어 소품, 운동기구, 디스플레이 용품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설치한 것으로 분양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단지 모형, 주민공동시설(커뮤니티) CG 및 조감도 등은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실제 시공 시 설계변경 등에 따라 내·외부 입면 디자인, 내부 레이아웃, 실별 용도, 제공되는 가구 및 기기, 마감재의 컬러 및 나누기도, 패턴, 규격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내 유니트에 설치된 스프링클러 헤드, 소방 감지기, 유도등, 비상방송용 스피커 등은 견본주택 자체의 소방 안전을 위한 가시설물입니다. 본 공사 시에는 실제 설계도면과 소방법령(화재안전기준)에 의거하여 재배치 및 시공되므로 사양, 수량, 위치가 변경됩니다. 이에 따른 소방 및 공조 배관 관통으로 인해 실 시공 시 일부 단위세대의 마감 사양, 우물천장의 폭·깊이, 커튼박스 깊이, PL창호 프레임 사양, 주방 상부 가구 구조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내 미건립 주택형(타입)의 평면, 마감재 등은 제공되는 모형물과 카탈로그를 참조하여 마감 수준을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마감재 수준 이상의 추가 변경 요구는 불가합니다. • 견본주택 내에 실제 건립되지 않은 주택형(타입)을 선택한 계약자는 단지 모형, 분양 안내책자(카탈로그), 사이버 모델하우스 등을 통해 세대 내부 구조, 실면적, 가구 배치 등을 사전에 충분히 확인하여야 하며, 입주 시점에 '견본주택 내에 유니트가 건립되어 있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 계약 해지나 소송, 변경 시공 또는 기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견본주택(모델하우스) 내에서 확인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공용부분 시설물(공용 계단실, 엘리베이터 홀의 형태 및 탑승 위치, 엘리베이터의 용량·속도·대수, 지하주차장 진출입 램프 및 연결통로의 길이·구조, 우·오수 배관 및 선홈통 위치 등)은 최종 사업시행인가(변경 승인 포함) 도서에 따라 시공되며, 현장 여건 및 시공성 향상, 관련 법령 범위 내 기술적 검토 등에 따라 일부 설계 변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마감자재 및 시공범위는 타입별로 차이가 있으니 반드시 계약체결 전 견본주택 및 모형, 인쇄물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은 분양 완료 후 일정 기간의 공개를 거쳐 사업주체의 규정에 따라 폐쇄 및 철거될 수 있으며, 철거 전 내부를 동영상 또는 사진으로 촬영하여 보관할 예정입니다. 철거 후에는 사이버 견본주택(VR) 및 보관된 촬영 자료를 마감자재 확인의 대조 기준으로 삼습니다. • 견본주택은 59㎡B, 84㎡A, 84㎡B 주택형이 설치되어 있으며, 그 밖의 사항은 VR자료와 홍보 제작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0 기타 주요 사항

■ 입주자 사전 방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7호 규정에 따라 도장공사·도배공사·가구공사·타일공사·주방용구 공사 및 위생기구공사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주지정기간 시작일 45일 전까지 2일 이상 입주자 사전방문을 실시할 예정이며, 정확한 사전방문 예정일자는 별도 통보 예정입니다.

■ 입주예정월 : 2029년 12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 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과 잔금을 실입주일에 함께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 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입주지연에 따른 지체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입주 시 단지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비 예치금을 부과합니다.
-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에 대해서는 입주 및 잔금완납이나 소유권이전유무에 관계없이 계약자가 부담합니다.
- 소유권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습니다.(특히 대지의 이전등기는 상당 기간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건물등기와 대지권 등기를 별도로 이행하여야 합니다)
- 입주지정기간이 경과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관리비 등이 부과됩니다.

■ 부대복리시설

- 관리사무소, 경비실, 경로당, 어린이집, 어린이놀이터, 작은도서관, 피트니스, 실내골프연습장, 탁구장, GX룸, 샤워실, 냉온탕, 게스트룸, 주민카페, 외부 주민운동시설(2개소)

■ 공동주택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보상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보상은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 제37조, 동법 시행령 제36조. 제37조, 제38조 및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동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적용됩니다.

■ 내진성능 및 능력 공개

- 본 아파트는 건축법 제48조 제3항 및 제48조의 3 제2항에 따른 내진성능 확보 여부와 내진 능력 공개에 의거 건축물의 중요도계수에 대응되는 내진등급을 아래와 같이 공개 합니다
- 내진능력의 표기 방법 중, 수정 메르칼리 진도 등급을 기준으로 내진능력을 아래와 같이 공개 합니다.

구분	내진능력(MMI 등급)
수정 메르칼리 진도등급	Ⅶ - 0.169g

■ 주차장 차로 및 출입구의 높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9의2

주차장 차로	주차장 차로의 높이	주차장 출입구의 높이
6.0M 이상	지하 2층 2.7m, 그 외 층 2.3m (주차 구역은 최소 2.1m 이상)	최고 2.7m

■ 감리회사 및 감리금액

(단위: 원, VAT 포함)

구분	건축감리	전기감리	소방·정보통신 감리
회사명	㈜토펙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덕원기술단	㈜동화이엔씨
감리금액	8,856,082,400	1,237,133,430	979,000,000

※ 감리금액은 감리회사와의 계약변경 등으로 증감될 수 있습니다.(이 경우 별도 정산하지 않습니다.)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64조 및「주택법」제39조 따른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 및 공동주택성능에 대한 등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1조 제3항

녹색건축 예비 인증서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예비 인증서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

■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1. 3. 24.>

녹색건축 예비인증서

건축물 개요		인증 개요	
건축물명	: 의왕시 부곡 '가' 구역 주택재개발 아파트 정비사업	인증번호	: G-SEED-P-2026-0573-9
건 축 주	: 부곡 '가' 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인증기관	: (사)한국환경건축연구원
준공(예정)일	: 2029년 10월 30일	유효기간	: 2026. 06. 01. ~ 사용승인일(사용검사일)과 녹색건축인증서 발급일 중 앞선 날까지
주 소	: 경기도 의왕시 삼동 192-244번지 일원		
층 수	: 지하 3층, 지상 34층		
연 면 적	: 298,576.6507㎡(평기면적:205,482.6662㎡)		
건축물의 주된 용도	: 공동주택(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설 계 자	: (㈜)동동종합건축사사무소		

인증 등급	
인증등급	: 우수(그린인증급)
인증기준	: 녹색건축 인증기준(공동주택)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705호, 환경부 고시 제2014-213호

위 건축물은 녹색건축(우수등급) 건축물로 인증되었기에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 및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라 예비인증서를 발급합니다.

(분야별 평가)
토지이용 및 교통 66%
에너지 및 환경오염 87%
재료 및 자원 49%
물순환관리 53%
유지관리 75%
생태환경 53%
실내환경 65%
0% 20% 40% 60% 80% 100%

종합등급 ★ ★ ★ ☆

2026년 6월 1일

사단법인 한국환경건축연구원 이사장

※ 예비인증을 받은 건축물은 완공 후에 본인증을 받아야 하며, 설계변경에 따라 인증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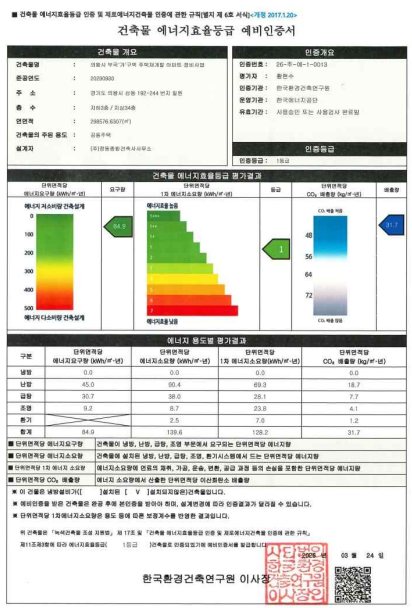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별지 제 6호 서식]<개정 2017.1.20>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서

건축물 개요		인증개요	
건축물명	: 의왕시 부곡 '가' 구역 주택재개발 아파트 정비사업	인증번호	: 2G-E-08-1-0013
준공연도	: 20290930	평가자	: 홍윤수
주 소	: 경기도 의왕시 삼동 192-244 번지 일원	인증기관	: 한국환경건축연구원
층 수	: 지하3층 / 지상34층	운영기관	: 한국에너지공단
연면적	: 298576.6507(㎡)	유효기간	: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 완료일
건축물의 주된 용도	: 공동주택		
설계자	: (주)한동종합건축사사무소	인증등급	
		인증등급 :	1등급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평가결과

단위면적당 에너지요구량 (kWh/㎡·년)	요구량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소요량 (kWh/㎡·년)	등급	단위면적당 CO_2 배출량 (kg/㎡·년)	배출량
66.2		31.7	1	8.1	

에너지 용도별 평가결과

구분	단위면적당 에너지요구량 (kWh/㎡·년)	단위면적당 에너지소요량(kWh/㎡·년)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소요량(kWh/㎡·년)	단위면적당 CO_2 배출량 (kg/㎡·년)
냉방	0.0	0.0	0.0	0.0
난방	45.0	90.4	69.3	18.7
급탕	30.7	38.0	28.1	7.7
조명	9.2	8.7	23.8	4.1
환기		2.5	7.0	1.2
합계	84.9	139.6	128.2	31.7

■ 단위면적당 에너지요구량 : 건축물이 냉방, 난방, 급탕, 조명 부문에서 요구하는 단위면적당 에너지량
■ 단위면적당 에너지소요량 : 건축물에 설치된 냉방, 난방, 급탕, 조명, 환기시스템에서 드는 단위면적당 에너지량
■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 소요량 : 에너지소요량에 연료의 채취, 가공, 운송, 변환, 공급 과정 등의 손실을 포함한 단위면적당 에너지량
■ 단위면적당 CO_2 배출량 : 에너지 소요량에서 산출한 단위면적당 이산화탄소 배출량

※ 이 건물은 냉방설비가( )설치된 [V]설치되지않은)건축물입니다.
※ 예비인증을 받은 건축물은 완공 후에 본인증을 받아야 하며, 설계변경에 따라 인증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소요량은 용도 등에 따른 보정계수를 반영한 결과입니다.

위 건축물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 17조 및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라 에너지효율등급(1등급)건축물로 인증되었기에 예비인증서를 발급합니다.

2026. 06. 09. 일

한국환경건축연구원 이사장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

1. 공동주택명 : 의왕시 부곡 '가' 구역 주택재개발 아파트 정비사업
2. 신 청 자 : 부곡가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3. 대 지 위 치 : 경기도 의왕시 삼동 192-244번지 일원
4. 성 능 등 급

1) 소음관련등급

성능분야	세부 성능항목	성능등급
경량충격음 저감성능		★★★★
중량충격음 저감성능		★
화장실 급배수소음		★★★★
세대간 경계벽의 차음성능		★★★★
외부소음	공동주택(도로, 철도)에 대한 실내 외 소음도	★★

2) 구조관련등급

성능분야	세부 성능항목	성능등급
기반성		★★
수리용이성	전용부분	★★
	공용부분	★★
내구성		★
지속가능한 자원활용(리모델링시)한가	주요구조부 적시용	-
	비내력벽 적시용	-

3) 환경관련등급

성능분야	세부 성능항목	성능등급
조경	생태면적률	★★
	자연지반 녹지율	★
	연계된 녹지축 조성	-
	비오톱 조성	★★★★
유휴지기피	기존대지의 생태학적 가치	★★★★
인접대지 영향	일조권 간섭정비 대책의 타당성	-
세대내 일조확보율		★
실내공기질	침실 공기질 시뮬레이션	★★★
	오염물질 방출 자재 적용	★★★
	단위세대의 환기성능 확보여부	★★★
	자연환풍 확보 여부	
폐기물 최소화	생활폐기물 가구별 시설계획 대책의 타당성	-
생활 폐기물 분리수거	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수거	★★
	유지활 건물의 저감	★★
친환경 인증제품 사용	친환경인증제품 사용비율	★★★★
	재료의 탄소배출량 정보표시	★★★
우수부지 절감	우수부지 절감대책의 타당성	-

5) 환경관련등급

성능분야	세부 성능항목	성능등급
수자원 절약	생활용 상수 절감대책의 타당성	★★★★
	우수이용	★★★★
	중수도 설치	-
에너지절약	에너지절약	★★★★
신재생에너지 이용	신재생에너지 이용	★★★★
지구온난화방지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	★
	건축물 보호를 위한의 특정물질의 사용금지	★★★

4) 생활환경등급

성능분야	세부 성능항목	성능등급
커뮤니티 센터 및 주민공동시설 조성수준		★★★
보행자 도로	단지내 보행자 전용도로 조성여부	★★★★
	외부보행자 전용도로 네트워크 연계여부	-
	대중교통에의 근접성	★★★★
교통부하저감	지전거 보관소 및 지전거도로 설치여부	★
	도시중심 및 지역중심과 단지중심간에 거리	★★★★
시설의 적재적 배치	전용부분	★
	공용부분	★
홈네트워크	홈네트워크 홈랜시스템	★
온열환경	각 실별 자동온도 조절장치 채택여부	★★★★
방범안전	이웃방범 콘셉트	★★
세계적인 환경관리	친환경 그린한 현장관리 계획의 탁월성	★★★★
효율적인 건물관리	유지/보지관리 운지 및 지원 체결의 타당성	★★★★
	시행자 매뉴얼 제공	★★★★

5) 화재소방등급

성능분야	세부 성능항목	성능등급
화재소방	감지 및 경보설비	★
	제연설비	★
	내화 성능	★
	수평피난거리	★★
피난안전	복도 및 계단 유효폭	★
	피난설비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제11조, 「주택법」 제21조2에 따라 위와 같이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를 발급합니다.

2026년 6월 1일

사단법인 한국환경건축연구원 이사장

■ **친환경 주택의 성능 수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1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1호에 따라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을 다음과 같이 표시합니다.

※ 친환경주택의 성능수준 (의무사항 적용여부)

의무사항		적용여부	사양, 성능, 설치위치, 설치개수(필요시)
건축부문 설계기준 (제7조 제3항 제1호)	단열조치 준수(가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 제1호에 의한 단열조치를 준수
	바닥난방의 단열재 설치(나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 제3호에 의한 바닥난방에서 단열재의 설치를 준수
	방습층 설치(다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 제4호에 의한 기밀 및 결로방지 등을 위한 조치를 준수
기계부문 설계기준 (제7조 제3항 제2호)	설계용 외기조건 준수(가목) (냉난방설비가 없는 경우 제외)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8조 제1호에 의한 설계용 외기조건을 따름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나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8조 제2호에 의한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을 따름
	고효율 가정용보일러 (다목)	적용	가정용보일러는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고효율관리기자재 운영규정」에 따른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이상 제품을 사용
	고효율 전동기(라목)	적용	전동기(단, 0.7kW 이하 전동기, 소방 및 제연송풍기용 전동기는 제외)는 산업통상자원부 고시「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에 따른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 받은 제품 또는 최저소비효율 기준을 만족하는 제품을 사용
	고효율 난방, 급탕・급수펌프(마목)	적용	난방, 급탕 및 급수펌프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 받은 제품을 사용하거나 그 평균 효율이 KS 규격에서 정해진 기준 효율의 1.12배 이상의 제품을 사용
	절수형설비 설치(바목)	적용	세대 내에 설치되는 수전류는 「수도법」 제15조 및 「수도법시행규칙」 제1조의2, 별표1에 따른 절수형 설비로 설치
전기부문 설계기준 (제7조 제3항 제3호)	고효율기자재	적용	변압기 및 전동기는 지경부 고시에 따라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받은 제품을 사용.
	일괄소등스위치	적용	세대별로 일괄소등스위치 설치
	고효율 조명기구	적용	지식경제부 고시 「고효율관리기자재의 운영에 관한 규정」 및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고효율조명기기로 정의되는 제품을 세대 및 공용부위내 사용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 설치	적용	거실,침실,주방에 각1개소 이상 설치
	공용화장실 자동점멸스위치	적용	근린생활시설 및 부대복리시설 화장실내 자동점멸스위치 설치
	실별 온도조절장치(사목)	적용	세대 내에는 각 실별 난방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온도조절장치를 설치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 주요내용**

보증서 번호	보 증 금 액	보 증 기 간
제 01212026 - 101 - 0003500 호	₩ 532,863,800,000 원	입주자모집공고승인일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 (사용검사 또는 당해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 포함)까지

- 본 아파트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득한 아파트입니다.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제1조 (보증채무의 내용)

공사는「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주채무자가 보증사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해당 주택의 분양이행 또는 환급이행 책임을 부담합니다.

【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의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주채무자】 보증서에 적힌 사업주체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분양이행】 주택법령에서 정한 주택건설기준 및 해당 사업장의 사업계획승인서,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 입주를 마침
【환급이행】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되돌려 줌

○ 제2조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 등의 납부)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분양권 양도자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포함)에는 보증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않습니다.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주채무자가 주택분양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한 채무
2. 주채무자가 대물변제·허위계약·이중계약 등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대물변제】 주채무자의 채권자가 그 채권에 대하여 주채무자가 분양하는 아파트 등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변제에 갈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허위계약】 분양의사가 없는 자가 주채무자의 자금 융통 등을 돕기 위하여 명의를 빌려주어 분양계약하는 것으로 차명계약을 의미합니다.

3. 입주자모집공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입주금】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로부터 받는 계약금과 중도금 및 잔금을 말합니다.

4.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한 입주금납부계좌(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서에서 지정한 계좌를, 공사가 입주금납부계좌를 변경·통보한 후에는 변경된 납부계좌를 말함)에 납부하지 않은 입주금
5. 공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입주금의 납부중지를 알린 후에 그 납부중지통보계좌에 납부한 입주금
6.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납부기일 전에 납부한 입주금중 납부기일이 보증사고일 후에 해당하는 입주금. 다만, 공사가 입주금을 관리(주채무자 등과 공동관리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계좌에 납부된 입주금은 제외합니다.
7. 보증채권자가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넘어 납부한 입주금
8.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입주금에 대한 이자, 비용, 그 밖의 종속채무
9. 보증채권자가 대출받은 입주금 대출금의 이자
10. 보증채권자가 입주금의 납부지연으로 납부한 지연배상금
11. 보증사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되돌려 주어야 할 입주금. 다만, 보증사고 사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유로 보증채권자가 보증사고 발생 이전에 분양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12. 주채무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 이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의 지체상금
13.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주택 또는 일반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의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사양선택 품목(예시:홈오토, 발코니샤시, 마이너스옵션 부위, 그 밖의 마감재공사)과 관련한 금액
14. 보증채권자가 제5조의 보증채무이행 청구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3조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그 밖에 보증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증가된 채무
15.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등과 도급관계에 있는 수급인, 그 대표자 또는 임직원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등에게 자금조달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납부한 입주금
16.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이 보증채권자에 대한 채무상환을 위하여 납부한 입주금
17.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으로부터 계약금 등을 빌려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② 공사가 제6조에 따라 분양이행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보증채권자는 잔여입주금 및 제1항 제4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입주금을 공사에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제1 항 제6호에 해당하는 입주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잔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1. 사용검사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2. 임시사용승인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중 전체 입주금의 9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잔금

【보증채권자】 보증서에 적힌 사업에 대하여 주택법령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여 주채무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분양권 양수자를 포함)를 말합니다. 다만, 법인이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 이전에 그 주택분양계약에 대하여 공사에 직접 보증편입을 요청하고 동의를 받은 법인만 보증채권자로 봅니다. 이하 같습니다.

○ 제4조 (보증사고)

① 보증사고란 보증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주채무자의 정상적인 주택분양계약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1. 주채무자에게 부도·파산·회생절차개시신청·사업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예정공정률(주채무자가 감리자에게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의 공정률을 말함. 이하 같음)보다 25퍼센트P 이상 부족하여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다만, 입주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행청구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3.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75퍼센트를 넘는 경우로서 실행공정이 정당한 사유 없이 예정공정보다 6개월 이상 지연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4. 시공자의 부도·파산 등으로 공사 중단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보증기간】 해당 주택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복리시설의 경우 신고일을 말함)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검사 또는 해당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함)까지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② 보증사고일은 공사가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사고 안내문으로 알리면서 다음 각 호 중에서 보증사고일로 지정한 날을 말합니다. 이 경우 공사는 보증서에 적힌 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일간지(공고를 한 일간지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1개 일간지를 말함)에 실어 통보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이하 같습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부도·파산일, 회생절차개시신청일, 사업포기 관련 문서접수일 등
2. 제1항 제2호에서 제4호의 경우에는 보증이행청구 접수일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아파트 공사진행 정보 제공 :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 사업장의 공사진행 정보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HUG-i)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관련으로 개인정보 요구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 분양자(매도인)은 이 계약체결과 동시에 수분양자(매수인)에 대한 분양대금채권을 주택도시보증공사에게 양도하고 수분양자는 이를 이의없이 승낙하기로 한다.

※ 상세 내용은 보증회사인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문의 바랍니다. (1566-9009)

■ 사업주체 및 시공사 현황

구분	사업주체	시공사
상호	부곡가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에스케이에코플랜트 주식회사
법인등록번호	134171 - 0008284	110111 - 0038805
주소	경기도 의왕시 중앙샛길 38-1, 4층(삼동)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2길 19(수송동)

견본주택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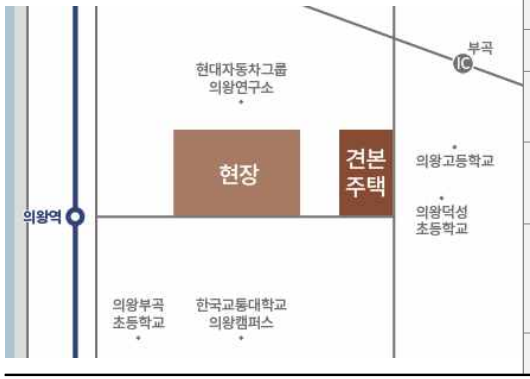

견본주택 주소	경기도 의왕시 삼동 277-6번지						
운영기간	2026년 07월 16일부터 분양완료시까지						
운영시간	10:00 ~ 17:00						
분양문의	☎ 031 – 427 - 1857						
주요일정	특별공급	1순위 해당	1순위 기타	2순위	당첨자발표	서류접수기간	계약기간
	’26.07.20.(월)	’26.07.21.(화)	’26.07.22.(수)	’26.07.23.(목)	’26.07.29.(수)	’26.07.31.(금) ~ 08.08.(토)	’26.08.10.(월) ~ 08.13.(목)
공식 홈페이지	https://uws.skview.co.kr						

- 본 입주자 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에서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견본주택으로 문의하여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는 관련법령이 우선합니다.
- 본 공고와 공급(분양)계약서 내용이 상이할 경우 공급(분양)계약서가 우선합니다.